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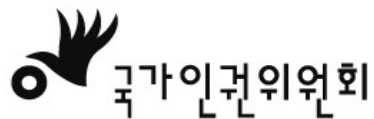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26-01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Making Standards Work

발간처 : Penal Reform International, 국가인권위원회
번역 : 인권운동사랑방, 이호중

Penal Reform International



발 간 사

마침내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을 번역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원어명 ‘Making Standards Work’가 말해 주듯, 이 책은 피구금자에 관한 국제준칙(Standards)이 국내에서 기능(Work)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책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가 피구금시설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각종 준칙(여기에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과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로 인정되는 각종 선언 등이 포함됨)이 수록되어 있다. 실로 이 책만 들여다보면 피구금자의 처우와 관련된 국제준칙이 무엇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활동 중 제1의 분야는 피구금자의 처우와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 6년간 진정사건이 주로 교정시설에서 답지한 것만 보아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진정사건에 대해 열성을 다해 조사하여 상당수의 사건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였고 각 사건에 맞는 구제조치를 권고해 왔다. 그 결과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의 인권은 상당한 개선의 효과를 보았고 이러한 결과는 최근 법무부의 행형법의 전면 개정안으로 나타나 조만간 구조적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은 헌법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였다. 유엔이 만든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피구금자 처우준칙이 인권위의 대부분의 진정사건에서 검토기준으로 사용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국제인권법의 전문성 부족과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 항상 한계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피구금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위의 ‘최저기준규칙’ 이외에도 많은 국제준칙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일일이 조사하여 결과 보고서나 결정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구금자에 관한 국제준칙을 종합하여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한 자료의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은 피구금자와 관련되어 활동하는 국제적 NGO 국제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PRI)가 그동안 국제사회가 만들어 온 각종의 피구금자 처우와 관련된 준칙을 모아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설명한 책자이다. 이것은 원래 PRI가 1995년 제9회 유엔범죄방지위원회(카이로)에 각국 정부 및 NGO에 배포하여 지난 10여 년 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문건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6년경 그 완역본이 출간되어 행형관계자들이 행형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서가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야 전문 번역되었으니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 그래도 인권위가 있음으로서 이러한 작업을 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된다.

부디 이 책이 피구금자 시설에서 어떻게 피구금자를 처우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임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피구금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각종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위 담당자는 물론 우리 행형당국의 담당자들이

각각의 업무를 함에 있어 피구금자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살피는 데 이 책은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행정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이 책은 연구 활동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이 책을 번역하는 책임을 진 인권운동사랑방의 감옥인권팀과 감수를 맡았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호중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번역서는 실로 오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른다.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축 사

It is a pleasure to introduce the second edition of Making Standards Work. Since it was first published in 1995, Making Standards Work has been used all around the world. It has been translated in over 15 languages and is also available on the internet. Thus, more people than ever before now have access to the document.

As a tool for reform and in the battle for decent prison conditions, Making Standards Work has proved to be an invaluable resource to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orld-wide. We, at Penal Reform International, sincerely hope that the Standards will continue to be applied and that the good work already achieved will be developed still further.

Penal Reform International is extremely pleas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translated and published Making Standards Work into Korean and we trust that it will provide a valuable tool for all those who read and use it.

Paul English

Executive Director, PRI

한국어판에 대한 서문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제2판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1995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전세계에서 이 책자가 사용되었고,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구금시설 환경을 위한 투쟁과 그 개혁을 위한 도구로서, 이 책자는 전세계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국제형사개혁위원회는 이 준칙이 계속 적용되며, 이미 거둔 좋은 성과가 향후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형사개혁위원회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어로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을 번역, 출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책자를 읽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Paul English

사무총장, 국제형사개혁위원회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고문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UN 행동강령(United Nations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 법집행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UN 기본원칙(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 피구금자와 억류된 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로부터의 보호함에 있어 의료종사자, 특히 의사들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서 문

편람을 만들게 된 동기

1. 유엔(UN)은,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고 보장하도록 하는 많은 국제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채택해왔다. 그러나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런 법적 장치들이 실제로 이행되는 정도는 아주 낮다.
2. 국제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PRI)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법의 시행, 구금 환경과 처우기준 등에 관하여 인권 법규범의 개발 및 그 이행을 장려함으로써, 행형(行刑)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PRI는 “**최저기준규칙 실현**” 프로젝트를 발의했다. 이것은 (i) 구금시설 처우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들을 더 널리 알림으로써 그것의 이행을 개선하고, (ii)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간의 국제적 교류를 강화하며, (iii) 각국의 경험의 상호교환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편람의 목적

4. 이 프로젝트의 첫째 목표는 올바른 행형에 대한 <편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5. 이 <편람>은 구금시설 환경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의 규칙들을 소개하고, 행형정책과 실무에 있어 그것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편람>은 피구금자가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어떤 형태로든 피구금자의 보호와 처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편람을 만든 과정

6. 이 <편람>은 국제적 성격과 타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첫째 단계로, 1993년 11월 네덜란드에서 소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각처에서 온 20여명의 전문가들이 <편람>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에 관하여 확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1993년의 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시안을 마련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994년 11월 네덜란드에서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시안의 내용을 토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4년 회의의 제안을 기초로 초안작성위원회가 <편람>을 완성한 것이 마지막 단계였다.
7. 이 <편람>은 위 두 국제회의의 모든 참가자들, <편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9차 유엔 회의**”(1995년 4-5월, 카이로)에 참석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에게 제공되었다.

8.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목표는 국제 협력의 증진이다. PRI는, 1994년의 <편람> 회의와 그 직후 열린 PRI 총회의 토론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감사의 말 : 초안자들에게

9. 1993년 및 1994년 <편람> 회의에 참석하여 <편람>을 실용성과 타당성을 갖는 국제적 문서로 완성하는데 말과 글로써 공헌한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한다. 또한 이 <편람>의 영어 원본을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감사드려야 할 사람들은 초안작성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유럽평의회 과학전문위원이면서 스웨덴 구금시설 및 보호관찰소의 전 연구부장인 Norman Bishop, 네덜란드 Alkmaar지역 구금시설 소장인 Kees Boeij, 런던의 범죄학자인 Silvia Casale 박사, 브레멘 대학교의 형법학·범죄학 교수인 Johannes Feest 박사, 런던의 Consultant of Interights인 Chidi Anselm Odinklau, 당시 PRI 의장이었고 현재 그로닝엔 대학교 행정학 교수이며 네덜란드 법무부 행정자문위원인 Hans Tulkens, 당시 뉴욕의 Human Rights Watch의 구금시설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Jonna Weschler,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법과대학장이며 교수인 Dirk van Zyl Smit가 그들이다. 나아가 비서로서 지칠 줄 모르는 도움을 준 Anneke van der Meij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Fahri Kaplan의 도움에도 감사드린다.

감사의 말 : 후원자들에게

10.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도움과 관심, 그리고 후한 재정적 지원을 해준 네덜란드 법무부와 외무부에 또한 감사한다. 덧붙여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Diakonisches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법무부 교정국”, 네덜란드의 행정시설인 Vught의 “Nieuw Vosseveld” 및 Heerhugowaard의 “Toorenburgh”, 그리고 네덜란드 Oegstgeest에 있는 “개발과 협력을 위한 네덜란드 및 카톨릭 조직”(CEBEMO)에 감사한다. 이들 단체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에게

11. 마지막으로 이 <편람>의 이용자들인 여러분께 한마디.
50개 이상 나라의 100여명의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결합해서 이 <편람>을 만들어냈으며 진정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이 <편람>의 진정한 가치는, 행정당국의 행정, 훈련과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건, 구금시설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서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용자 여러분이 이 책을 필요로 하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배포하는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제2판에 대한 서문

국제표준규격자치우준칙(Making Standards Work) 제2판을 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1995년 처음 출간 이후, MSW는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5개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MSW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decent 수용조건을 위한 투쟁 및 개혁의 도구로서, MSW는 전세계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어왔습니다. 국제형사개혁위원회는 이 원칙이 적용되고 이제껏 이루어진 작업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아마드 오타마니(Ahmed Othamani) 위원장

국제형사개혁위원회

<차 례>

〈편람〉의 출발점	1
이 〈편람〉에 대하여	5
제1장 기본적 지도원칙들	7
여는 말	9
최저기준규칙의 목적과 기본원칙	9
차별의 금지	11
사회복귀 과정의 시작과 지원	15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에 관한 지도원칙	19
제2장 적법절차와 불복신청	23
여는 말	25
구금시설 내 질서의 유지	25
규율이 구금시설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26
불복신청과 심사	27
불복신청의 처리를 위한 내적·외적 체계	29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와 기타 피구금자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	30
규율	32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규율을 집행할 것인가?	34
징벌	36
구금시설 내 징벌의 종류	40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심사	44
제3장 물적 조건 - 기본적인 필요사항	47
여는 말	49
예산투입 못지않게 창조적 노력에 의한 시설조건의 개선	49
거실설비	50
위생	53
급식	58
생활필수품의 외부 지원	59

제4장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61
여는 말	63
피구금자 및 억류된 자의 건강보호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64
건강보호와 그 기능	64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68
피구금자의 주치의로서의 의사	70
구금시설의 장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의사	73
보건 및 위생 관리자로서의 의사	79
간호사의 지위	80
보건직원의 역할	82
이해관계의 갈등에 처한 의료인력	83
피구금자가 의료보호에 관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할 권리	84
의무관의 이의제기절차	85
특정 피구금자 집단의 의료문제	85
제5장 피구금자의 외부교통	91
여는 말	93
유지되는 권리	93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94
전문적 그리고 제도적 교통	99
유지되는 기타의 권리	102
사망과 중병에 대한 통지	105
제6장 피구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107
여는 말	109
피구금자 처우에서 피구금자 원조로	109
차별화와 개별화	115
믿음과 예배의 자유	117
평가된 필요, 계획된 구금	118
차별화와 보호	121
구금시설에서의 활동 : 연합하고, 건설적이고, 비착취적인	126
구금시설내 노동	127
교육과 오락	132
사회적 관계와 지속적 지원	136

제7장 구금시설 직원	139
여는 말	141
조직체계	142
채용과 기본 훈련	143
업무능력	146
업무조건과 지위	147
성별 문제	149
전문가 직원	150
물리력의 사용; 중대한 상황들	151
구금시설의 장의 임무	153
제8장 감찰(Inspection)	157
여는 말	159
감찰의 범위	159
비정부단체(NGO)와 기타 비공식적 기구와 개인들의 참여와 역할	162
취약한 피구금자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	162
국제적인 감찰	163
개선의 달성	164
제9장 UN의 구금시설 규칙 해설	167
여는 말	169
최저기준규칙의 범위와 적용	169
최저기준규칙의 지위	170
최저기준규칙의 해석	171
소년이라는 특별한 경우	174
제10장 국제형사개혁위원회 (Penal Reform International)	175
제11장 사법운영에서의 인권 : 억류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보호	179

<편람>의 출발점

피구금자의 인권

1. 이 <편람>은 억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것이다. 이 권리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포함된다:

개인의 생명과 온전성에 관한 권리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 하에서 살지 않을 권리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자기 발전에 대한 권리

보편적 권리

2. 기본적 인권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 국제조약이나 협정, 협약, 규칙 등에 가입하고 비준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각국은 또한 지역 단위의 협정, 협약들에서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였다.

유지되는 권리

3.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인간은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 기본적 인권은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일시적으로 자유권을 상실한다. 불법적으로 구금 또는 억류된 사람들은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유지한다.
4. 억류 또는 구금으로 인해 일정한 개인적 자유권, 프라이버시권,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투표권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유박탈의 결과로, 인권에 대한 추가의 제한이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그러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자유의 박탈

5. 사회에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가능한 한, 공동체 (사회) 안에서 집행하는 제재나 처분이 자유박탈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 (권) 박탈의 방법이 사용되면 인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편람>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유의 박탈과 정상적인 삶

6. 구금시설의 많은 사람들은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수형자들이다. 그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형벌이며, 또다른 형벌을 목적으로(위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형벌은 자유의 상실이다. 따라서 구금의 상황이 어떤 추가적인 형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의 역효과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록 구금시설 안에서의 생활이 정상적일 수는 없을지라도, 자유의 상실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금시설의 환경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7. 수형자와 함께 구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선고를 받지 않고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으며, 정치적인 망명 또는 이민자 지위에 관한 결정 등 기타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구금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형벌로서 혹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구금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들은 다만 예방의 목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또한 구금시설 안의 생활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까워야 한다.
8. 더욱이,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자유박탈로 인해 불리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외부사회에의 접근권(예를 들어, 법적 조언이나 정보에 대한 권리)을 가진다.

개방의 원칙

9. 자유의 박탈에는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다. 현실에서는 종종 법에 의하지 않은 자유 박탈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나 보호 없이 구금된다. 그러므로 구금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바로 개방성이다. 곧, 구금시설이나 기타 구금장소는 외부의 독립적인 감독기구에 대해 공개되어야 하고 구금된 사람은 바깥 세상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 의무

10. 국가가 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순간, 국가는 그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주요한 보호 의무는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개인의 복지후생을 지키는 것 역시 보호의무에 포함된다.

11. 억류 또는 구금된 사람의 인권은 조약의 지위를 갖는 수많은 협약 및 협정 등에 의해 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한 조약에 서명·비준한 국가들은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2. 이러한 법적 문서들의 시행에 관해서는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¹⁾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인 문서로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며 행형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그 가치와 영향력이 널리 인정되어 왔다.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의무에 관하여 다른 선언, 협약, 협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실천적으로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국내 및 국제 법원, 기타 기관들에서 피구금자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조명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최저기준규칙은 법률 규정이 그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금시설 및 기타 구금 장소

13. 많은 사람들이 구금시설 이외의 장소에 구금된다. 예를 들어, 경찰서 유치장, 정신병원, 행형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구금센터, 심지어 비공식적인 구금장소 등이 그것들이다. 구금 또는 억류되어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피구금자의 인권은 적용된다.

특별한 피구금자 집단

14. 이 <편람>은 전쟁포로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장과 이후의 장들에서 논의되는 원칙과 규칙의 상당수는 전쟁포로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편람>은 청소년, 여성, 외국인, 정신병자, 약물중독자인 피구금자 집단에 대하여는 개략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당연히 그들이 구금시설에서 처한 상황과 조건은 특별하고 세세한 규정과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들을 하나의 <편람>에서 포괄하여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디든 필요한 곳에서는, 이 특별한 집단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구금시설”과 “피구금자”라는 용어

15. 이 <편람>에서는 “구금시설”과 “피구금자”라는 말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무엇보다도 (피의자·피고인이든 유죄로 확정된 자이든)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어떤 장소건 간에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편람>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을 포괄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1) 이 <편람>에서는 이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of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최저기준규칙’으로 표기하였다. 특별한 언급 없이 “규칙”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최저기준규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편람>에 대하여

1. 이 <편람>은 규칙과 법규를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기존의 규칙들을 개정한 것도 아니다.
2. 이 <편람>은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규칙이 정책수립과 실무집행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편람>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법규의 이행을 장려하는 데 있다.
3. 이 <편람>은 세계 50여개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다.
4. 이 <편람>은 이론가들을 위한 연구서가 아니다. 이것은 행형 정책 입안자, 구금시설의 직원, 그리고 피구금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어떻게든 책임을 느끼는 모든 정부, 비정부 인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5. 이 책은 완전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모든 곳에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보편성을 위해서 지역적인 법제도들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때로는 지역적 상황이 사례로서 언급되었다.
6. 이 <편람>의 이용자들이 더 정교하고 상세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기 그들의 구금시설, 나라, 지역에서 상이한 범주의 피구금자들에게 이 <편람>이 더욱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7. 이 <편람>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8개의 주요 관심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들은 편람의 작성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의 논의 속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8. 이 <편람>은 “최저기준규칙”의 정신 속에서 지난 수 년 간 발전해 온 관점과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9. 이 <편람>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구금시설의 생활이란 흑백의 그림으로 포착될 수 없다. 상황과 인간의 행태는 복잡하므로 결정과 행동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구금시설 실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1장 기본적 지도원칙들

제 1 장 기본적 지도원칙들

여는 말

1.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을 가진 특정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이 바로 기본원칙이 되며, 그 자체로서 언제 어디서든 지켜져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규칙들은 인권보장을 위한 유엔의 또 다른 문서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상세한 설명은 제9장을 참조)

2. ‘최저기준규칙’의 기본원칙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구금시설은 질서정연한 공동체여야 한다. 곧, 생명, 건강, 그리고 개인의 온전성에 대한 위험이 없는 장소여야 한다.
- 구금시설에서는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 법원이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극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을 부과한 것이다. 구금시설의 환경이 이러한 본래의 고통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 구금시설의 활동은 가능한 한 피구금자가 출소 후 사회에 다시 정착하는 것을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구금시설의 규칙과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피구금자의 자유, 바깥 사회와의 접촉 및 자기개발의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의 규칙과 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기본적인 지도원칙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최저기준규칙의 목적과 기본원칙

3. 서칙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최저기준규칙의 의도와 목적에 관한 기본적인 선언들을 담고 있다(제9장을 보시오). 규칙 제27조와 제56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일 뿐만 아니라 구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저기준규칙의 모든 규정은 의도와 기본원칙을 서술한 이 서칙에 부합하게 읽고 해석해야 한다.

4. 서칙, 즉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어떤 모범적인 행형제도를 상세히 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구금자의 처우와 구금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원칙과 실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핵심요소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법, 사회, 경제, 지리적 조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규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유엔에서 적정한 것으로 승인된 최소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저기준규칙은 이 ‘규칙’이 천명한 원칙들과 조화되고 규칙 전체의 취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목적을 더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형행실무의 발전을 위한 실험을 배제하지 않는다.

5. 최저기준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조건들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구금제도는 아마 없을 것이며, 일부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실험, 개발, 개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칙 제56조는 이 점에 관한 적절한 지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 제56조

아래에 제시한 지도원칙들은, 이 규칙의 서칙 제1조에 선언된 바에 따라서, 행형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신 및 행형시설이 지향해야 할 목적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6. 규칙 제27조는 “규율과 질서는 엄격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안전한 구금과 질서있는 시설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다른 모든 규칙들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구금시설당국이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적인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구금시설이 피구금자, 직원,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안전한 환경임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UN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구금시설에 거주하도록 된 피구금자 및 구금시설에서 일해야 하는 구금시설 직원 모두에게 구금시설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구금시설 당국의 일차적 의무이다. 피구금자와 직원은 모두 어떠한 폭력이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사회공동체 역시 피구금자의 공격적 행동으로부터 안전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 최소한의 제한 수단으로 안전한 구금시설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준수하고 최저기준규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7. 마지막으로, 최저기준규칙 중 일반적인 구금시설 운영에 관한 규칙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구금자(수형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의 대부분은 최저기준규칙의 다른 곳에 규정된 특별한 피구금자 범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조항은 특히 중요한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종종 이러한 피구금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구금자들보다 더 불리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서칙 제4조**는 이러한 처우를 용납하지 않는다.

최저기준규칙의 정신과 규율 범위

8. 앞에서 제시한 최저기준규칙의 취지 및 기본원칙들은 최저기준규칙 전체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된다. 우선 그 규칙들은 최저기준규칙의 목적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최저기준규칙의 목적이 아닌지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최저기준규칙은 어떤 모범적인 구금제도의 모델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야심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획득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국의 경제·사회·역사·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구금제도라고 할지라도 항구적인 완전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긍정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최저기준규칙의 핵심 목적은 서칙 제1조에 기술되어 있다. 즉, 최저기준규칙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구금제도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천명하고, 피구금자 처우와 구금시설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실무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최저기준규칙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필요조건들 - 최소한의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행형제도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들 - 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간접적으로는, “필수적인 요소들”은 제9장에서 언급된 다양한 국제법규들이 제시한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범들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의 금지

10. 규칙 제6조

- (1)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의견,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2) 한편,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바는 명백하다. 최저기준규칙은 “공평하게”, 곧 정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차별이란 규칙에 열거한 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든지 피구금자 개인 또는 피구금자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과 손해를 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편견, 편협함, 광신에 기초한 어떠한 처우도 금지된다. 규칙 제6조 제1항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실제로 같은 표현(문구)을 사용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990년 12월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2조에도 차별을 금지하는 비슷한 규정이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차별과 차별의 교사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11. **규칙 제6조 제1항**은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한 지위 중에서 요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HIV 양성반응 피구금자의 지위이다. 전염에 대한 공포와 무지로 인해 종종 그들에 대한 차별, 특히 육체적·사회적 격리를 통한 차별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나 행태상의 문제점들은 없다. 특별한 사례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HIV 양성반응자라고 하여 모두 격리하는 것은 결국 차별에 해당한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4장 48단락**을 참조).

구별하여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12.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무시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맥락에서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차별은 부당한 이유, 대개는 편견에 따른 이유로 불이익과 손해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별은 특수한 신념과 필요, 외국인, 여성, 인종적·종교적 소수집단의 일원 등 특수한 상황 내지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구금자에 대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차별과 달리,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구별]이 부당하거나 편견에 따른 이유로 불이익과 손해를 과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13. 그러나 다수집단에 속해 있는 피구금자들은, 특히 소수집단의 열등한 지위를 배려하는 경우에는,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구금시설의 직원은 이런 가능성과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불만들에 유의해야 한다. 구금시설 직원(**제7장** 참조)들은 왜 이처럼 처우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 피구금자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잘 교육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14. 불가피하게, 자유형의 집행이 제한적 구금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복역기간이 끝나면 국외로 추방당할 피구금자에게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귀휴가 불허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은 합법적으로 부과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자유형의 집행결과로서 불가피한 한도에서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피구금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편견, 편협함, 광신 내지 옹졸함의 결과여서 안 된다. 처우의 구별은 그것이 형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과이고 적절한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것이며 피구금자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일 때에, 그리고 고도의 이해와 관용을 가질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독립적 기관에의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금조건에 가해진 제한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가를 심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차별적 처우는 편견에 치우친 행동양식임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편파적인 행정실무의 근거가 될 때 발생한다(자세한 것은 **제2장** 참조).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강제의 금지

15. 종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종교선택에 대한 강제는 위 협약의 같은 조항에

서 금지하고 있다. **규칙 제6조 제2항**은 피구금자가 소속된 집단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할 필요성을 천명하고 있다(**제5장과 제6장**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

16. 어떤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가치를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잔인함과 폭력과 위협을 가하고자 하거나 가하게 된다면, 그 집단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행위도 용인되어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규칙 제6조 제2항**은 특정집단의 종교적·도덕적 신념을 존중함과 관련하여 어떤 제한조건이나 유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 하여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구금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실,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부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잔혹행위·폭력·위협을 야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지닌다. 모든 인간은... 서로에 대해 형제애의 신의로써 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는 내용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가치는 차별에 해당하며 그것 자체로서 **단락 10**에서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제7조**의 규정에 저촉된다.

임의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

17. **규칙 제7조**는 피구금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실행지침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극히 실무적인 규칙이다.

규칙 제7조

(1)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수용되는 각 피구금자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기입하여야 한다.

- (a) 피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 (b) 수용의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 (c) 수용의 일시 및 석방의 일시

(2) 상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구금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18. **규칙 제7조**는 임의의 구금을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 10조**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제9조

누구든지 임의로 체포·구금 또는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누구든지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범죄혐의에 관한 결정에서 공정한 독립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청문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마찬가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항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임의로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항들이 지켜지려면, 모든 구금은 정당하게 허가된 것이어야 하고 유효한 구금명령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을 구금시설 직원은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규칙 제7조**를 이행할 책임은 개별 구금시설의 책임자나 직원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당국에게도 있다.

19. **규칙 제7조**는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2조**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 원칙은 특히 경찰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거나 재체포된 피구금자에게 적실성을 갖는다.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체포 이유와 체포 일시, 구금된 일시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처음 출두한 일시가 기록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 공무원의 신원과 구금장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사항의 기록은 **규칙 제7조**가 요구하는 등록과 함께, “실종” - 즉,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사라지고” 아무도 그의 소재를 모르는 현상 - 에 대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된다.

20. **규칙 제7조**의 앞부분에서는 또한 모든 피구금자의 신원과 구금시설 수용의 이유, 수용 일시, 그리고 수용을 결정한 기관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금 기간 중에는 피구금자의 신원과 그들이 언제, 왜 구금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기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예를 들면 도주 또는 기타 범죄, 사고, 질병, 사망, 화재, 폭동 등과 관련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한 사법절차 및 수사에도 관련될 수 있다. 많은 구금시설 행정당국이 컴퓨터의 자료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페이지(쪽수)가 표시된 편철장부를 두도록 한 최저기준규칙의 이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기준규칙에서 서술하는 정확한 등록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주의 깊은 기록 작성이 행해질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기록은 영구적인 것이어야 하며 긴급상황에서 항상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화재와 폭동은 쉽게 기록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이 때 점검을 위해서는 기록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구금시설 행정당국은 이런 중요한 기록들, 특히 많은 수의

피구금자들이 포함된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복귀 과정의 시작과 지원

21. **규칙 제4조**는 수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기준규칙이 특수한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조항들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실상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상호 저촉되는 상황에서는 특수한 피구금자에 관한 규칙 조항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아래의 규칙들은 미결구금상태의 피구금자, 정신장애의 피구금자, 민사상의 피구금자와 혐의없이 구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22. 규칙 제57조

구금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상황에서 연유하는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자유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구금은 그 자체로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금의 본질적인 고통 외에 추가의 고통을 주는 것은 정당한 격리나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이 규칙은 종종 범죄자는 형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로서 구금되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구금시설에 보내진다는 것은 피구금자가 불가피하게 일련의 박탈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구금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해야 하고 그들의 생활을 구금시설 당국의 지시에 맞추어야 한다. 피구금자는 이성(異性)과의 일반적인 접촉이 금지되며, 감정표현과 개인 정체성의 확인을 나타내는 모든 것도 함께 박탈당한다. 그들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상적인 접근 기회도 박탈당한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사하는 책임의 정도도 제한된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구금은 항상 그 자체로서 고통스러운 것이다.

24. 수많은 범죄학 연구에 따르면, 구금생활에 수반되는 박탈감과 고통은 범죄규범 및 동료 범죄자와의 일체감을 증대시키고 합의된 사회적 가치의 거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구금에 의해서 자기결정의 권리가 박탈된다고 할지라도, 자기결정과 개인적 책임성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의나 실천적인 배려에서 볼 때, 구금생활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구금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연유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구금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의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끊임없이 감시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안전 -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 모두를 위한 기본적 필수요소

25. **규칙 제57조**는 또한 구금시설 내 규율 유지를 위하여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한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질서있는 공동생활의 유지는 어떤 구금시설에서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구금시설은 피구금자에게나 구금시설 직원에게나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유형을 복역한다는 것은 피구금자나 구금시설 직원이 폭력·살인·공갈·성폭행, 기타 공격의 위협이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개인의 존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질서있는 공동생활의 권리가 존중될 때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26. 질서있는 공동생활의 특징은 핵심적인 행동규율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준수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 <편람>의 다른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파괴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후수단으로서 일부 피구금자의 자유를 훨씬 더 제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한 역시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구금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 생활조건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폐해의 감소와 석방후 삶에 대한 건설적인 준비

27. 규칙 제58조

자유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 목적은 가능한 한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 법을 준수하면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도록 구금기간을 선용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규칙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활용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기타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피구금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자유박탈의 목적이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구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어느 사회에서도 구금수단의 이용과 범죄율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저기준규칙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구금은 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에 한하여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래, 즉 피구금자가 석방된 후의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구금시설 당국과 직원의 임무로 남아 있다. 그것은 구금의 폐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피구금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설득하며, 석방 후에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용인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데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28. **규칙 제58조**는 거의 모든 피구금자가 길든 짧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에 복귀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 많은 경우에 사회복귀는 사면이나 가석방에 의하여 형기 만료 전에 이루어진다. 피구금자가 범죄적 생활방식을 강화하여 사회에 복귀한다면, 이는 사회에 해로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세계 각지의 수많은 범죄학 연구들에 의하면, 이것은 구금의 가장 일반적인 효과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구금의 부정적 효과가 명백해짐에 따라, 많은 나라의 정부는 피구금자의 사회복귀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 단계로, 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피구금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춰 구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최저기준 규칙은 친사회적 태도의 형성을 장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석방 후 준범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정보 그리고 갱생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9. **규칙 제59조**는 피구금자의 개선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단순하며 쉬운 한가지 방법은 없음을 인정한다. 피구금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려면 매우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제6장**을 참조). 그렇지만, 모든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피구금자가 구금 중뿐만 아니라 석방 후에도 자신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석방 후 준범생활을 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피구금자도 존재한다. 때로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한 말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금시설 직원들은 끊임없이 그런 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의향이 정말로 없고 따라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소수의 피구금자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설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한,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구금시설 안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로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30. 피구금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은 항상 사회적응이라는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형태의 지원은 사회의 일반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피구금자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신체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적 개입은 피구금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공동체 지향의 수용생활: 정상성 원칙

31. 규칙 제60조

- (1) 시설의 체계는 피구금자의 책임관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위점들을 극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2) 형기 만료 이전에 피구금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감시 하에서 시험적으로 석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시는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원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 장의 **단락 2**에서 피구금자의 자유, 외부사회와의 교통 및 자기개발의 가능성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구금시설의 규칙과 시설조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리들은 종종 ‘정상성 원칙’(normalcy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단일 원칙으로 포괄된다(**제5장**에서 구금 시설 실무상 이 원칙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정상성 원칙은 수용생활 환경이 구금시설 바깥의 그것 -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움, 혹은 빈곤한 사회에서 겪는 비참함과 결핍 - 과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에 **규칙 제60조 제1항**은 일반 사회생활과 수용생활 환경 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피구금자에게서 책임감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식이 박탈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32. **규칙 제60조 제1항**은 수용생활과 일상생활 간의 차이가 피구금자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구금시설의 관리체제는 전통적으로 피구금자의 생활을 세세하게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해왔기 때문이다. **규칙 제58조**에서 언급한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 “안”과 “바깥” 생활 간의 이러한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구금자가 석방된 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차이점을 줄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규칙 제60조 제2항**이 사회생활에 단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 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규칙 제60조 제2항**은 유연한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동일 시설 혹은 다른 시설에 석방준비 제도(pre-release regime)를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구금 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피구금자를 개방시설이나 집 근처의 구금시설로 이송하여 효과적으로 석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33. **규칙 제60조 제2항**이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정한 감시 하에 피구금자를 시험적으로 석방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조건부 석방, 사면, 가석방 또는 “선시(善時)감경석방” 같은 조치들은 조기석방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계적인 사회복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사회복귀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피구금자는 구금시설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생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오랜 수용생활을 한 피구금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이나 직업과 거처를 구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버스나 기차를 타는 것처럼 간단한 일조차 쉽지 않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규칙 제60조 제2항**이 의미하는 바는, 석방되기 전에 사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얻고 기본적인 사회생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규칙 제60조 제2항**은 이러한 기술이 항상 구금시설 안에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해 준다. 사회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훈련은 시험적인 석방을 통해 가능하다.
34. **규칙 제60조 제2항**은 시험적인 석방을 위해 어떻게 피구금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피구금자가 매우 중한 범죄로 형선고를 받았거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 공공에 대한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반면에

많은, - 실은 대부분의 - 피구금자들은 언젠가는 결국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건설적인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는가 여부이다. 피구금자가 조기석방의 기회에 공정하게 접근하게 하고 피구금자, 공중, 행정기관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시험적 석방 결정은 독립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는 198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구금 및 그러한 상태에서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은 사법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의 명령에 의하거나, 그런 기관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이 원칙 제1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사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은 구금의 지속이 적절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35. 규칙 제60조 제2항은 경찰에 의해 감시가 행해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 대신에, 어떤 방법에 의한 간에 석방된 피구금자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요건은 시험적 석방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36.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 이 <편람>의 다른 곳에서 인용·언급되는 것처럼, 최저기준규칙의 여타 규정들은 석방된 피구금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취해야 할 보다 구체적 조치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에 관한 지도원칙

37.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들은 종종 수형자들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 하지만 ‘무죄 추정 원칙’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몇가지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84조

- (1)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아직 재판과 형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 (2)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 (3)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

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수용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 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38.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취합한 일련의 증거들로 볼 때, 전세계를 막론하고 체포 또는 재판 중의 구금에 관련된 상황들은 종종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명백하게 드러난 고문행위뿐만 아니라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자유박탈을 가하는 구금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고문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서 금지되어 있다 :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1966년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도 동일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또다시 1975년 UN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고문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라고 명명하면서 고문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제1조). 더 나아가서 UN선언의 후속조치로 1984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에 발효한 U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도 고문은 금지되어 있다(제2장 참조).

39. 구금제도에 관한 한, 종종 피구금자를 하루 종일은 아닐지라도 하루의 대부분을 독거구금하는 것이 문제된다. 매우 작은 방에 구금되기도 하며 -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는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 구금이 장기간 동안, 일부 사례에서는 몇 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낮시간 동안의 작업을 위한 일거리가 거의 혹은 전혀 없기도 하다. 많은 구금제도들의 엄격성은, 특히 구금된 사람들이 종종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심리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결과는 자살과 자해이다. 그러므로 경찰과 구금시설의 직원은 위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구금시설 당국은 해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주시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경찰서 유치장의 피구금자들

40. **규칙 제84조 제1항**은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미결수용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구금 동안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의 정의에 있어서 경찰구금을 포함시킨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경찰이 최저기준규칙과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여타의 국제 기준들을 숙지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무죄의 추정

41. **규칙 제84조 제2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2항**,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6조**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사법의 운영에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저기준규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수형자에 대한 처우보다 몇가지 측면에서 더 우호적인 처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차이의 일반적인 성격은 **규칙 제84조 제3항**에 적시되어 있다.
42. 그렇지만, **규칙 제84조 제3항**의 첫머리는 일반적인 범죄수사활동과 관련된 두가지 전제조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전제조건들은 최저기준규칙이 개인 자유의 보호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범죄수사상 존재하는 범규정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내에서라도 최저기준규칙은 미결수용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특별한 제도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미결수용자를 위한 제도

43. 제84조 이하의 규칙들은 - <편람>의 다른 장에서 다루겠지만 - 그러한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서술하고 있다. **규칙 제84조 제3항**은 이 요건들이 최소한의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미결수용자들에게 최저기준규칙에 명기된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반대의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많은 국가들에서 미결수용자들의 상황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특별한 제도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에는 훨씬 못 미친다. 특별한 제도란 가족 면회와 공식적인 방문, 자발적인 작업과 교육 및 신체적 활동들을 포함한다.
44. 일부 피구금자들은 공공연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자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이 자유형의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들이 구금 시설에서 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민사상의 피구금자

45. **규칙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행사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 된다.

규칙 제94조는 민사상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되며, 대개는 채무자들이다. 민사상의 피구금자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행사적 절차의 결과로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이러한 사람들이 수형자와 동일한 정도의 자유박탈을 당

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과 수형자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우에 따라 작업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범죄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46. 규칙 제9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와 제2부 C절(최저기준규칙 중에서 - 역주)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부 A절의 관련규정(최저기준규칙 중에서 - 역주)도 그 적용이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재사회화조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해져서는 안 된다.

규칙 제95조는 범죄혐의로 재판에 기다리거나 형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따라 중요한 일련의 권리와 보호를 부여받는다. 간략히 말하면, 제9조는 체포, 감금 그리고 자유의 박탈이 임의적이어서는 아니되며 오직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조항은 체포된 사람들에게 즉시 부과된 죄명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들은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더구나,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법원이 구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단하고 만일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보호조치의 어떤 것도 규칙 제95조에 의하여 약화되거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47.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불리한 구금처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혐의도 없고 따라서 형선고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었거나 재판 대기 중인 사람들처럼 보다 유리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권한을 갖는다. 동시에 그들은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재교육 또는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어떠한 조치도 받아서는 안 된다. 실제 규칙 제95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공민권이 없는 체류외국인들로, 가족과 함께 추방될 예정인 사람들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은 종종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장 적법절차와 불복신청

제 2 장 적법절차와 불복신청

여는 말

1. 구금시설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 말은 자명하게 들리지만, 피구금자들이 개개의 인간으로서 권리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구금시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구금시설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은 피구금자의 권리를 창설하고 보호하는 법령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이 장에서는 구금시설 내 규율체계와 고충처리제도 등 적법절차와 불복신청에 대해 다룰 것이다. 구금시설에서의 불복신청과 심사절차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되어 있는 규율과 징벌의 문제들도 다룬다. 이러한 제도와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가는 구금시설의 안정과 화합을 유지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피구금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구금시설 내 규율 및 고충처리제도의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 시스템이 전적으로 강압에만 의존한다면 목적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은 인간적인 리더쉽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피구금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독려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피구금자들이 자신이 온전히 존중받고 존엄성을 지닌 성숙한 인격체로서 대접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의 선행을 이끌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이 피구금자들과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금기시될 일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공식적인 규율체계에 덜 의존하면서 구금시설의 평화를 유지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구금시설 내 질서의 유지

4. 앞에서 언급한 비공식적이고 우호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질서를 지키는 행동과 규율을 이끌어내는 것도 종종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구금자가 늦게 일어난다면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로 인해 초과노역을 부과받는다면 이는 합당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결과의 적용은 임의적이거나 행동과 무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단지 징벌을 위해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건전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징벌을 자동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한다.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구금시설 직원은 그러한 규칙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규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명심하면서 전문적인 판단과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구금시설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직원교육의 내용도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금시설 직원은 구금생활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들이 피구금자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상식적이고 성숙하게, 그리고 온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구금시설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기타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이 <편람>의 다른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규율이 구금시설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6. 여기에서는 불복신청과 재심절차를 포함하여 구금생활을 규제하는 규율이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의 상호관계에서 양자의 행동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구금시설의 규율 및 고충처리체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7. 단식투쟁, 탈옥, 소요와 폭동, 심지어는 자살까지, 구금시설의 소요행위들은 종종 피구금자들이 규율 적용의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고충처리 체계에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다른 한편으로, 구금시설 직원들도 규율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피구금자에게 즉석에서 불법적인 징벌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피구금자들에게 표출할 수 있고, 그리하여 마찬가지로 구금시설의 평온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징벌절차는 불복신청절차를 포함한다

8. 정당하게 마련된 징벌절차를 통해서만 피구금자에게 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피구금자들이 징벌이나 징벌부과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그들은 징벌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피구금자는 구금생활에서 불만이 있는 여타의 문제에 관해서도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불복신청절차의 요건과 보호장치 및 그 한계는 이 장의 주된 논의사항이다.

적법절차와 불복신청에 관한 국제 기준

9.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 내 생활과 시설운영의 이러한 측면에 관해서는 규정이 그리 많지 않다.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의 규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불복신청에 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10.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적용가능한 기준과 규칙들을 설명할 때 최저기준규칙의 관련규정 외에 다른 국제기준들을 상당부분 참조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징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미주 지역의 인권

협약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선례와 의견, 그리고 기타 지역기구와 국가기구들의 결정례와 의견을 참고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이 영역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법규와 인권기준들이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다른 요소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인도주의와 상식이다.

불복신청과 심사

불복신청제도의 의무적 마련의 성격

11. **최저기준규칙 제35조와 제36조**는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규칙조항은 다음과 같다 :

규칙 제35조

- (1)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2)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규칙 제36조

- (1)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구금시설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2) 피구금자는 구금시설 사찰관에게 사찰 기간 동안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구금시설의 장이나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사찰관 또는 다른 사찰공무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기관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4) 모든 청원 또는 불복신청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12.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구금시설 당국은 피구금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시설 내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교육하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구금시설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조항은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이 구금되는 바로 그 시점에 위와 같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금시설 직원들도 규칙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금시설 직원들에게 규칙을 숙지시킬 수 있다.

규칙 제36조 제4항에서 ‘사소한’과 ‘근거 없는’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정의되어 있지 않

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래 **단락 17**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불복신청제도에 관한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의 교육

13. 교육 방법 중 하나는, 구금시설의 규율에 관련된 법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를 만들어 피구금자들이 수용되는 즉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규의 적용사례를 적절한 삽화 등으로 준비하여 구금시설 내의 주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일부 시설에서는 이처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피구금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언어를 공용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각각의 언어로 이러한 포스터나 문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피구금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나라나 구금시설에서는 그러한 포스터나 문서 등은 그들의 언어적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법규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 예를 들어, 해당 외국어 사용자가 매우 적은 경우 - 구금시설 당국은 해당 외국인 피구금자가 수용될 때 그에게 규칙을 번역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 구금시설은 피구금자의 신입수용 업무와 그들에게 법규를 알려주는 업무를 책임지는 수용업무부서를 두어야 한다.
14. **규칙 제36조**는 피구금자들이 시설 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하여 구금시설 당국에 불복신청을 하고 의견을 표명할 것을 권장하며, 구금시설의 장과 간부직원은 이를 위해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시간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이 머무르는 어떤 시설에서든 건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구금자들이 자신의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구금시설 당국과 소통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그들의 불복신청이 진지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금시설 직원과 피구금자들 사이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15.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당국과의 의사소통 채널에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구금시설 내 소요에 이를 수도 있다. 피구금자들은 구금시설의 운영체계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사항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구금시설 직원은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능한 한 우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불복신청절차에 대한 손쉬운 접근

16. 종종 피구금자들은 구금시설 직원의 보복이 두려워 직원과 시설 운영에 대한 불복신청을 꺼리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제3항**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3조 제3항**에서는 구금시설 당국으로 하여금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할 것, 그리고 불복신청의 처리에 있어서 비밀 보장을 위한 피구금자의 어떠한 요청도 존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징벌절차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읍부즈만, 판사 혹

은 치안판사 등 구금시설 당국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비밀이 보장된 문서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7. 만약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구금시설 직원이 일부 불복신청을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규칙 제36조 제4항)이라고 무시해 버린다면, 이는 구금시설 내 고충처리체계의 완전성과 그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구금시설 당국은 피구금자들이 제기한 불복신청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하며, 구금시설 직원은 이를 그들의 주요한 책임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사소한’과 ‘근거 없는’이라는 단어는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모든 불복신청에 대하여 독립적인 불복신청 처리기관이 조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어떠한 불복신청이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이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족이나 이해당사자에 의한 불복신청

18. 이에 더해, 피구금자의 가족, 변호사, 또는 자원봉사단체나 비정부기구(NGO)의 구금시설 방문자는 관련 피구금자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그들을 대신해서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3조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원칙 제33조

- (1) 억류·구금된 자 또는 그의 변호사는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당국 및 그 상급기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및 구제권한을 갖는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처우, 특히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시정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억류·구금된 자 또는 그의 변호사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억류·구금된 자의 가족, 기타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는 누구라도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타 전문가에 대한 불복신청

19. 전문가에 대해서도 불복신청의 권리가 있음을 피구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가, 특히 변호사와 의료전문가의 서비스는 주로 인도주의적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때때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윤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구금시설 당국과 이들 전문직을 규율하는 기관에서는 적절한 적용기준과 불복신청방법에 대해 피구금자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전문가들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제4장을 참조).

불복신청의 처리를 위한 내적·외적 체계

20. 피구금자의 모든 불복신청에 항상 공식적인 처리와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무상 구금시설 직원은 피구금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불복신청에 대하여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미뤄둘 필요 없이 일상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귀기울여 듣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중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장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에게 보고될 수도 있다.

21. 구금시설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피구금자들이 외부의 자원봉사단체나 비정부기구에 협조요청이나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구금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금시설 당국은 외국인 피구금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자선단체나 인도주의단체에 의뢰하여 접견이나 기타 유사한 교통방법을 통해 상담과 지원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22. 이러한 내부 시스템과 더불어, **규칙 제36조 제2항**은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을 처리하는데 외부 감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구금시설 사찰에 대해서는 이 <편람> **제8장**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에서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29조**에 의할 때 정부는 구금시설의 운영을 감독하고 사찰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 제29조

- (1) 관계법령의 엄정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구금시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과는 독립된 권한을 갖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그 기관에 책임을 지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야 한다.
 - (2) 피구금자는 **제1항**에 따라 구금시설을 방문한 사람과 자유롭게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건에는 따르도록 한다.
23. 그러한 기구가 구금시설 직원, 법조인, 의료인과 지역 내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면 이 시스템의 공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기구는 구금시설 직원이 피구금자에게 부과한 징벌과 기타 규율조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심사권이 없다면 어떠한 불복신청절차나 고충처리기구도 무의미하다.
 24. 징벌부과권한과 불복신청의 처리권한을 결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그 기구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심사 결정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권한들은 서로 다른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와 기타 피구금자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25. 구금시설 내의 적법절차는 여러 부류의 피구금자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결수용자와 외국인 피구금자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나 한정치산자, 문맹자, 소수민족 피구금자 등 소수자 집단에 속한 피구금자들이 그러하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

26. 미결수용자는 특별한 범주의 피구금자이다.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들은 법에 의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기준규칙 제9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미결수용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신의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필기용구가 지급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시설 직원이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지만 대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

27. 규칙 제93조는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으로서 범죄혐의에 대항하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하여 구금시설 직원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촉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변호인이 피구금자를 방문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피구금자와 변호인 간에 서신, 그리고 가능하다면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을 통하여 적절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피구금자

28. 외국인 피구금자들은 특히나 취약한 집단이다. 그들은 다른 피구금자와 달리 친지나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구금자가 구금된 국가의 현지어를 할 수 없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피구금자들은 구금시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불복신청을 꺼려할 수 있다. 불법체류 혐의로 억류된 외국인 피구금자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불복신청을 꺼리게 될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은 이러한 범주의 피구금자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불복신청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경청해야 한다.

기타 취약집단과 차별받는 집단

29. 외국인 피구금자와 미결수용자 외에도, 정신질환자와 문맹자 그리고 소수민족에 속한 사람 등 여타 범주의 피구금자들도 구금시설의 고충처리 체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구금자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은 이러한 필요성에 책임감있게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금시설 직원은 해당 피구금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문맹인 피구금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30. 구금시설 직원은 교육과정에서나 직무수행에서 피구금자와 그의 변호사 사이의 모든 의

사소통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들에게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규율

31. 규율체계는 구금시설 내 통제의 한 방법이다. 그것은 구금시설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규율위반에 대하여 규율회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수단들이 기강과 규율의 목적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최저기준규칙 제 27조 내지 제30조는 구금시설 내 규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시설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규칙 제28조

- (1)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 (2)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고,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목적에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규칙 제29조

다음 각 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 c. 징벌권을 갖는 기관

규칙 제30조

- (1)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 (2) 피구금자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지 아니하고는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권한있는 기관은 사건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한다.
- (3)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피구금자는 통역자를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인권 기준들

32.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항은 각각 임의적 구금을 단호하게 금지하면서, 구금시설 내 규율의 유지와 집행에 관한 범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구금시설의 규율에 관한 규칙과 절차는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임의적 적용의 금지는 적용되는 규칙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는 절차에도 해당된다.

33. 규칙 제27조는 구금시설 당국이 규율을 “엄정히 유지하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시설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임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9조 제1항은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를 “법률 또는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최저기준규칙 제30조는 구금시설 규율의 임의적 운영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관련 문서들

34. 구금시설의 규율을 유지함에 있어 임의적 적용의 금지는 또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6조와 미주인권협약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의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제도적 의미

35. 구금시설의 규율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규정들과 임의적 구금을 금지하는 여타의 법적·인권적 기준들은 구금시설의 조직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아래에서 차례로 논의할 것이다.

성문화된 규칙

36. 구금시설의 규율에 관한 규정들을 성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금시설규칙이나 행형에 관한 다른 형태의 규칙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0조 제1항은 규율에 관한 규칙들이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원칙 제30조 제1항

- (i) 억류 또는 구금 중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피구금자의 행위 유형
- (ii) 부과될 수 있는 징벌의 내용과 기간
- (iii) 징벌권을 갖는 기관

37. 또한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권한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구금시설 간부직원들만이 징벌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구금시설 당국은 피구금자에게 징벌권이 행사된 모든 사례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규칙에는 징벌절차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피구금자들을 위한 불복수단이나 재심절차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구금시설규칙에 대한 정기적 심사

38. 임의적 적용의 문제는 규정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된 규정들이 적용되는 경

우에도 발생한다. 많은 나라에서 구금시설규칙은, 구금시설체계의 여러 다른 측면들과 더불어, 시급히 재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규칙이 현재의 법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금시설 규칙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규칙에 대한 정보와 공개

39. 아무도 규칙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규칙이나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금시설 당국은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에게 그들이 처음으로 구금시설과 접촉하는 시점에 구금시설 내 규율에 관한 규칙을 알려주고 이를 숙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은 이미 이 장의 “**불복신청과 심사**” 제하의 **단락 11과 12**에서 다룬 바 있다.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규율을 집행할 것인가?

40. 구금시설 내 규율 위반은 구금시설 내부적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그 위반이 동시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기소에 따라 공식적인 형사제재가 부과되거나, 이 두가지 중 하나로 처리될 것이다. 모든 규칙위반에 대해 공식적인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율을 위반한 피구금자에게 비공식적으로 경고조치하거나, 우호적인 충고와 격려 혹은 적절한 수준의 불승인의 표현만으로도 그들을 통제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식적인 징벌을 이용해야 한다.
41. 또한 규율위반이 형법상 범죄가 되는 모든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하기 위해 비누 한 개를 훔친 피구금자가 절도죄로 기소된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중한 유형의 사건들만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구금시설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 규율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구금시설 당국은 직원들에게 규율위반의 형사사건 처리 여부에 대한 재량행사의 지침과 원칙을 숙지시켜야 한다. 그러한 지침이나 원칙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42. 내부적인 징벌절차에서는 최저기준규칙에 규정된 보호조치들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보호조치 중의 하나는 **규칙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바, 피구금자들이 징벌이 부과되기 전에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알고 항변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증명되지 않는 소문에 근거하여 피구금자를 징벌에 처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는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보고가 징벌처분의 근거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항변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구금시설 당국은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피구금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사결과 피구금자가 형기감면혜택의 상실과 같은 엄중한 징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

면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Campbell & Fell v. United Kingdom, 5 EHRR, 207(1982) 사건에서 **유럽인권위원회**는 피구금자가 형기감면혜택의 무제한 상실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경우, 실제 이 사건에서는 피구금자들이 명령불복종과 폭행 혐의로 내부적인 징벌절차에서 570일에 이르는 형감면혜택의 상실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사의 변호를 포함하여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모든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43. 규율 위반이 구금시설 당국에 의해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피구금자는 상급기관에 구금시설 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0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단락 84-92**에서 다룬다.
44. 규율 위반이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구금자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보호조치와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그는 방어준비를 위하여 변호사나 기타 소송대리인 또는 친족과 방해받지 않고 교통할 권리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설사 피구금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라 하더라도, 그는 새로운 재판을 위해 미결수용자로 처우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장의 **단락 26과 27**에서 이미 언급한 모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법적 조력

45. 징벌이 부과되기 전에 피구금자에게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그러한 심리절차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입회 내지 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것이 혐의의 성격에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구금시설 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대개는 구금시설 당국이 피구금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구금자와 피구금자 측 증인들의 진술이 징벌 결정에서 주의깊게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6. 공식적인 내부절차인 징벌절차나 조사절차에서 증언하는 피구금자들이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금시설의 고충처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구금시설 당국은 이처럼 징벌위원이나 조사위원들 앞에 출석한 피구금자를 협박하는 효과가 있는 실무관행을 억제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
47. 그렇지만, 무거운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난해한 법적 쟁점이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구금시설 당국은 피구금자에게 법적 대리를 허용할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임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심리에 법적 대리가 허용되는 요건을 구금시설규칙이나 매뉴얼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피구금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48. 많은 나라에서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 당국이나 구금시설 당국이 - 구금시설

당국은 훨씬 더 열악하겠지만 - 구금시설 내 징벌심리를 위해 피구금자에게 법적 대리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구금시설과 정부 당국이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은 피구금자들과 함께 하는 비정부기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선단체들로 하여금 적절한 법률구조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구금자의 법적 수요에 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구금시설 당국은 피구금자와 비정부기구 사이의 접근과 교통을 허용하고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를 진척시킬 수 있다.

구금시설의 규율은 누가 관장하는가?

49. 오직 구금시설 직원만이 피구금자에 대한 규율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 28조 제1항은 특정한 범주와 누진계급에 속하는 피구금자에게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장(president)’, ‘방장(provost)’, ‘장군(general)’, ‘대장(marshall)’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피구금자가 거실을 통솔하도록 하고 그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동료 피구금자에게 규율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을 조직화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인 바, 이 규정은 구금시설 당국에게 이러한 실무관행을 억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징벌

50. 징벌은 어느 피구금자에 대한 진정이나 혐의가 입증된 이후에 부과되는 것으로 구금시설 내 징벌절차의 결과이자 종착점이다. 실무상으로는 많은 구금시설들이 공식적인 징벌부과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금시설 직원이 일부 반항적인 피구금자에게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수단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한다. 최저기준규칙과 기타 국제 기준들이 정립한 징벌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금시설 내 징벌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은 아래와 같이 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담겨 있다.

규칙 제31조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규칙 제32조

- (1)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무관이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 된다.
- (2) 위 항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 (3) 의무관은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51. 인간다움(humaneness)에 관한 오늘날의 기준에 의하면, **규칙 제32조**는 **제31조**와 모순되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보다 발전적인 국제 기준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감식은 피구금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징벌수단이다. **규칙 제32조**는 또한 ‘금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지 못하고, 그것이 징벌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피구금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치’가 일반적 인권기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구금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52. 또한 **규칙 제32조**에서 언급한 일부 징벌수단들은 때로는 구금시설의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실제적인 규율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피구금자에게 “징벌”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규칙 제32조**가 나날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인권규범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최저기준규칙은 어떤 형태의 징벌이든지 적절한 징벌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53. 이 장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바 있는 불복신청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규정들은 징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피구금자는 징벌 유형과 징벌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불복할 권리가 있다. 구금시설 당국은 징벌권의 남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들이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는 징벌 결정에 대하여 정식의 독립적인 심사가 자주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가능한 인권 기준

54.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각각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을 금지하고, 피구금자의 징벌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에 관해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규약 제10조

-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된다.
 -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로서 그의 지위에 상응한 별도의 처우를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 (3) 구금시설 수감제도는 피구금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한 처우가 부여된다.
55. UN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92년 4월 6일 채택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1(44)에서, 이 조항은 각국이 피구금자와 억류된 자를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것이 최저기

준인 만큼 “근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며 각국의 가용자원에 좌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

56.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은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5조, 미주인권협약 제5조 및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57. **고문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 협약 제5조**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억류된 자 또는 피구금자의 위험한 성격이나 구금시설의 안전 부족을 이유로 고문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58.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의 금지는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의 국제적인 승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UN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각 국가 및 정부에게 그러한 행동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9. 구금시설의 징벌(규율 목적을 위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구금자가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제1조 제1항**은 고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처우 또는 징벌은 어떤 경우에 고문, 잔혹한 것, 비인도적인 것, 굴욕적인 것인가?

60. 구금시설 안에서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그 동안 국내·국제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일반적인 실행원칙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징벌은 다음과 같다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그래서 용인될 수 없는) 처우 내지 징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 범한 행위에 비례적이지 않거나, 규율과 질서있는 시설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비합리적인 경우; 또는
- (c) 불필요한 경우; 또는
- (d) 임의적인 경우; 그리고
- (e) 과도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

61. 징벌이 이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 징벌의 유형과 기간;
- (ii) 반복의 정도, 그리고 피구금자의 성별·연령 기타 중요한 신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누적된 결과들;
- (iii)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 (iv) 징벌이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의료진에 의한 의학적 증명의 기회; 그리고
- (v) 적용 법령과의 합치

62. 구금시설 직원은 법에 의지하거나 상관의 명령을 근거로 하여 피구금자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관하여 **UN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공무원은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묵인해서는 안 되며, 상관의 명령 또는 전쟁 상태,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정치적 불안, 기타 어떠한 공공의 긴급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징벌의 비례성

63. 구금시설의 징벌에 관한 인권 기준들은 비례성원칙을 강조한다. 즉, 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대해 불비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관하여, **UN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제3조**는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집행공무원의 강제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UN 법집행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법집행공무원은, 피구금자와의 관계에서, 사망이나 중상해의 급박한 위협에 대응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위협이 있는 피구금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에 규정된 위협이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수반하는 특별히 중한 범죄’의 위협이다.)

구금시설 내 징벌의 종류

64. 최저기준규칙 제29조 (b)와 UN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0조 제1항은 징벌의 종류와 기간을 성문화된 법령이나 규칙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상 규율위반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징벌의 종류는 많고도 다양하다. 이러한 징벌 유형 중 몇 가지를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금치

65. 여러 징벌 유형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금치이다. 최저기준규칙 제32조 제1항은 “의무관이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할” 경우가 아니면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을 금지하고 있다.
66. 최저기준규칙은 금치를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금치가 빈번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징벌 유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2년 4월 3일 일반논평 20(44)에서, “장기간의 금치”는 고문 금지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징벌로서의 금치를 폐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착수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67. UN 인권위원회와 국내외 각 기구들이 금치 문제에 관하여 내놓은 수많은 의견과 결정들을 참조하여, 금치에 관한 바람직한 실행 규칙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장기간의 금치

68. 장기간의 금치는 합법적이지 않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대한 일반논평 20(44)에서, 특별히 “피구금자의 장기간의 금치는 금지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Larrosa v. Uruguay 사건 (Communication no. 88/1981)에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개월 이상의 금치는 장기금치이며 피구금자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기간제한이 없는 금치

69. 금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간제한 없이 피구금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Dave Marais v. Madagascar 사건(Communication no. 49/1979)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인 Dave Marais는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구금형을 복역하고 있었다. 그가 탈옥을 시도한 이후, 그는 3년 이상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가로 1m, 세로 2m의 독거실에 구금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그 국가의 수도인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단 두 번만 잠깐씩 외부로 나올 수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것을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결정하였다.

반복된 금치

70. 금치를 반복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매우 빈번한 일로, 금치는 구금시설 직원들은 소위 문제수용자에 대하여 그가 개별 사건에서 무슨 위반행위를 하였는가에 상관 없이 그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다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금치처분을 받은 피구금자의 경우, 실질적인 정당성이나 근거제시 없이 너무나도 손쉽게 재차 혹은 연속적으로 금치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 금치가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금시설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억제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금치와 다른 징벌의 병과

71. 금치는 다른 징벌과 병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칙 제30조 제1항**의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짐바브웨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치안판사는 주거침입죄로 피구금자를 3년형에 선고하면서 유예되었던 3년의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결정하였고, 형기의 처음과 마지막 각 2주일 동안은 독거구금과 감식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짐바브웨의 대법원은 금치와 감식의 병과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형벌은 중세암흑시대를 연상시키는 것**”이다[S v. Masitere, 1991 (1) SA 804].

징벌에 의료진의 관여 금지

72. 어떤 경우에도, 의사나 기타 자격있는 의료진은 모든 징벌에 있어서 피구금자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나, 징벌을 견딜 수 있는 피구금자의 능력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의 징벌운영에 의료진이 참여하는 것은 의료전문직에 대한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 <편람> **제4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금치와 같은 징벌의 집행 전에 피구금자가 이러한 징벌을 견딜만한 상태인지 의무관이 검사하고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 제32조 제1항**의 조항과 관련되어 특히 그러하다. 1982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와 억류된 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로부터의 보호함에 있어 의료종사자, 특히 의사들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 제3조**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의료종사자, 특히 의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진단하고 보호하거나 개선시키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피구금자나 억류된 자와 직업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의료윤리 위반이다.(강조는 본서에서 추가함)

73. 피구금자가 금치를 견딜 만하다고 증명한 의무관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금치나 유사한 징벌을 받는 피구금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의무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무관은 또한 구금시설 직원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금치나 여타의 징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으며, 구금시설 직원은 그러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유럽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한 사례인데, 스위스 당국에 의해 테러리스트 혐의를 받던 Krocher와 Moller는 심각한 감각 박탈을 수반하는 금치에 처해졌다. 그 동안 그들은 의학, 정신의학적 감시를 받았다. 의학적 권고에 따라, 그들의 구금조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고, 2개월 후에 금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인권협약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Krocher & Moller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8463/78(1983)]

74. 물론 구금시설 당국이 요청한 역할에 대해 윤리적 의문이 있는 경우 윤리적 의무위반에 관하여 구금시설 당국에 고언하는 것은 구금시설 의료진의 당연한 의무이다.

금치에 관한 규칙은 명문화되어야 한다

75. 따라서 반드시 구금시설 규칙에 금치의 집행조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구금시설이 충분한 자격의 의료인력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금시설 당국은 금치집행 피구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와 종교·자선단체들로부터 의료진의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다. 피구금자에 대한 보건의료진의 의학적,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는 이 <편람> 제4장에 매우 상세하게 논할 것이다.

수갑, 족쇄 그리고 계구

76. 최저기준규칙 제33조는 계구를 징벌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수갑, 사슬,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더 나아가 사슬이나 족쇄는 계구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77. 그러나 규칙 제33조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한 계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i) 호송 중 도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ii)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무관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그리고
- (iii)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을 때 소장의 명령에 의해서 ;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무관과 상의하고 상급행정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저기준규칙 제34조는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계구의 형태와 이용방법은 중앙교정당국이 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78. 규칙 제33조와 제34조를 종합해보면, 구금시설 직원은 피구금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

람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의료상의 이유로 계구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피구금자의 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다루는 이 <편람> 제4장에서 서술한다. 그렇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규칙조항들이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하는 피구금자에 대해 계구사용을 금지한다는 사실이다. 피구금자들이 수갑과 사슬에 묶인 채로 법정에서 출석하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최저기준규칙은 이것을 금지한다.

체벌

79. **규칙 제31조**는 체벌을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벌 또한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의 일부로서 피구금자를 때리거나 채찍질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조기석방 기회의 상실

80. 많은 곳에서, 형기감축혜택의 박탈을 포함하여 조기석방 기회의 박탈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징벌유형이다. 이것이 규율위반에 대해 적합하고 보편적인 징벌유형이라 할지라도, 자의적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서 이러한 징벌을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나 반복된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기석방 기회의 박탈은 그것이 무기한으로 되지 않도록 범위와 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 예를 들어, 1983년까지 영국 구금시설 당국의 권한은 제한이 없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례에서, **유럽 인권위원회**는 1984년 구금시설 당국이 피구금자에게 방어를 위한 법적 조력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그에게 570일의 형기감축혜택의 박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형기감축혜택 상실의 기간을 승인하지 않았다. [Campbell & Fell v. United Kingdom, (1984) 7 EHRR 165].

감각 박탈

82. **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구금시설 당국이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또는 사실상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구금자를 인공조명과 불충분한 통풍상태의 거실에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 사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구금자에 대해 24시간 전기 조명을 밝히면서 외부에서만 스위치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 독거실에 구금하도록 하였다. 그 거실은 창문이 없었고, 그는 단지 하루 30분의 운동만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Conjwayo v. Minister of Justice and Legal and Parliamentary Affairs, 1991, (1) ZLR 105 (SC)].

감식

83. **규칙 제32조 제1항**은 의무관이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그가 감식에 견딜 수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식을 징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의 **단락50**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단락69**에서 예시한 짐바브웨의 Masitere사건에서 보듯이, 현재의 경향은 감식을 부당한 징벌유형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의 위반에 대한 징벌의 병과 내지 이중징벌

84. **규칙 제30조 제1항**은 하나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해 두번 징벌에 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구금자들은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을 받은 후에 다른 거실로 옮기거나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일이 흔하다. 최저기준규칙의 이 조항에 따르면, 징벌의 부과와 징벌적 성격의 이송을 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송이 징벌에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섭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징벌의 내용으로 피구금자가 높은 보안등급으로 분류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피구금자를 새로운 등급의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 구금시설 직원은 선택된 징벌이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언제나 부과된 징벌에 직접적이고 논리적으로 관련된 것 외의 추가적인 규율 수단은 억제되어야 하며, 징벌로 인해 피구금자의 권리나 혜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심사

85. 구금시설의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는 위해서는 규율유지의 권한과 절차가 집행되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피구금자들에게 그에 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불복절차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데, 첫째는 구금시설 직원들이 규율유지를 위해 피구금자를 통제하는 권한과 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구금시설의 규율집행에서 발생하는 남용이나 부정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피구금자들이 현행 불복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적용가능한 인권기준

86.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의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피구금자에 대한 규율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공식적인 불복심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7. 이러한 요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에서 강화, 재확인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조

- (3)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

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받아들여진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하도록 보장할 것.

88. 또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2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각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행위를 방지하고, 조사·처벌·시정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구금자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에는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불복심사제도를 마련할 의무도 포함된다.

다른 법적 기준들

89. 규율 및 징벌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구금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 실용적인 불복심사제도와 같은 -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할 의무는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조, 미주인권협약 제2조와 제25조, 고문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협약 제6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불복심사제도의 성격

90. 구금시설 당국은 내부적으로 불복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불복심사제도의 일부분을 이루는 사항이다. 구금시설의 장은 징벌에 대한 내부적인 불복심사절차를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을 진다.
91. 국가의 구금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구금자가 구금시설 안에서 시행되는 내부적 불복심사에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경우에 징벌에 대해 재차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불복심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한 중앙단위의 불복심사제도의 장점은 피구금자가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구금시설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통하여) 문제제기하는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협박의 요소를 상당히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92. 피구금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불복심사제도는 부적절한 관료주의와 절차지연을 지양해야 한다.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은 신속하게 그리고 즉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불복신청 및 결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복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단이나 기구는 심사를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결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93. 구금시설 내에 마련된 내부적 불복심사제도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심사절차에 대해서도 피구금자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이 장의 “**불복신청**” 부분에서 서술한 바 있다. 또한 이 <편람> **제8장 “감찰”**에서도 독립적인 감찰제도의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법심사

94. 또한 법원도 규율과 징벌이 적법하고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구금시설 내 규율과 징벌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고유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95. 사법심사의 커다란 단점은 그것이 소송수수료와 변호사비용 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피구금자는 이것을 감당할 자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징벌이나 기타 처분에 대해 사법적 대응 등 적당한 대응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금자의 권리침해를 감시하고 그러한 침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대개 공익과 피구금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이나 비정부기구들의 몫이다. 피구금자의 보호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진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비정부기구의 개입을 통해 쟁취되어 왔다.
96. 현존하는 여러 어려움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는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당국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위하여 법적 조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피구금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물적 조건-기본적인 필요사항

제 3 장 물적 조건 - 기본적인 필요사항

여는 말

1. 구금시설의 생활조건은 피구금자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디에서 잠을 자고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는지, 침대보와 담요를 갖춘 침대에서 자는지 아니면 단지 천으로 덮인 마루바닥에서 자는지, 목욕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자유로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번 직원에게 요청(때로는 간청)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은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2. 인권에 관한 주요 법원(法源)들은 한결같이 인간 존엄성의 권리를 강조한다. 실제 세계 인권선언은 이 권리를 첫 번째 조문에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기본원칙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은 첫 번째 조문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그러나 극히 열악한 물적 조건은 피구금자의 존엄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잔혹하고 비통상적인 처벌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피구금자의 건강, 심지어 생명에까지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한 규정인 **보호원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에 이러한 열악한 조건은 피구금자를 제압하고 위협하거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일부의 경우는 의무태만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이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
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의 물적 조건의 문제에 관한 몇 개의 세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제 이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예산투입 못지않게 창조적 노력에 의한 시설조건의 개선

5. 구금시설 상황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거주설비와 피구금자의 기본적 필요사항에 관해

서도 막대한 예산투입뿐만 아니라 구금시설 직원의 창조적 노력과 정책변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이 좌우될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다.

6. 피구금자의 거주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이나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을 결정하는 직원들은 수용거실이 피구금자에게는 집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어느 거실인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또는 역으로 가장 불쾌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은 기존 설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한계를 두어야 하는 경우도 알게 될 것이다.
7.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구금생활조건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구금자를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편람>의 출발점” 부분의 단락9와 10을 보시오).

또한 구금시설은 직원에게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들도 합리적인 근무조건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문가단체, 비정부기구, 구금시설 직원을 포함한 관계자들,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일하는 여타의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고, 어쨌든지 간에 구금시설 제도가 그 가용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실설비

독거실과 혼거실

8. 규칙 제9조

- (1)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피구금자가 하나의 방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면적이나 환기, 위생, 물품 등이 기준에 부합하다면 2인 이상을 한 방을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경험상 인정된다. 이런 점에서 규칙 제9조 제1항은 뒤떨어진 것이다. 특별한 이유로 2인 이상의 피구금자를 혼거수용하는 경우 구금시설당국은 동성간의 성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이에 더하여 구금시설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저 물적 기준을 확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1인당 거실바닥 면적과 천정 높이
- 조명과 환기
- 거실 내부의 비밀이 보장된 위생시설에의 접근, 또는 외부의 적당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 침구와 개인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가구

10. 규칙 제9조

(2)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혼거수용은 모든 면에서 안전문제를 발생시킨다. 범죄적이고 폭력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로 함께 수용되는 경우 이들은 취약한 피구금자를 골라내어 괴롭히거나 또는 조직폭력행위 등과 관련된 형태의 위험한 행동을 행하기 쉽다. 혼거수용에서도 일인당 필요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단락9를 참조).

11.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혼거수용에서는 구금시설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금시설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폭력기록이 있는 수용자는 혼거시설에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혼거에 적합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없는 한 피구금자가 혼거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12. 야간에 혼거실을 감독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직원이 한 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사찰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거실에서 불러서 들리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거실 내부에서 항상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찰은 잠자는 피구금자들을 깨우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3. 피구금자를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 명백히 일반적 규칙이라고 간주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규칙 제86조의 다음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용자들에게 적어도 기결수에 준하는 조건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제1장 단락41-43 참조).

14. 매일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구금자들은 다른 피구금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개인생활을 누릴 기회는 이럴 때 더욱 중요하다. 제공되는 수용시설의 형태 - 독거실이나 혼거실 - 는 이와 관련에서 의미를 가진다. 구금시설이 지어지고 사용될 때 이 점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공간

15. 규칙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대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금시설에 관한 국내 규정들은 수용거실의 실질적인 크기, 온도, 환기 등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추운 지역의 수용거실은 더운 지역의 수용거실과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10조의 핵심은 수용시설이 건강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관리자들은 피수용자의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갑갑하거나, 좁거나 축축한 장소에서 자는 것은 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짧은 오락시간을 제외하고 피구금자들이 일하지 않고 방을 떠나지 않을 때 오랜 시간 극도로 혼잡한 거실에 있도록 하는 것은 근육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 방에서 일하여야 할 때 도구들이 더욱 혼잡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존하는 자원을 가지고 과밀수용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고 어떤 구금시설 관리자도 창조적이라면 생각해 낼 수 있다. 여기 몇 개의 예가 있다 :

16. 일부는 바깥에서 일하고 일부는 하루종일 방에서 있는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수용자들은 과밀완화에 있어 우선권을 제공받아야 한다. 하루종일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혼잡함을 느낄 것이다.
17. 과밀수용이 큰 문제라면 구금시설 관리자나 사동담당 직원은 혼잡함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오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더 많은 시간을 방 바깥(복도, 체육관, 뜰 등)에서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구금시설 직원들은 기존 수용공간의 수용자의 수용배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일부 거실은 비어 있는데 일부 거실은 극도로 과밀수용상태인 경우도 있으며, 최선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혼하게 발견할 수 있다.

조명과 환기

19. 규칙 제11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b) 인공 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나쁜 조명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시각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충분한 빛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조명 아래에서만 과도하게 있도록 하는 것은 피구금자의 시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하여도 해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창문 없는 거실(명확한 최저기준규칙위반)은 제거되어야 하고 다른 모든 거실들도 자연조명에 더하여 충분한 인공조명이 갖추어져야 한다. 구금시설 중 피구금자들과 바깥 세상을 격리하기 위하여 “블라인드”라는 창문가리개를 쓰는 곳이 있으나 이는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다.

20. 모든 거실은 내부에 전기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불필요하게 피구금자들에게 무력감과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명의 적정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금시설직원들이 각 거실에 들어가 책 몇 줄을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생

위생과 청결

21. 규칙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개인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생리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미 감금과 관련된 다른 요인에 의해 자존심과 존엄이 흔들린 피구금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22. 피구금자가 언제든지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가 구금시설 직원이 자리에 있고 기꺼이 피구금자의 요청에 의하여 거실문을 열고 피구금자를 화장실로 이끌고 가도록 하려는 마음에 좌우되는 상태에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
23. 방안 또는 방에 연결된 변기는 덮개가 있어야 하고 거주공간으로부터 벽이나 적어도 구획(partition)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피구금자가 거실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구금시설에서는 중요한데 열린 변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기 때문이다. 수세식변기를 모든 거실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용기만큼은 하루에 몇 번 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화장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24. 혼거실에서 보안을 위해 화장실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피구금자와 같은 성별을 가진 직원이 행하여야 한다.

25. **규칙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피구금자로 하여금 그들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어떤 피구금자라도 원하는 만큼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시설의 부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기후와 기온에 맞게 조정된 샤워일정이 있어야 한다.

26. 흐르는 형태의 찬물과 더운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고 모든 구금시설의 목표이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과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열대기후에서는 찬물이 사용될 수 있다. 흐르는 더운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물을 데울 수 있는 설비와 세수대야가 제공되어야 한다.

27. 중노동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피구금자들은 교대시마다 샤워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8. **규칙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피구금자들은 그들의 거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구금시설은 이를 위해 필요도구들, 예를 들어 양동이, 비누, 걸레, 비 등이 보급해야 한다. 각 구금시설은 피구금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일에 대해 보수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통해 공동영역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제6장의 '작업' 참조).

개인 위생 및 관리

29. **규칙 제15조**

피구금자들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물과 화장실용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규칙 제13조에서 강조되었듯이 피구금자들이 스스로의 위생을 유지할 능력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당부분 결정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물론만 아니라 구금시설당국이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비누, 칫솔, 치약과 수건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이들 물품을 받거나 살 수 있게 허용했다 하더라도 구금시설 측은 이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물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구금시설에서 모든 피구금자들에게 당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정이 어려운 자들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사동담당 직원들이 이러한 물품이 가장 필요한 피구금자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0. 화장실 용품에 피구금자의 접근을 조정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여 두어야 할 것은 개인 물품이나 공용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도난이나 싸움을 막기 위한 것이며, 또한 피구금자의 개인적 영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31. 피구금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냄새 또는 벌레가 없도록 하는 것은 사동에서 상당시간 지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하다. 무엇보다 피구금자들에게 그렇지만 구금시설 직원에게도 또한 그렇다. 구금시설 직원들은 강제력 사용을 피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대부분의 피구금자들이 샤워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지만 어떤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피구금자들이 가능한 한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거실 이외의 형태가 이용되는 수용시설의 경우에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33. 생리중인 여성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 속옷과 몸을 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리중인 여성이 사용하는 위생 물품이 지급되어야 한다(패드, 탐폰, 면, 천 등). 이들 조정은 이런 여성들이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다른 여자들보다 분배하도록 하거나 더 낫게는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쉽게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여성 피구금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유아들을 위한 위생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34. 주의할 것은 개인위생과 몸을 씻는 행위가 종교적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 제6조**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은 피구금자들이 그들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개인위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규칙 제16조**
피구금자들이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적절히 보살필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앞의 조문을 확장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수염과 면도를 포함하여 두발의 문제는 중요하게 언급할 사항이 있다.

36. 명시적인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의지에 반하여 머리를 깎아서는 아니된다. 원한다면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수염을 기르지 않는 남자는 정기적으로 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면도날이나 기타 면도기구는 보안상의 이유로 철저히 감독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피구금자들이 면도기구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에이즈의 확산 때문에(구금시설 내에서 에이즈 감염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있고, 심지어“에이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면도기

구를 나눠 쓰는 것은 HIV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면도기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면도기구를 나눠 쓰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염을 기르도록 하는 게 낫다. 개인별로 면도기구를 지급하거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만약 면도기구가 일회용이 아니라면, 이를 다른 수용자가 우연이나 고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들에게 사물함과 열쇠를 지급할 수 없다면 구금시설 직원은 면도날을 모아 소요자의 이름이 명확히 표시된 통에 각각 분리하고 이를 잠금장치가 된 사물함에 넣어 둘 수 있을 것이다.

37. 전통적으로 여성이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구금시설 내에서도 그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보안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고 추가적 예산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이것은 화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의 문제이다) 종종 수용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친다.

의류와 침구

38. 규칙 제17조

(1) 자기 소유의 의복을 입는 것이 금지된 모든 피구금자들은 기후와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복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복은 굴욕적이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의복의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호기능과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기능이다. 의복은 날씨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노동조건에도 맞아야 한다. 적합하고 점잖은 건강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피구금자 자신의 소유인 의복이거나 적어도 죄수복이 아닌 의복인 경우에 특히 그렇다. 자신의 옷을 입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고 자존심과 개성을 신장시킨다. 죄수복은 반대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의복이 지급되는 경우 사복이 죄수복보다 더 선호될 것이다. 작업복이 있지만 일한 후에는 자신의 옷이나 사복을 입도록 허용하도록 권고한다.

39. 규칙 제88조는 특히 미결수용자의 의복을 다룬다.

규칙 제88조

(1)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 미결수용자가 죄수복을 입는 경우 그 죄수복은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8조의 기본 원칙은 미결수용자들은 자기소유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죄수복을 입을 경우에도-규칙 초안 당시에 구금시설 죄수복의 의미로 쓰였을 것-기결수와 다른 것을 입도록 하고 있다. 이런 구별은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낙인을 피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미결수용자들이 자기소유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논리상 다음 단계로 대체 사복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 사복은 구금시설 당국이나 적절한 출처로부터 공급되어

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규칙의 두 번째 부분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하다. 수행자라 하더라도 죄수복을 입는 것은 낙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수행자에 대하여도 자기소유의 옷을 입거나 적어도 사회 일반의 옷과 거의 유사한 옷을 입게 하고 있다. 이것은 환영할 만한 발전이며 수행자와 미결수용자의 의복에 의한 구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0. 그럼에도 죄수복이 아직 사용중인 곳에서는 다양한 치수를 갖춰 피구금자들이 당황스럽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크기의 의복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금시설 직원들은 각 피구금자가 치수를 맞춰 입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치수의 수용자는 의복의 수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구금시설 직원이 쉽게 마련해줄 수 있는 수선도구가 지급된다면 피구금자 자신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종 보안상의 이유로 가위나 다른 날카로운 물건이 특정한 피구금자나 수용거실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선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다른 수용자에게 위탁하거나 바깥으로 의복을 보내는 등의 방법).

41. 죄수복이 일반적인 의복형식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여성이 바지를 입지 않는 나라에서 여성피구금자에게는 바지를 입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42. 규칙 제17조

(2)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이 규칙에 관련된 일부 논점들은 규칙 제13조와 제15조에서 논의한 바 있다. 수용자의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용이하게 데 구금시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열대지역이나 건조기가 갖추어진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옷의 건조는 가장 큰 문제이다. 사동담당 직원들은 그들의 시설과 수용자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기반으로 일정한 지역을 의복의 건조를 위해 줄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화재안전과 의복의 도난 방지(피구금자간 절도가 문제 되는 곳에서)이다.

43. 의복 - 내의를 포함하여 - 이 구금시설에서 지급되더라도 복역 중에는 예를 들어 세탁이나 수선 후에도 소유가 분명하도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물품의 개념으로 다루어 져야한다.

44. 규칙 제17조

(3)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피구금자의 자존심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깥에 있을 때 사람들

의 이목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설 외부에서는 피구금지라고 인식가능한 복장보다는 자기소유의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5. 규칙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깥으로부터 이들 물품을 반입하도록 허용하고 피구금자가 자기 소유의 의복과 신발을 입게 허용되는 곳에서는 형편이 안 되거나 넣어 줄 사람이 없는 피구금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빈곤하거나 외국인 피구금자는 더욱 그렇다. 사복 입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구금시설은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의복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 구금시설 직원들은 애초에는 구금시설에서 지급되는 의복이나 신발이 필요 없는 수용자라도 이후에 대체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6. 규칙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청결한 개인별 침대(나라에 따라 요를 사용하는 경우의 요)와 침구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구금시설에서 목표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때때로 다르다. 구금시설에서 충분한 침구를 제공할 수 없고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에서처럼 직원들이 형편이 어려운 피구금자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급식

47. 규칙 제20조

(1)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강조한 것처럼 음식이 외부에서 구입 등으로 조달될 수 있다면 그러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음식을 공급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구금시설 전문가들은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불평이 그들이 접하는 가장 흔한 불만사항이라는 점에 쉽게 수긍할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들이 이러한 불평이 타당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잘 이용되지는 않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또는 가끔 수용자들에게 배급되는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이러한 방법이 구금시설 내에서 보편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음식의 질과 양에 더하여 영양에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식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기가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구급시설 직원들은 식기들이 청결하고 지역의 방식에 맞게 이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는 구급시설에서는 심하게 냄새나는 변기 등 옆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9. **규칙 제87조**도 급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실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문제는 아래 **단락51**에서 설명한다. **규칙 제87조**는 다음과 같다:

규칙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얻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구급시설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50. **규칙 제20조**

(2) 모든 피구급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식수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거실에 식수가 제공되는 수도꼭지가 없다면 구급시설 직원들은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피구급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끗한 플라스틱 병이나 안전한 용기를 제공하고 그 안에 담긴 식수가 깨끗하며 피구급자들이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용기가 거실 내부에 배치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필수품의 외부 지원

51. 생활필수품에 관한 규정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피구급자의 필요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규칙이 구급시설 제도가 수용자들의 모든 기본적 필수품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급시설 당국이 특정 물품에 대하여는 친척들이 차입하거나 피구급자가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피구급자가 수용생활을 보다 더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급시설에서 충분한 의류, 음식, 침구, 화장실 용품들을 지급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가족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완고하게 반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피구급자들을 벌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시행한다고 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52. 이 제도의 이용에는 위험요소들이 있다. 어떤 피구급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물건을 받았을 때 수용자간의 필연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에 의한 위계질서가 생기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위기나, 태만 또는 혹은 양자의 조합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반입이 현실적으로 기본필수품의 공급자로서의 정부를 대체하고 있는 곳의 제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런 경우 외부의 지원이 없는 피구금자들은 보다 운이 좋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노예가 되어 단순히 생존을 위해 급식이나 침구 등과 관련되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구금시설 직원은 이러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외국인과 극빈한 피구금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4 장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제 4 장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여는 말

1.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구금시설 생활의 가장 취약하고도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서문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제6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1항와 제7조)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보호원칙 제6조에 대한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란 용어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에 상관없이 학대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보호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학대는 억류, 구금된 자를 시각, 청각 또는 공간지각 및 시간 지각 같은 자연적 감각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상황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2. 건강보호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피구금자의 건강은 구금시설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구금시설의 의료 및 약물치료 수준은 최소한 외부 사회에 상응해야 한다. 이는 자유를 박탈당해 국가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제1장 단락22에서 언급한 규칙 제57조에 의하면, 구금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우므로 그 고통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자유의 박탈이 자기 결정권의 박탈을 내포함을 밝히고 있다. 자기결정권이 원칙상 상실될 뿐 아니라 구금시설 체제를 지배하는 규칙에 의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해받는다면, 피구금자는 자신의 건강 상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구금시설에서 피구금자의 생존권과 양호한 건강 기준치를 확보하고, 건강한 생활과 작업 여건, 활동 및 피구금자의 건강을 저해하지 않는 처우 그리고 효과적이며 충분한 의료와 간호의 제공 및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의무이다.

피구금자 및 억류된 자의 건강보호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3. 사실에 입각한 기소, 법 절차와 법률 구조 및 구금시설의 규칙과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시한 공정한 재판은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장기구금형은 피구금자의 복지를 저해하므로 가능한 한 신중하게 선고되어야 한다. 구금시설 관리 한계를 초과하여 형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석방, 가석방, 사면 또는 특별 사면을 적용하거나 권고함으로써 장기 구금을 적절히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이 위중하고 회복의 가망이 없는 피구금자는 석방되어야 하며, 외부 치료 및 가족, 친지 또는 적절한 이와의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미결수용자의 건강보호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규칙 제91조 및 이장의 단락22 참조). 본 편람 서장인 “이 편람의 출발점” 단락13에서 지적했듯이, 최저기준규칙은 구치소, 경찰서 및 기타 시설에 억류된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구금시설에서의 건강 및 의료 관련 규칙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억류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5. 구금은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종종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지 알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비통함, 공격성, 불안,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특히 미결구금 기간 중의 잦은 의사 방문, 수면제, 진정제, 약물(drugs)의 과다 복용, 심지어 자살 기도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건강 역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조건, 심리적·사회적으로 피구금자를 격려하는 처우는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구금시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뢰는 그 자체로 권리구제의 요소이다. 구금시설의 의사, 간호사 또는 보건 직원 모두가 환자는 언제나 질서, 규율 또는 구금시설의 기타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실제로 우선한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을 때에만 그러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건강보호와 그 기능

6.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기준규칙은 필수적인 서비스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피구금자는 그러한 서비스와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처방된 약의 정확한 목적, 그리고 자신들의 진찰 기록 및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피구금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와 의료적 조치에 대해 보다 더 공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권

7. 최저기준규칙에서는 피구금자의 복지를 피구금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며, 그것을 피구금자의 권리로서 공식화하지도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제25조)라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언급하고 있다.

8. 이러한 권리의 제한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와 사회복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 (제29조 제2항)

이러한 제한은 결코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9. 단락7과 8에 언급된 두가지 조항은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피구금자가 자신의 복지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נם을 의미한다. 피구금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기회를 부분적으로 박탈당한다 해도,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할 본연의 책임마저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구금시설 직원들은 피구금자에게 운동, 세수, 면도, 양치질, 금연, 청소 등에 관한 이점을 상기시키고 그 책임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피구금자가 자신의 복지를 위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를 처벌해서는 안 되며, 그에게 건강 및 위생적 위험, 위험의 예방, 응급 처치 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피구금자가 타인에게 공공위생상 유해한 행동을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상의 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없어 피구금자가 자신의 건강과 위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적시에 의사 또는 기타 보건 직원의 상담도 받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피구금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10.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의 의료 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규칙 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의료 지원이 구금시설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구금자가 외부의 의료적 조언이나 외부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합리적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구금시설의 의사 본인은 외부에 의료 서비스를 의뢰하는 데 주저하거나 이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

11. 건강보호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빈번히 제기된다. 많은 나라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불충분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또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매우 낮다. 그런 경우 구금시설의 의료 수준은 외부 사회보다 더 나아야 하는가?
12. 최저기준규칙이나 다른 어떤 국제기준도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수준이 열악하다고 하여 구금시설의 열악한 건강보호수준이 용인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정부는 피구금자 즉 정부의 총체적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구금생활에 더하여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처벌에 부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보호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구금상태 자체로 많은 적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욱 중대하다. 설사 사회의 일반적 상황과 배치될지라도 **규칙 제57조(단락2 참조)**에 따라서 의료보호는 **보호원칙 제24조(단락31 참조)**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건강 : 구금시설 전 직원의 책임

13. 앞의 규칙 규정에서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의무관뿐 아니라 정부와 구금시설 당국의 의무이며 또한 구금시설의 일반 직원, 관리직, 간부 및 기타 피구금자 처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러한 피구금자의 권리와 자격(entitlement)을 보장하고 이에 기여해야 한다. 피구금자의 건강, 특히 정신 건강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 내에서 그들의 직업과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의무관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

14. UN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공무원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전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모든 때에 의료적 주의를 확보하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행동강령은 구금시설 직원까지 포괄하는 것이므로 제6조는 구금시설 직원 또한 이 강령을 세심하게 적용해야 한다. 명백한 오용이 아닌 한, 의사의 진찰을 받고자 하는 피구금자의 모든 요청은 매우 신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신속히 응하고 승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피구금자의 요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만일 사후에 고의적 오남용이 밝혀진다면, 적절한 징벌조치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차후 의사면담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15. 국제사면위원회가 발간한 ‘의료전문가에 적용되는 윤리강령과 선언’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리적 주제의 글들을 선정하여 편집한 것으로 의사, 정신과의사, 간호사 및 심리학자의 국제협회의 성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의 역할 : 환자를 최우선으로

16. 최저기준규칙을 자세히 분석하면 구금시설 의사의 세 가지 역할과 그에 따른 책무를 구별해 볼 수 있다.

1. 피구금자의 **주치의(private doctor)**로서의 의사
2.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사항에서 **구금시설의 장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의사 (예를 들면, 구금시설 작업이나 제도);
3. 시설 내의 전반적 보건위생 상태를 감독하고 보고하는 **공공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의사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구금시설에서 의사로서 일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구금시설 의사에게는 타인이나 여타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피구금자/환자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의사로서 행동해야 한다.

17. 주치의로서 구금시설의 의사는 피구금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구금자의 건강을 위해 활동한다. 예를 들어, **규칙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1항 및 제91조**(아래 참조)는 피구금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역할이 전제되어 있다. **규칙 제26조**(아래 참조)에서는 구금시설 의사의 일반적 책임 즉 공공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예방적 역할에 따르면, 구금시설의 의사는 구금시설의 제반 조건과 서비스로 인해 피구금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나머지 규정들(아래 참조)에서는 피구금자의 건강에 대한 구금시설의 장의 책임으로부터 비롯되는, 구금시설 의사의 추가적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원활한 의료 업무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상황이 피구금자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 또한 포함한다. 그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구금시설의 장은 자주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18.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그와 같은 세 가지 의료적 역할을 서로 다른 의사들이 맡아야 한다거나 또는 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각 역할을 개별 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충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구금시설에서 의사의 우선적, 본질적인 역할은 피구금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구금자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주치의로서의 역할이다. 기타 역할이 무엇이든 피구금자의 건강에 앞설 수는 없다. 구금시설 의사 그리고 다른 모든 의사에게 환자의 건강 상 유익은 최우선시된다. 더욱이 환자인 피구금자에게는 절대적 우선권이 주어진다.
19. 구금시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는 특별한 측면이 있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는 피구금자의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규칙 제62조**는 그러한 지도원리의 하나로서 특별히 중요하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칙 제62조

시설의 의료서비스는 피구금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설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의 열악하고 좋지 않은 환경은 정신이상자 및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구금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규칙 제62조**는 구금시설 의료 업무의 전반적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은 명백히 기결수용자에 대한 것이지만 억류, 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역시 구속력을 지닌다.

아테네 선언

- 20. 구금시설 의사의 막중한 책임은 구금시설 의료서비스에 관한 국제협회에서 만든 아테네 선언으로 명확히 강조되고 있는 바,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구금시설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들은 1979년 9월 10일 아테네에서 모여 히포크라테스 선언의 정신을 받들어 이와 같이 서약한다. 우리는 구금시설에 감금된 이들을 위해 그들이 어떤 이유로 감금되었든, 편견 없이 그리고 각자의 직업 윤리에 따라 가능한 최선의 의술을 베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최선의 건강관리를 받을 피구금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

1. 체벌을 정당화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2. 모든 형태의 고문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정보에 근거한 피구금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체실험에 관여하지 않는다.
 4. 구금 상태의 환자에 대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5. 우리의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필요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모든 의료 의적 사항보다 우선한다.
- 21. 아테네 선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금시설의 장 및 의사는 아테네 선언을 피구금자의 건강보호에 정기 또는 부정기로 관여하는 모든 의무직원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확보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윤리규범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절차가 필요하다.

구금시설의 의무직원들에게 의료윤리를 책임지는 기관에 관한 정보(기관명, 주소 등)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 중 하나이다.

필수적인 서비스제공

- 22. 다음 규정들은 효과적인 의료업무 및 건강보호를 위한 전제로서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2조

- (1)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 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 행정과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 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

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3)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3. 의사의 치료와 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함은 확실히 건강보호의 첫 번째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구금시설의 크기에 따라 상근 의사를 두는 것은 모든 경우 가능하지는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규칙 제22조 제1항**에서와 같이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와의 지속적인 연계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피구금자는 그들의 법적 상황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국가의 가능한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미결수용자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 제91조**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규칙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24. **최저기준규칙 제91조**뿐만 아니라 **기본원칙 제9조** 역시, 현실적 적용상의 복잡성 때문에 이행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구금시설의 의료 업무는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외부 시설과 업무연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의 의료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금시설의 장 및 의사들은 간혹 이 문제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 이는 분명 구금시설의 장이 공식적으로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외부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조직하며 준수해야 할 절차와 조건을 확립하는 것은 구금시설 의사의 책무이기도 하다. 동시에 관료주의로 인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환자의 병원후송이나 외래진료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의무인력

25. **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은 ‘적합하고 숙련된’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 이는 자격있는 의사뿐 아니라 자격있는 간호사까지 포함한다.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의료시설이 없는 구금시설에, 특히 의사의 진료가 제한적인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사는 의사의 한정된 기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몇몇 국가의 구금시설에서는 심지어 직원들에게 종종 의무직원이라 불리는 응급 치료사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고 가벼운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도록 한다(간호사 및 의무직원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26. 책임있는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및 의무직원의 체계적인 역할수행과 구금 시설 의사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는 구금시설

의사가 피구금자에게 처방한 약의 지급 업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약의 조제(예를 들어 가루약 및 물약의 희석 또는 혼합, 개별 피구금자를 위한 분량 준비 등)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일들은 자격있는 간호사의 업무이다. 약을 피구금자에게 지급하는 일은 의무직원이 할 수도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 직원으로서 해당업무에 대해 훈련을 받은 구금시설 직원이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그는 의사의 엄격한 지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약 지급 시의 모든 특이 사항을 의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약을 조제하는 일은 충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게 맡기면 결코 안 된다.

설비

27. 충분한 수의 유능한 의무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에는 잘 관리된 의료설비 및 진료실이 필요하다. 진료실과 약품보관장 등은 반드시 굳게 잠가야 하며, 자격있는 의료진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생과 안전의 유지 역시 그들의 책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동안의 고온으로 인해 약품이 쉽게 부패할 수 있으므로 부패 방지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주치의로서의 의사

28. 구금시설 의사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지침은 **규칙 제25조 제1항**이다:

규칙 제25조

- (1) 의료직원은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환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가 필요한 자는 모두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분명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의미한다 : 첫째 의무관은 자격을 갖춘 의사여야 한다는 점, 둘째 구금시설 의사는 그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표준적인 설비와 적절한 범위의 의약품을 갖춘 수술실 또는 진료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 의사는 피구금자를 다른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료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하면, 구금시설 의사는 그저 수면제나 진통제를 처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폭적으로 직업적인 기준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구금시설 의사는 종종 확실한 의학적 근거 없이, 피구금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진정제를 처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구금시설 의사는 각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와 같은 약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다. 그 외의 이유로 또는 다른 상황요인으로 그러한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규칙 제25조 제1항은 그 맥락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금시설의 장의 조언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조화롭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어렵다. 특히 **단락43**을 참조하기 바란다.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

- 29. **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병증을 호소하는 모든 피구금자들을 매일 진찰하는 일은 의사의 개인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구금 상태로 인해, 피구금자 자신의 행동 즉 자해, 자살기도 또는 피구금자들 간의 폭행으로 인해, 피구금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시민보다 건강상 취약하다. 구금에서 오는 감정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질병은 사실 피병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도 오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그리고 피병 또한 피구금자가 자신의 건강과 상황에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30.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차적 진료 및 응급조치를 위해 자격있는 간호사의 진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 즉각 외부의 의사를 부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 31. **보호원칙 제2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검진을 실시하며 그 다음 필요한 모든 때에 진료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진료와 치료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원칙은 승인을 받은 후에 피구금자를 검진해야 한다는 의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피구금자의 진료받을 권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피구금자에게 진찰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비용은 무료여야 한다.

- 32. 이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피구금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호원칙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칙 제25조

억류, 구금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삼자에 의한 이차적 검진 또는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제26조

억류, 구금된 자가 검진을 받은 사실 및 의사의 성명과 검사 결과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기록에 대한 접근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한 절차는 각국 법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 33. 이 규정들은 구금시설 의사뿐만 아니라, 구금시설 당국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구금시설 당국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원칙 제24조**), 무엇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인지에 대해서(**원칙 제25조**) 그리고 ‘기록에 대한 접근’에 관

해서(원칙 제26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의 견해는 주당사자인 피구금자의 의견과 또 다를 수도 있다. 보호원칙의 위 규정들을 준수하고 견해와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료적 지원에의 접근(단락35, 36), 상해에 관한 통보(단락 34) 그리고 의견 불일치의 경우 결정주체의 권한(단락 86, 87)에 관해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발생시 의무관에게 통보

34. 구금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 구타, 체벌의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피구금자들 간의 폭력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는 알아야 하고, 또 알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담당자들은 관련 피구금자들과 면담하고 즉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구금시설의 장에게 그들의 처우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해야 한다. 자살기도, 자해, 단식농성, 성폭력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해, 구타와 고문의 흔적 등에 대해 반드시 의사가, 가급적이면 독립적인 의사가 검진해야 한다. 또한 의사가 구금시설 당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용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의사의 이차적 소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시설 직원에 의한 고문 및 신체적 폭력의 흔적을 독립적인 (사법) 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다.

보호원칙은 모든 형태의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단락1 참조)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위반행위를 ‘심사 또는 구제 권한이 있는’ (원칙 제7조) 상급기관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직원 및 모두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보호에 대한 원활한 접근기회

35.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의 의료서비스에 공정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직원들이 피구금자의 불만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의료서비스를 즉시 받도록 허용하며,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태도를 고양하고, 피구금자의 진료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36. 피구금자가 의료서비스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때 복잡한 서류양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의 호소가 있는 지 하루 또는 며칠이 지나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행정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야 하나, 그렇다고 신청기록을 남기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의사진료에 대한 신청은 시설 직원이나 피구금자에 의해 간단한 양식의 신청서 또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양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의사는 이러한 신청서나 장부를 잘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구금시설 의사는 자신의 역할을 피구금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37. 구금시설의 의사는 대개 두 가지의 역할, 즉 피구금자의 주치의 및 시설의 장의 조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비밀보호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구금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다.

구금시설의 장에 대한 조연자로서의 의사

38. 구금시설 의사의 두 번째 역할은 개별적·집단적 건강 문제에 있어서 구금시설의 장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건강이 구금시설 생활의 대부분을 포괄한다고 할 때, 이 역할은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해 구금시설의 장을 돕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건강 문제에 대한 고려가 질서와 안전유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금시설 의사는 자신의 기술을 구금시설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발휘하도록 명령받아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 의사의 역할을 경찰수사를 위해 활동하는 법의학자의 역할과 결합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되어야 한다. 경찰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는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그것은 피구금자의 주치의라는 역할과도 상충하므로, 두 역할을 겸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39. **규칙 제32조 제1항과 제2항(제2장의 단락50-53 참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구금자의 징벌에 관련하여 종종 구금시설 의사의 소견을 문의하게 된다. 최저기준규칙의 이 규정은 최저기준규칙이 제정된 이후 보다 진척된 관점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특정의 징벌이나 여타의 고통을 견뎌낼 만한지를 확인해 줌으로써, 당해 피구금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한 인간의 학대에 협조하는 일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된다. (이에 관하여 **단락43-45** 참조)

의사의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40. 의사의 역할에 대한 최저기준규칙의 다른 규정들은 구금시설의 장의 조연자뿐 아니라 주치의로서의 의사의 역할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규칙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진찰, 검진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

- (2)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32조

(3)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 41. 피구금자를 검진하고(규칙 제24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의사는 피구금자의 인격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 또한 그러한 의학적 보고는 피구금자의 시설 내 처지에 그리고 그의 복리와 건강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42. 예를 들어, 검진 및 보고로 인해 피구금자는 중노동을 요하는 작업에 배치되거나 작업을 완전히 면할 수도 있다. HIV 보균자나 에이즈 환자의 예와 같이, 격리되고 그로 인해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징벌이나 격리된 독거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의무관과 징벌

- 43. 피구금자와 억류된 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로부터의 보호함에 있어 의료종사자, 특히 의사들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 원칙 제4조 (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는 의료 종사자, 특히 의사의 의료윤리에 대한 위반이다:

(b) 피구금자 또는 구류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규정에 어긋나는 어떤 형태의 처우 또는 처벌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증명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관련 국제 규정에 어긋나는 대우 또는 처벌을 가하는데 참여하는 행위

- 44. 구금시설 의사로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보안 및 규율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는 것이다. 구금시설의 의사는 임상으로서 구금시설 관리자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 앞서 언급한 이중적 역할 사이에서 시설 의사는 태도와 언행으로 피구금자에게 자신이 구금시설 관리자 편이라는 인상을 형성하지 말아야 함을 뼈아프게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구금시설의 장에 대한 조언자 역할은, 구금시설 의사가 그것을 피구금자의 주치의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면, 가능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의사 역시 최우선적으로, 이 같은 이중적 역할이 수행하기 까다로우며 윤리적으로 활동하는 의사에게는 심각한 양심상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45. 강조해야 할 것은 간호사들 또한 의사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위치에 종종 서게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종속적인 구금시설 직원의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직업적 독립성은 더욱 세심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병원과 같은 특별시설에서 의사는 병원관리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

다. 그러나 관리적 역할과 개별 환자에 관련된 임상적 역할 간의 잠재적 갈등에 대해서는 인지해야 한다.

의학 실험과 연구

4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형기단축이나 경제적 보상 등을 댓가로 하여 의학 실험을 받기로 하는 피구금자의 계약은 그의 자유로운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작은 제7조에 명백히 위배된다. **보호원칙 제22조**는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학적·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은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실험에 대한 면책으로 피구금자의 동의를 이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47. 1964년 제정되고 1975년, 1983년 그리고 1989년에 개정된 **세계의학협회의 헬싱키선언**에서는 이것이 오늘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 문제에 크게 주목하였다. 따라서 헬싱키선언은 구금시설 의사에게 대단히 추천할 만하다. 이 선언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실험이 아닌, 의학적 연구에 관한 것이다. 또한 임상 연구는 그 주제에 내재한 위험만큼 그 중요성이 클 경우가 아니면 적법하게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통증을 경감할 희망이 있다면 의사는 자유로이 새로운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가능하다면 환자의 심리에 맞추어 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설명을 다 해준 후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언은 환자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임상 연구와 연구에 참여한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가 없는 순전히 과학적인 목적의 임상 연구를 근본적으로 구별한다. 후자에 관하여 선언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임상연구피험자의 생명과 건강의 수호자여야 함은 의사의 의무이며, 더 나아가 의사는 피험자에게 임상 연구의 본질, 목적,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임상 연구는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그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으면 수행될 수 없다. 이 동의는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자는 그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법적 상태에 있어야 하며 시험자는 각 개인의 인격을 수호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피험자가 시험자에 의존적인 관계일 경우에도 그러해야 한다. 마지막 두 가지 언급은 명백히 피구금자와 관계된 측면 특히 그들의 동의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이 제공되는 경우에 중요성을 지닌다.

HIV 감염 등 전염성 질환

48. HIV 감염자, 에이즈환자, 결핵, 간염 및 기타 전염성 질환을 가진 피구금자들은 종종 동료 피구금자와 직원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 특히 HIV 감염은 마약 사용과 빈번히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강제 검진 및 혈액 검사가 고려되기도 한다. 또한 차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별도 거실의 격리와 사회적 고립이 실시되기도 한다(제1장의 단락11 참조). 이에 대한 조치들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피구금자, 직원 또는 공중의 비합리적 견해에 기초하여 결정되면 안 된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비밀보호의무에 대한 신뢰여야 한다. 첫 번째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이 같은 질병에 대해 그 실제 감염 위험성 및 감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구금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콘돔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약 사용자를 위해 주사기를 제공하는 등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치들도 고려해야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남성) 피구금자들 간의 성 접촉과 마약 사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구금시설 생활의 일부분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는 구금이 야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 즉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규율로써 또는 형법으로써 물론 방지, 처벌해야 하며 마약 사용에 대해서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에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은 소용없다.
49. 이 같은 구금시설 문제의 커져가는 절박성과 피구금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 양자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구금시설 의사로서의 소임의 일부이다. 후자는 독립적인 외부 건강 서비스의 개입의 관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의료인력의 교육 및 그들의 윤리 규범에 대한 신중한 연구에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장의 단락 15에 언급되어 있다. 특히 HIV감염에 관한 비밀 보호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이 채택되어야 한다.

50. 그러나 해당 피구금자의 격리와, 심지어 매우 제한적이고 잘 갖춰진 조건 하에서의 의학 실험을 허용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몇몇 시설 의사나 소장에게 결코 위임될 수 없으며, 광범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에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기관에 의해 일정한 법적 규칙의 토대 위에서 내려져야 한다.

자살

51. 구금시설에서는 자해와 자살 기도가 종종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신중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루어야 하며, 의례적인 방식이나 규율과 징벌의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절망, 구금시설에서의 사회적 상황(예를 들어, 성희롱), 인종적 문제, 상이한 문화적 배경,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고립(예를 들어, 외국인의 경우 또는 멀고 낮은 장소에 구금되는 경우) 등 많은 개인적 이유들로 그 같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피구금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종종 격리가 사용된다. 그러나 격리는 필요한 조치의 정반대이다. 믿을 만한 구금시설 직원 또는 동료 피구금자에 의한 보살핌과 접촉이 첫 번째 대응이어야 한다.

한편 자살과 자해의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금 상태에서 누군가의 사망이나 중상해는 직원과 피구금자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다. 자살 기도의 이유에 대한 직원 교육(전문가 포함), 징후포착, 취약해 보이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 수립 및 진찰 기록 보관 절차는 필수적이다. 또한 자살이나 자해 기도의 예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실행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2.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든 직원에게 공동으로 있다. 의무직원들은 모든 사건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교회사,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피구금자 등으로부터도 적절한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살 기도를 야기하는 문제들 중 대다수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남편에게 버림 받는 등의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한 피구금자에게는 조건 없는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그들을 밀착 감시하고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일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을 받고 직원 및 동료들의 관심을 인식한 피구금자는 자신의 상황에 더 잘 대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살 문제를 다루는 외부 기관이라면 기꺼이 그들의 업무를 구금시설에 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음식 거부

53. 항의로서 음식을 거부하는지, 아니면 정신적 장애의 징후로 그런 것인지 혹은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선택인지 여부를 잘 구별해야 한다. 음식 거부는 많은 경우 자살기도가 아니라 항의의 표시이다. 그렇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식농성 중인 피구금자를 검진하고 그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은 강제급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의사에게 피구금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동식을 강제 투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구금자의 항의를 무력화하고 그 피구금자의 의사를 무시하도록 하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 이는 분명히 부당한 일이다. **세계의학협회의 단식농성에 관한 선언**에 나와 있듯이, “... **자신의 삶에 관한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은 의사의 임무이다.**” 세계의학협회의 이 선언은 의사에게 있어 환자의 자율권 존중과 환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는 의사가 ‘**단식농성자의 진료에 동의한다면**’ ‘**동의와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의미에서 ‘**그는 의사의 환자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개입 또는 비개입에 대한 궁극적 결정은 환자의 복리를 주요 관심사로 여기지 않는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면서 개별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54. 피구금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정신적 장애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곤경에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단식과 그 기대 효과 사이에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단식을 하는 피구금자가 있다면 그 성공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과 동료 피구금자들은 그에게 이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합리적인 설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의사는 그의 상태를 주시하고 건강상 위험에 관해 조언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피구금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 및 소생조치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을 확립해야 한다.

55. 구금시설의 정책은 **세계의학협회의 도쿄선언(1975년)**과 **몰타선언(1992년)**의 음식 거부 에 관련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삶의 존엄성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를 진다. 생명을 구하는 데 의술을 사용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활동(善行)하는 의사에게는 이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 아닌 한, 환자를 돕기 위해 그의 의술을 적용하기 전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선언도 있다:

개입 또는 비개입에 대한 궁극적 결정은 환자의 복리를 주요 관심사로 여기지 않는 제삼자의 개입을 배제하면서 개별 의사가 내려야 한다.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의사 또는 기타 의료담당자들은 단식농성의 중단을 위해 어떤 종류의 부당한 압력도 가하면 안 된다;
- 의사는 단식농성자에게 단식농성의 임상적 결과에 대해 전문적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 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그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
- 의사는 환자가 단식농성의 지속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중병과 사망

56. 또 다른 문제는 피구금자가 말기증상이나 심각한 무기력상태의 질병을 보이는 경우 또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히 위험한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그와 같은 피구금자는 많은 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만, 당연히 무시되어서도 포기되어서도 안 된다. 확실한 해결책은 구금을 해제하거나 유예하고 사회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비밀보호의무가 허용하는 한, 의사는 가장 바람직한 의료적 방안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57. 구금시설 의사의 복합적 지위로 인해 피구금자의 사망 시에도 신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당연히,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구금시설 내에서의 사망은 의사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지고 즉각 조사되어야 한다. 구금시설 체제나 관계 부처와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가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고인의 유족이 요청한다면 사인을 규명해야 한

다. 이 같은 일에는, 구금과 사망의 상관성 또는 상관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극도의 세심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피구금자의 주치의이자 소장의 조연자로서 구금시설 의사는, 이 같은 이중적 위치 및 그 결과에 관해 그의 환자에게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극도의 정직성으로 임해야 한다. 이는 또한 구금시설 소장 및 기타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보건 및 위생 관리자로서의 의사

59. 구금시설 의사의 일반적 보건, 위생 업무는 비록 그의 피구금자 주치의로서의 역할 및 소장의 조연자로서의 역할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의사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는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된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 상황은 이 같은 상황에 의해 크게 제한된다. 구금시설의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구금시설 내의 보건 위생 상태에 결정적인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구금 자체가 피구금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의사는 구금시설의 제도, 내부 규칙 및 작업 방법이 보건과 위생에 관련되는 한 아래의 **규칙 제26조**에서와 같이 그 개선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보건상황에 대해 조사보고해야 할 의무관의 의무

60. 규칙 제26조

(1)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 c. 시설의 위생 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 e. 체육 및 운동을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2) 소장은 의사가 제25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1. **규칙 제21조(제6장의 단락122 참조)**에 언급된 바, 매일 실시하는 실외운동, 그리고 **규칙 제74조(제6장의 단락101-103 참조)**에서 요구하는 바, 작업의 안전은 비록 의사 혼자만의 책임도 심지어 의사의 일차적인 책임도 아닐지라도, 구금시설 의사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62. 의사는 **단락60**에서 제시된 모든 일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 아래의 몇 단락에서 언급한 것들을 포함하여 구금시설의 건강위생 상태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의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음식과 위생

63.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 관리 감독을 요하는 분야가 바로 음식, 음료수 그리고 위생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 강조했듯이, 양질의 음료수와 그 충분한 공급은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문제이다. 이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위생설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금시설의 거실조건은 대개 열악한 상태이다. 실내공기는 기름, 페인트, 기타 화학물질의 사용 또는 먼지로 인해 오염된 경우가 많다. 청정하고 충분한 외부공기 및 환기는 보건과 위생을 위한 기본적 요건 중 하나이다.
64. 구금시설의 음식과 식사에 대한 검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수시검사, 적합한 방법의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리된 음식뿐 아니라 조리과정 및 주방의 위생 상태, 배식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피구금자가 식사할 때 음식이 따뜻한 상태로 제공되는가? 양은 알맞은가? 배식 설비 및 식기구, 식당 시설은 위생적인가? 또한 소년피구금자, 환자 및 중노동작업을 해야 하는 피구금자를 위한 식사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5. 음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실하고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음식의 주재료는 적합한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후에 알맞아야 한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피구금자의 종교적, 의료적 배경에 따른 특별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 나이 어린 산모, 그들의 아기를 위한 식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같은 요구 기준은 높은 편이다. 지역사회의 식량 수급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사실상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피구금자들을 잘 먹이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외부의 감시

66. 구금시설 의사를 대신하여 지역보건기관의 의료 검사관이 외부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외부의 자원봉사 기관들, 소위 감시 또는 사찰 위원회가 일반 보건 위생 상태와 피구금자의 일반적 복지의 양상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기관들에 보건 및 위생의 문제에 관하여는 의료 또는 그에 관련된 직업의 참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감찰에 관해서는 9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룸).

간호사의 지위

67. 억류된 자와 피구금자의 간호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세계간호사협회**(1975년 싱가포르)의 성명서에서는 **세계간호사협회 간호사강령**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간호사의 기본적 책임은 다음 네 가지이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회복 및 고통의 경감...

그 성명서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세계간호사협회는 피구금자와 억류된 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모든 절차를 비판하며, 더 나아가 피구금자 및 억류된 자에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은 그 문제를 적합한 국가 및, 또는 국제 기구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68. 간호사는 구금시설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직업적 독립성 정도는 의사보다 낮다. 피구금자들에게 간호사는 분명히 덜 독립적인 존재로 보인다. 간호사들 자신도 피구금자의 건강보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규율을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
69. 최저기준규칙은 간호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저기준규칙에서 지칭하는 ‘의료서비스’에 간호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의료서비스는 의사의 지원 없이는 적절히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보다 오히려 더 미묘하다. 간호사는 의사와 비밀정보를 공유하고 의사를 도우며, 중요도가 덜한 일들에서 의사를 대체하기도 하므로 피구금자와 신뢰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간호사의 감독

70. 몇몇 국가에서는 세계간호사협회 간호사강령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료의 직업상 비밀을 지킬 의무는 간호직에 항상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한 이유는 간호사 자격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이며, 또 다른 이유는 구금시설 간호사의 경우 대개 시설 관리직의 한 부분으로 시설 소장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몇몇 국가에서는 구금시설 내에 간호사가 아예 없고, 간호 또는 조력 임무를 일반 직원들이 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 소장, 관리직 직원 및 의사가 국제적, 국내적 간호사 및 기타 보건직원에 관한 윤리 규범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간호사와 보건 직원들에게 윤리 규범의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 및 기타 보건직원에게 자격상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의 윤리 규범에 따른 항의가 인정되지 않는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71. 양심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는 그들의 업무에 책임을 지는 구금시설 의사에 의해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지위

72. 의료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간호사는 의사와 동일한 진정절차에 유사한 이유로 접근할 권한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그들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적 비밀보호의무뿐 아니라 권리에 의해서도 구속받는다. **세계간호사협회 간호사강령**은 구금시설 관리직뿐 아니라 간호사 자신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규범은 억류, 구금된 이들의 간호 및 인권 보호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세계간호사협회**(1983년 브라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간호사는 개별적 책임을 가지나 종종 인권문제에 대해 집단적 접근이 더욱 유효할 경우가 있다. 각국의 간호사 협회는 간호사들이 이 같은 곤란한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비밀 자문, 상담, 지원 및 조력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협회가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전문적 의술

73. 간호사들이 잘 훈련받고 그들이 의료적 전문성을 유지하며, 빈발하는 질병, 새로운 또는 주기적인 질병의 증세 및 그에 대한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심각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치료법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다. 특히 에이즈, 마약 중독 및 기타 전염성 질병의 증세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74. 간호사는 그들의 의료적 전문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 뿐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교육 받아야 한다. 권위적으로 또는 시혜적으로 피구금자를 대하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마치 호의나 특별대우인 듯 행동하는 것은 모두 피구금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니다. 이는 의사에게도 적용되며 구금시설 직원에게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건직원의 역할

75. 의사의 전면적이고 충분히 집중적인 감독 하에 있으며 가능한 한 자격있는 간호사의 조력을 받는, 잘 훈련된, 보건 직원은 구금시설에서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의 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응급조치 및 간단한 조치 제공
 -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의료진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 구금으로 인한 또는 구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책임있는 의무직원에게 보고하는 것
 - 마약 중독 증세, 마약의 금단 증세 및 에이즈와 기타 전염성 질환의 징후를 확인, 보고하는 것.

76. 보건직원은 초기 치료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조건으로서, 잘 훈련받고 지도받아야 한다. 만일 일반구금시설직원들이 78단락에 나온 수준의 훈련을 받는 구금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건직원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직원이 임명이 될 경우에는 일반 구금시설직원이 보건직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해관계의 갈등에 처한 의료인력

77. 구금시설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첫 번째 책임은 구금상태의 환자와 그들의 자율성 보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피구금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리하여 피구금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금시설의 장의 경우 의사 혹은 간호사와 피구금자들간의 상호 비밀유지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비상시의 경우에만 의사의 견해를 물어야 하고, 의사의 조언과 그 가능한 결과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78. 피구금자의 입소시에 몇 가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의사가 이들을 검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의사들은 피구금자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검진이고 왜 하는지에 대해 항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상호 신뢰관계에 기여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의사는 피구금자에게 검진 시행여부에 대한 선택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만약 피구금자가 검진을 거부할 때, 의사가 건강상의 위험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피구금자가 그로 인해 처벌받아서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권리의 침해다.
79. 피구금자에 대한 보건과 의료치료는 구금시설 의사의 관찰을 요하는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 고통호소에 대한 목록이 포함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환자들의 의료기록은 이러한 지침과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단락32에서 인용한 **보호원칙 제26조**는 이러한 요건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그러한 검진의 결과는 반드시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와 그에 의해 지명된 환자의 대리인은 그 기록과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읽을 권리가 있다. 만약 환자가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될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이 이송될 구금시설의 의사에게 이양되는 것은 이송전 환자 의사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 때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아야 한다. 만약 피구금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어떤 의료정보가 시설밖 환자 담당의에게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금시설의사는 환자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출소 후에도 환자의 의료기록의 비밀유지와 기록에 대한 환자 본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80. 의사들은 피구금자의 동의 없이 구금시설의 장에게 보고서 내용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국제규약이 정한대로 피구금자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의사들은 검사결과를 구금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피구금자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 사실 시설 내 안전과 구금시설 외부의 지역사회의 이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경우 의사가 구금시설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예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반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들이 지역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 이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구금자 본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를 직접 해야 한다. 피구금자는 구금시설 소장 또는 담당 직원이 이러한 정보를 의사가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피구금자가 권한 있는 구금시설 직원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회피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치(regime measure)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중요한 영역에 대한 피구금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규율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가 의료보호에 관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할 권리

82.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피구금자들은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기회를 갖는다.

보호원칙 제33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불복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 이러한 일반원칙은 의료문제에 관한 불복신청에도 적용된다. 불복신청절차는 의료관리능력이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관여하도록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기관들은 결정사항을 심사하고, 다른 의사의 견해나 치료를 요구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접근절차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행위를 보장할 때 취해져야 할 절차들에 관해 구금시설 당국에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어야 할 것이다(불복신청에 관해서는 제2장 참조).

83. 불복신청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구금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입소시에 간호사나 신입담당 직원이 구금시설의 규칙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함께 불복신청절차에 대해서 구두와 문서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구금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84. 더 나아가 독립적인 보건기관은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에 대한 감시와 일반적인 의료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도 관여해야 한다.

85. 또한 건강문제처럼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피구금자가 법원에 이의제기하거나 의사나 간호사의 공식적인 전문단체의 징계담당부서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관의 이의제기절차

86. 구금시설 의사와 의무직원들의 피구금자 건강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행동방식으로 인해 의사와 구금시설의 장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은 앞서 언급한 두세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사가 구금시설의 장의 의견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그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식은 상호 분별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 방식이 통하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의사의 미묘하고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 때문에 그리고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와 구금시설 소장 양자 모두 용인할 수 있고 두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구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87.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다만 의사와 구금시설의 장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피구금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피구금자로 하여금 그들의 의료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며 불편부당하게 다루진다는 신뢰감을 강화시킨다. 또한 의사와 의무직원들을 위한 진정처리절차의 구축이 적극 권장된다. 물론 의사들의 환자치료에 대한 진단 혹은 자문 및 사회위생을 위한 기능에 관한 조언들은 개인 혹은 공공보건상황에 위해를 끼칠 정도까지 항상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정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의무관들의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88. 구금시설에서 건강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관행과 보건상황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국제조약들이 구금시설내의 의료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의료관행과 외부 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그리고 충분한 의료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시행할 독립적이고 자격있는 기구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특정 피구금자 집단의 의료문제

89. 보호원칙 제5조 제2항은 특별히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적용되고 여성, 특히 임신부와 수유모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병자 혹은 장애인의 권리와 특별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들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방안들의 필요성과 적용은 사법기구나 다른 행정당국에 의해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피구금자 (및 영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90. 최저기준규칙은 시설내 임신부를 위한 특별서비스가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규칙 제23조

(1) 여성 시설들에서는 산전 및 산후 간호와 치료를 위한 특별한 설비들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날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2) 영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영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해야 한다.

91. 영아를 동반한 피구금자를 위한 최상의 해결책에 대한 관점은 나라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몇몇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보장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Human Rights Watch Global Report on Prison의 권고(뉴욕, 1993년)는 인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 여성 피구금자에게 생리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공한다. 그리고 생리기간 동안 매일 샤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허가한다.
- 노동과 교육 기회가 남녀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여성 피구금자의 친척이 그녀를 접견하고자 할 때 거리가 너무 멀어 방문이 힘든 경우, 행정당국은 여행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방안을 이용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출산 전 피구금자들은 정기적인 산전검진과 적당한 섭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 수유모 역시 적당한 섭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 여성피구금자와 그 자녀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 지도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92. 여성을 위한 구금시설은 어딜 가나 남성 구금시설과 별반 차별화되지 않는다. 그 결과 여성피구금자에게 필요 이상의 보안 시설과 제도가 존재한다.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할 수 있는 작업도 그 수가 얼마 안 되고 흥미 없는 일들이다. 구금시설은 남성 피구금자를 위해 지어졌기에 종종 여성을 위한 특별한 필요를 무시하는 구금시설도 많다. 어떤 나라에서는 심지어 위에서 언급된 휴먼라이트워치의 보고서 권고에 따른 월경, 임신, 모성에 관한 필수요구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여성의 건강 및 심리 상태에 역효과를 낸다. 더욱이 구금시설내의 여성피구금자는 구금시설 직원에 의한 강간 등의 학대에 더 노출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구금시설 의사와 간호사들은 여성피구금자의 상태와 진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그들을 위한 부인과 의료보호가 보장돼야 한다.

마약중독자의 치료

93. 구금시설내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문제가 마약중독의 치료이다. 최저기준규칙은 이 문제

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마약중독이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자유사회에서 마약중독에 대한 일치된 치료법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 1인이 모든 환자에 대해 치료법을 결정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동료 의사 및 이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실시하고, 최신의 자료화된 보고들을 참고로 해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모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지침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사용에 관한 규칙들을 포함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적어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감독된 해독치료절차에 관한 지침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이 있어야 중독된 피구금자에게 별다른 치료나 도움을 생략한 채 약물접근금지를 강제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만성약물중독자나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에는 **단락48**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의 보호

94.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피구금자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피구금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정도의 복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만큼 또 중요하다. **규칙 제82조**와 **제83조**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규칙 제82조

- (1) 정신병자로 판명된 피구금자는 구금시설에 구금해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2)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피구금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 (3) 이들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한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 (4) 행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규칙 제83조

필요한 경우 석방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정신과적 사후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5.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구금자의 수가 많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내 정신과 병원 및 서비스가 이미 많은 환자들로 인해 수용한도를 넘어 범 죄자인 정신과 환자들은 종종 수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장애 및 이상자들은 구금시설내에서도 종종 무시되거나 방치된다. 장기수용자들은 수감생활자체만으로 그리

고 가족과의 유대단절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지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구금시설 공간의 특성으로 과밀수용, 활동이 제한되고, 주간에 수용거실에서 장기간 갇혀있어야 하며, 수용자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범죄 하위문화가 발전하며, 피구금자 사이에 야만적인 위계질서가 성립되는 등 거대 구금시설의 특성 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만성화될 수 있다. 이 상황들은 구금시설을 통제할 직원이 부족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다. 물론 직원 부족으로 인해 직원과 피구금자와의 개인적인 교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충분한 직원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하는 환자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고 구금시설 분위기에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이나 소수자 집단의 피구금자들일 경우, 문화적 차이가 특별한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구금시설 직원이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피구금자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개별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의료적 정신과적 치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보다 큰 책임이 부여된다.

96. **규칙 제82조와 제83조(단락94)**를 준수하려면 긴장이 완화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직원들의 적극적으로 돌봐주는 태도, 직원들로 하여금 피구금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하게 하는 기구, 피구금자들의 청원을 들어주는 절차, 그리고 직원의 구두 및 서면 보고서가 과연 진지하게 작성되고 신속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러한 분위기가 담보될 때, 우선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피구금자들을 식별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럴 때만 피구금자들의 위급 정도에 따라 정신병원에 분류, 배치하고 혹은 구금시설내에서나 가능하면 출소 후에 그들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97. 적절하고 충분한 관심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적 지체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피구금자에 대한 정기적인 기록을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구금시설의사 혹은 정신분석의사들은 구금시설직원들이 그들 피구금자의 행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가르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종류의 피구금자들을 위한 구금시설에는 보고시스템과 정기적인 보고서 평가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별히 자격있는 직원들의 확보가 강조되어야 한다. 심지어 피구금자들을 위한 정신병원에서도 이러한 규칙을 항상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종종 환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기도 한다.

사형수

98. **제1장의 “이 편람의 출발점”**에서 최저기준규칙과 기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칙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UN과 기타 국제단체와 국내 단체들은 사형 폐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99. 1971년 10월 20일의 UN총회 결의안 2857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규정된 생명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함께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의 수를 점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UN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1989/64를 채택했는데, 그 결의안은 “사형수들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형집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안전장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a) 사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는 모든 절차단계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피의자에게 변호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다른 범죄사건 이상으로 제공한다.
- (b)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 관용적 처분이나 사면을 위한 규정과 함께 의무적인 상소절차를 규정한다.
- (c)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될 수 있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설정한다.
- (d) 복역단계에서 혹은 사형집행 단계에서 사형수가 정신지체나 심각한 정신능력 저하를 보일 경우 사형을 취소한다.

사형집행에 관한 의사의 참여에 대한 결의

100. 사형선고 이후 정부의 일시적 사형집행유예 결정으로 인해 사형집행을 기다리게 된 사형수의 상태는 긴급하고 세밀한 관심을 요한다. 장기적이고 불확정된 기간 동안의 중대된 고립 - 또한 사생활보호의 결여 -, 부족한 활동과 열악한 기본적 물질 환경들로 인해 사형수들은 일반피구금자에 비해 훨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상태는 피구금자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과 함께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조건, 여러 가지 활동과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 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형수들의 건강상태가 최소한 다른 피구금자들보다 나쁘지는 않아야 한다.
101. 의료보호라는 맥락에서, 사형집행에 관련한 의무직원의 역할이 문제될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의 단락43과 기타 국제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세계의학협회는 이 문제에 관해 1981년 다음과 같이 사형집행시 의사 참여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가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다만 사망을 확인하는 일은 할 수 있다.”

세계의학협회 사무총장은 1981년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최초로 독극물 정맥주사의 사형이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주에

실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주정부가 행하는 사형집행의 방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의사도 사형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사형집행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의학의 업무가 아니며 비록 사형의 집행방법이 의료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도구로 활용할지라도 의사들의 서비스가 사형집행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사의 유일한 역할은 주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후에 사망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 5 장 피구금자의 외부교통

제 5 장 피구금자의 외부교통

여는 말

1. 구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피구금자의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또는 총체적인 성격은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와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상징된다. 그것은 잠겨진 문, 높은 담벽, 철조망, 절벽, 물, 숲 또는 습지와 같은 물리적인 시설로 만들어진다 (Goffman, Asylums, 1961, p.4).” 그러나 구금 개념의 핵심인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인도적이고 실용적인 고려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유지되는 권리

2. 교류와 의사소통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은 구금이라는 사실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구금시설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권리들의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불가피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5조**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구금이라는 사실에 명백히 수반되는 이러한 제한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구금자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가입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른 국제연합규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에 대한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유지해야 한다.

재사회화 목적

3. 피구금자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인권과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은 피구금자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며 일반시민으로 재통합되어야 한다는 이념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외부세계와의 교통은 피구금자의 사회복귀의 핵심적 부분이다. 이 이념은 최저기준규칙에 매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 **‘피구금자의 처우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61조 제1항).’**

구금시설이 아무리 한정된 범죄예방역할이라 해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 및 타인과의 외부교통의 양과 질은 향상될 필요가 있다. 부당하게 가족과의 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구금시설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규칙 제61조**는 형이 선고된 피구금자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규칙 제4조**의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구금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한다(**제1장의 단락3, 4, 21** 참조). **규칙 제61**

조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개방시설

4. 다음의 경우에 따라 외부교통의 종류는 구별된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전문적이고 제도적 교통, 외부세계와의 기타 관계. 이 모든 것은 개방된 혹은 반개방된 구금시설이라는 상태에서 더 쉽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곳에서 정상성의 원칙(**제1장 단락31** 참조)이 중구금된 상태에서 보다 더 쉽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피구금자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이, 되도록 일찍 개방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면, 피구금자들은 비록 덜 개방되어 있더라도 가까운 구금시설에 머무르기를 선호할 것이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5. 규칙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규칙 제92조

미결수용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피구금자의 외부와의 교통은 특권이 아닌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상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통 자체의 남용이 범위반이 되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로부터 징계의 수단으로 교통을 박탈하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과의 교통에 대해서는 어떤 박탈도 피해야 한다.

가족과의 유대: 재사회화의 기초

6. **최저기준규칙 제37조**와 **제92조**는 모두 가족과의 유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2조**를 피구금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외부세계에서보다도 구금시설 내에서가 더 중요할 것이다. 많은 경우, 근친들이 장기간의 구금기간에 걸쳐 범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구들과 격리된다는 것은 구금의 가장 심한 고통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가족과의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와의) 유대가 재사회화의 가장 공고한 기초를 이룬다고 이해된다(**규칙 제61조와 제79조**). 가족과의 교통이 대부분의 피구금자들에게 중요한 반면 그것은 젊은 피구금자들에게나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각기 특별한 문제를 구성하기도 한다.

친구들과의 교통

7. 그러나 피구금자들의 외부와의 교통을 그들의 가족에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많은 수의 피구금자들은 미혼이거나 이혼했거나 그들의 배우자들과 별거해 있다. 다른 경우에는, 피구금자가 그들의 친척과 만나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칙들의 용어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친척은 단지 보존되고, 확장되고 재정립 될 필요가 있는 외부의 사회적 관계들의 중요한 예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19**에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족구성원을 단지 피구금자를 방문할 권리가 있는 중요한 예의 하나로 들고 있다.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 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최저기준규칙 제37조가 단지 ‘평판이 좋은’ 친구들과의 교통에 피구금자의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에 틀림없다. 첫째로 ‘좋은 평판’이라는 개념은 강한 사회계급적 의미를 내포하며 대부분 피구금자들의 많은 친구들의 방문을 배제하도록 남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평판이라는 개념을 더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는 불가피하게 과거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방문자가 예를 들어 이전의 피구금자였다는 이유로 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피구금자들의 모든 친한 친구와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통들을 특정한 사건과 정보들에 근거하여 보안상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때에만 제한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 될 것이다.

이송에 관한 통지

8. 억류와 이송에 대해 알리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필수전제이다. 이는 또한 “실종”과 독방감금으로 연락두절이 되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는 역할을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자신의 구금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을 개개 피구금자들의 권리로 하고 있다. 이것이 피구금자가 처음 수감될 때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단락 5**에 인용된 **규칙 제92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같은 내용이 다른 시설로의 모든 이송에 적용된다.

규칙44조

- (3) 모든 피구금자는 그의 가족에게 그의 구금과 다른 시설로의 이송에 대한 사실을 즉시 알릴 권리를 가진다.

이는 경찰서 유치장, 재구류시설, 구금시설, 치료구금시설과 다른 모든 억류장소에 적용된다. 이러한 규칙들의 내용은 **보호원칙1**에 재확인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체포 후 즉시 그리고 체포·억류·구금의 장소에서 이송이 있을 때마다 억류·구금된 자는 가족 혹은 그가 선택하는 기타의 적절한 사람에게 체포·억류·구금 사실, 이송 사실 및 현재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통지하거나 관계당국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송에 대해 알리는 것은 피구금자들의 권리일 뿐 아니라 그들 자녀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아동권리협약(1989) 제9조 제4항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게, 아이들 혹은 적절한 경우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부재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곳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리게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9. 구금과 이송에 대한 통지는 “즉시” (기준규칙 제44조 제3항) “지체없이”(보호원칙 제16조 제4항)행해져야 한다. 보호원칙 제16조 제4항에서 “수사를 위하여 예외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동안” 통지의 지연을 허용한 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24시간 안에 통지를 요하는 것은 좋은 관례가 될 것이다 (구금시설의 인권에 대한 국제 보고서 Human Rights Watch Global Report on Prisons 1993, p. 107). 그 함의에 따라, 피구금자가 문맹이라면 구금시설당국은 피구금자가 그러한 정보를 외부로 보내는데 협력할 책임이 있다. 이는 보호원칙 제16조 제3항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소년이거나 자기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계 기관은 직권으로 이 원칙에서 주어지는 통지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 근처의 수용

10.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피구금자의 수용장소에 큰 함의를 가진다. 피구금자가 그의 거주지와 멀리 수용되면 집견(뿐만 아니라 가출소-home leaves)이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러한 점은 보호원칙 제20조에도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 거주지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억류되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송될 가능성은 모든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 도착한 직후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많은 제도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특히 여성 피구금자들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여성 구금시설중 적당한 곳에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거주지 근처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집견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송하는 것도 유용한 관례가 될 것이다. 외국인 피구금자의 경우 함축적 의미는, 가능하다면 그들의 나라에서 복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형자 이송에 관한 모델협정 Mode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 7차 UN범죄총회에서 수용됨, 1985).

서신과 전화통화

11. 외부와의 교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서신교환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는 다소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어왔다. 모든 서신들이 교정직원에게 의해 읽혀지고 검열된다면, 서신교환은 최소한도로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들에만 그러한 검열은 위에서 인용된 **보호원칙의 용어(원칙19)**에 따르면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항상, 피구금자가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신의 수와 그가 할 수 있는 서신교환의 수에는 강요되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피구금자들 사이의 서신교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제도에서는 수신된 편지들만이 점검된다. 금지품이 시설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편지를 읽어서는 안 되고 단지 불법 동봉물에 대해서만 점검해야 한다. 좋은 관례는 피구금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구금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12. 가난한 피구금자들의 서신교환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필기도구와 우표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적되었듯이, 이는 모든 유형의 피구금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체포 상태에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피구금자들에게는 **규칙 제 92조**는 **“재판의 진행과 보안과 소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제한”**을 허용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언어는 규문주의 전통에서 운영되는 형사재판제도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관점에서 보면(**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2항**) 그러한 제한은 문제가 있다.
13. 최저기준규칙도, 보호원칙도 전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에 사설 전화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다면 전화는 피구금자들이 그의 가족과 친족과 교통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나라에서는 전화통신은 서신교환과 매우 비슷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용어는 원거리에 걸친 모든 형태의 통신수단, 즉 기계적 전자적 통신수단 뿐 아니라 전화, 전보, 전신, 팩스에 의한 통신에 적용된다. (Manfred Nowak,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주석서, Kehl 1993. p.304) 전화통신의 정상상태는 구금시설 내에 정기적인 전화부스를 설치해 강조될 수 있다. 많은 구금시설에서 유료전화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전화카드의 발명은 이러한 논쟁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읽거나 쓰지 못하는 피구금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피구금자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구금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면, 접견은 더 힘들 것이고 전화가 대응물로 기능할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예를 들어, 대부분의 피구금자들은 10분정도까지에 이르는 전화통화로 접견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구금시설의 인권에 관한 국제보고서, Human Rights Watch Global Report on Prisons, 1993. p.107).

접견

14. 접견은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편지나 전화통화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다. 대체로 그것들은 물리적인 접촉을 허용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접견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접견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사회적 유대를 유지

시키고 피구금자들의 존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정직원들은 인간적으로 존엄한 분위기에서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되어야 한다.

피구금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접견은 약물, 술, 돈과 무기들을 구금시설 내로 몰래 들여올 가장 확실한 기회이다. 교정직원들이 밀반입자들을 찾고 그들을 규율하는 단속역할에 시간을 불균형하게 쏟다보면, 직원과 피구금자들과의 관계는 커다란 부정적인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안전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단속뿐만 아니라 건전한 관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실제로 이는 인간적이고 환영하는 접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감독의 필요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15. 몇몇 구금시설에서 접견자가 먼 거리에서 와야 할 경우 더 길게 접견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좋은 관례이다. 때로는 더 사적이고 친밀함을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온 접견자들을 만나는 피구금자들에게 특별한 방과 집과 이동주택 등이 제공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과의 모든 접견에 특히 중요하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가족들은 교정직원들이 보이는 거리에서 그러나 들리지는 않는 거리에서 함께 앉아있을 수 있을 필요가 있다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Commonwealth Prison Official, London1993, p.110).’ 친한 친구들과의 접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접견

16. 몇몇의 구금시설 조직에서는, 피구금자와 그들의 접견자의 성적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조직에서는 그러한 접촉들을 묵인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 Costa Rica에서 온 다음의 보고와 같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방을 갖춘 부부간의 접견은 모든 시설에서 정식으로 허용된다...접견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최소한의 보안 아래 구내로 들어가는 허가, 최대한의 보안아래 보다 엄격히 통제되는 두주마다 이루어지는 접견, 부부간의 접견을 위해 부부가 4시간에서 하룻밤동안 머무를 수 있는 침실도 있다.’ (International Prison Watch, Lyon, 1994 p.45) 이러한 제도가 “부부간의 접견”으로 불리며 결혼한 피구금자들의 특권으로 여겨지는 반면, 이는 종종 미혼의 커플들에게도 확장되어 적용된다. 최저기준규칙은 안타깝게도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정상성의 원칙(제60조 제1항)은 그러나 피구금자와 그들의 파트너와의 성적접촉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일상 상태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성적접촉이 허용될 때마다 피임도구(예를 들어 콘돔)를 피구금자와 그들의 접견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귀휴 등

17. 피구금자들의 외부교통을 고양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가출소(귀휴, 외출 등)의 방법을 통해서이다. 피구금자들이 정기적으로 집에 갈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적어도 구금 자체로 인해 생기는 몇몇 문제들을 (피구금자들과 그의 배우자들과의 성적, 관계적 문제들을 포함해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귀휴는 정규적이고 정기적인 토대에서 그리고 투명하게 선정된 피구금자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특권으로

서, 다소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또한 좋은 행형성적에 대한 보상으로서 허용된다면, 이는 가족간의 유대와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평가절하시킬 뿐 아니라 부당한 처우라는 느낌을 야기할 것이다.

접견과 가출소 사이의 흥미있는 절충안이 독일에서는 “Besuchsausgang(접견외출)”(접견대신의 외출)으로 알려져 있다. 적당한 피구금자들은 그들의 접견자들을 구금시설의 담장 밖에서 그들에게 허용된 접견시간동안 만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피구금자들과 접견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조건에서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구금시설에게는 이것은 가능한 접견시설과 직원들이 부족함에 관계없이 접견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

외국인 피구금자들의 접견

18. 외부와의 접견에 관한 한, 외국국적자들을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다르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7차 UN 범죄방지회의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외국인 피구금자들의 가족과 지역사회기관과의 교통은 피구금자의 동의하에 접견과 편지교환에 필요한 모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이하게 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사(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국제인도주의단체에게 외국인 피구금자들을 도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에 관한 UN 표준기준 요약서, Compendium of UN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1992, p. 109).

전문적 그리고 제도적 교통

변호사와의 접견

19. 변호사와의 접견은 구금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접견들을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체포 상태에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피구금자들에 관해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규칙93조

미결수용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시설직원의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하에 들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

20.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다른 종류의 구금자들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방어의 목적에 부가하여, 법적 조력은 구금기간을 줄이거나 구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법적 조력은 구금이라는 사실에 바로 관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변호사와의 접견의 이러한 보다 포괄적인 속성은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원칙(18)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UN의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의 원칙18에도 구체화되어 있다. :

모든 체포되거나, 억류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에게는 지체, 방해나 검열 없이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변호사와 접견하고 의사소통할 적절한 기회와 시간과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담(접견)은 법집행공무원의 보이는 거리 내에, 그러나 청취할 수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밀과 불간섭의 특권은 위에서 논의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수단(편지, 전화, 면회 등)에 적용된다. 이는 구금시설의 직원이 변호사의 편지를 개봉하고, 전화통화를 들어서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 자격소지여부에 대한 의문은 특권적인 접견(privileged communication)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종교대표와의 교통

21. 앞에서 언급된 변호사와의 교통에 적용되는 많은 부분이 똑같이 종교나 윤리단체의 대표자들과의 교통에 적용된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보라)에 규정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종교대표와의 특권적 교통의 권리는 최저기준규칙에 명시되고 설명되어 있다.

규칙41조

- (3) 자격있는 종교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종교대표와의 접견이 행해지는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한 만남들이 매우 사적인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구금시설의 직원도 듣지 못하는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변호사와의 접견과 마찬가지로이다.

공공관청과 기관과의 교통

22. 정부, 법원, 입법기관이나 의회의 구성원과 피구금자들의 교통에 대한 국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교통들에 특전이 부여된다. 즉, 편지는 검열되지 않고, 접견은 감독되지 않는다. 이것은 피구금자들에게 구금시설관리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진정사항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허가하기 때문에 좋은 관례가 된다. 같은 것이 국제적 조직들, 그 중에서도 UN 인권위원회와 다른 인권 단체들과의 교통에 적용된다.
23. 최저기준규칙, 특히 제61조의 지도원칙의 정신에서, 제61조에 규정된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피구금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하는’ 보호관찰 또는 갱생보호단체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단

체들과 피구금자들과의 교통들을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져야 한다.

외교대표와 영사대표들과의 교통

24. 외국국적자들은 그 고국의 외교대표와 영사대표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규칙38조

- (1)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 (2)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규정의 용어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교통들은 ‘허용되어야’하고 관련 피구금자의 동의 없이 구금시설 당국에 의해 행해져서는 안 된다.

2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24-4-1963)에는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을 위해 이 주제에 관해 보다 상세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들이 있다.

- a. 영사관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억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억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c. 영사관은 구금, 억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억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억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들이 그들 국가의 외교대표가 그들의 구금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금시설당국이 피구금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구금에 대해 직권으

로(volunteer)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관례가 될 것이다. 구금시설당국은 우선 피구금자들에게 **규칙 제38조**와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대사관 그리고/또는 영사관과 교통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 (**제36조 c**)에는 또한 피구금자들이 그들의 영사관 또는 외교관 대표가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도 확립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사(ICRC)는 외국인 피구금자가 해당 국가에 본국의 상설 외교 또는 영사대표 부가 없으나 해당 국가에서 ICRC가 중립적 중개자의 역할을 요구받거나, 상설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거나, 정기적 접근이 있는 경우 외국인 피구금자를 도울 책임이 있다.

유지되는 기타의 권리

미디어 접촉

26. 직접적으로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연코 그것이 피구금자에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일한 외부와의 교통방법은 아니다. “**모든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받고 나누는 것**”은 **보편적 인권(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속한다.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보다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말로, 글로, 인쇄물로, 예술의 형태로, 그가 선택한 다른 모든 종류의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간혹 공공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특별히 엄격한 법적요건이 이렇게 제시된 법정 제한의 필요성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에 만연한 피구금자의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규정에 의해서만, 범죄와 소내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Manfred Nowak,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mentary, Kehl 1993, p. 357).

27. 최저기준규칙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

규칙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읽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의 접근에 대한 제한은 많은 국가에서 빈번한 반면, 그 필요성은 많은 경우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정상성의 원칙(**제60조 제1항**)에 의해, 피구금자들에게

항상 구금시설 밖에서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미디어에 대해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관례가 될 것이다. 안전한 구금, 즉 구금으로부터 도주하거나 구금시설 내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용이하게 될 요소에서만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처우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좋은 관례가 아니다. “처우는 외부세계와의 교통을 유지하는 것에 의존한다. 최신의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출소한 구금자들이 시민사회에 시민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는 위치를 차지하도록 고안된 처우에서는 처우의 형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Van Zyl Smit, South Africa Prison Law and Practice, 1992, p.207).

28. 이 시점에서, **규칙 제39조**는 구금시설당국에게 어떤 이유로 그들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피구금자들에게도 “**보다 중요한 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부가적인 의무로 부여한다. 가장 중요한 신문과 다른 정기간행물들을 구금시설 내의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금시설 밖에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기간행물을 피구금자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좋은 관례가 될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가난한 피구금자들에게 신문이나 다른 정기간행물의 무료 정기구독을 제공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
29. 피구금자들에게 외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금시설이 라디오 그리고/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디오 그리고/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대부분의 가재도구의 일상적인 품목이 되는 나라에서는, 정상성의 원칙은 피구금자들이 그들 고유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피구금자들의 재산

30. 재산은 다른 것들 중에 주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구금시설 내에서는, 개인의 소유물을 갖는 것은 외부세계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개인의 주체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 따르면 :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비록 구금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들의 재산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할 지라도 피구금자들에게도 역시 유효하다. 그러나 피구금자들은 그들의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즉 그것을 팔고, 빌려주고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그들은 상속, 증여 또는 매입에 의하여 새로운 재산을 얻을 수도 있다. 구금시설당국은 그러한 거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이 피구금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만을 규정한다.

규칙43조

- (1)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2)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 (3) 피구금자가 외부에서 받은 모든 돈과 소유물들은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4) 피구금자가 약물 또는 의약품을 들여올 경우, 의료관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보관에 관한 한 자명하다. 이러한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피구금자가 위의 규칙1항과 제2항에 언급되고, 담당 구금시설 관리가 서명한 명세서와 영수증과 동일한 사본을 가져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또한 피구금자들이 그들 재산 중 일부를 구금시설 내에서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피구금자들이 그들의 방에서 그들의 소유물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보안에 대한 고려는 소지를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세트가 약물이나 무기를 숨기는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물품들은 봉인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피구금자들이 적어도 그들의 방안에 얼마간의 개인적인 물품(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들의 선거권

32. 어떤 나라에서는, 선거권이 형벌의 일종으로서 또는 일부 특별히 중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결과로서 박탈되기도 한다. 그러한 나라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들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선거권은 완전하게 보유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선거권은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피구금자들 구금됐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정된다. 그러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 따라, 선거를 할 “권리와 기회”는 오직 ‘합리적인 제한’만을 받고 오늘날 모든 시민들에게 인정된다. 구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선거권 박탈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금시설의 직원이 피구금자들의 선거권행사를 돕는 것은 좋은 관례가 된다.
33. 피구금자들이 선거유세에 따라다니며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하여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

은 권리로써 허용되어야 한다(단락 25 참조). 구금시설의 형태에 따라, 후보자들이 구금 시설에 들어와 그들의 잠재적인 지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설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피구금자들의 협의회를 통해 조직될 수도 있을 것이다.

34. 투표 그 자체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동 투표용지 기입소가 구금시설 내로 들어온다. 때때로 심지어 투표함이 개별 감방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피구금자들이 우편으로(우편 투표용지) 투표하거나 대리투표 할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35. 구금시설 내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구금시설의 감방 안에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보통 훨씬 더 어렵다. 피구금자들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나라에서조차도, 기술적인 문제들이 보통 고려된다. 이는 특히 피구금자들이 선거유세를 하거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미디어에 연설하는 것 등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에 적용된다. 진정한 선거유세를 위해서는 구금시설로부터 일시적으로 석방될 것이 요구된다. 국가의 법이 그러한 구금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유세를 하는 것은 일종의 귀휴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러한 경우 교정 관청이 피구금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위해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 관례가 될 것이다.

사망과 중병에 대한 통지

36. 사람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사망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자살률은 외부에서보다도 더 높다. 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감염률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점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 구금시설당국이 피구금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는 자주 문제가 된다. 말기 환자는 구금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규칙 제25조 제2항). 오히려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되거나(규칙 제22조 제2항) 친족들의 보살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최저기준규칙은 구금 시설당국이 친족 그리고/또는 친구에게 피구금자의 임박한 또는 실제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칙44조

- (1) 피구금자의 사망이나 중병 또는 심각한 상해, 또는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 구금시설의 장은 즉시 피구금자가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또는 가장 근친에게 알려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구금자가 미리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2) 피구금자는 근친의 사망이나 중병에 대해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 근친이 위독하게 앓을 경우, 피구금자는 환경이 허락할 때마다 감독 하에 또는 혼자 그의 침상으로 갈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사망, 중병, 상해 또는 정신치료기관으로의 이송의 경우, 구금시설의 장은 필요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제44조 제1항). 이는 구금시설당국이 모든 신입피구금자가 입소시에 가족을 대신하거나 혹은 가족 외에 통지를 받을 사람들을 지명할 것을 요구해야 함을 포함한다. 피구금자의 사망의 경우, 24시간 내에 통지하는 것이 좋은 관례가 된다. 더운 기후에서는 더 짧은 시간 안에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금시설당국은 시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 같은 이유로, 구금시설당국이 근친의 사망이나 중상해에 대해 알게 된 즉시 피구금자는 그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좌우되는 “근친”이라는 용어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관례가 될 것이다.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나 항상 이 범주에 들 것이다. 근친의 병이 위독하다면, 즉 사망이 임박한 경우, 피구금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그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친의 장례식에 피구금자가 참가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6 장 피구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 6 장 피구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는 말

1. 피구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세계인권선언전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인권에 대한 다른 국제법에서 되풀이되고 있고 최저기준규칙에 반영되고 있다. 국제법에 피구금자들을 인권을 존중하면서 다뤄야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 제도나 활동의 면에서 어떤 처우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다. 국제법상의 구속력 있는 수단들도 이러한 정도의 자세한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징벌을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징벌 그 자체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구금자들의 처우 또한 응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최저기준규칙은 처우철학을 반영한다. 최저기준규칙에서의 처우에 관한 주요부분은 기결수에 적절하다. 최저기준규칙의 제2부의 규정들은 그 적용이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들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갱생조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해져서는 안 된다(규칙95조).

피구금자 처우에서 피구금자 원조로

3. 최저기준규칙이 피구금자의 ‘처우’가 그들의 교정(reform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틀이 짜여져 있었을 때에는 이 이유 때문에 형사기결수에게 우선 적용되었다. 이런 처우철학은 최근의 사고에 의하면 뒤떨어진 것이다. 사실 최저기준규칙자체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서칙은 최저기준규칙이 사고가 계속해서 발달하는 분야를 포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규칙3조).
4. 시간은 흘렀다. 구금시설이 범죄자들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구금의 효과에 관한 더욱 현실적인 기대들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피구금자의 지위를 막론하고(of whatever status)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사회복귀를 긍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데에 도움과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강조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적으로 오늘의 피구금자들이 내일의 출소자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구금시설에서의 긍정적인 처우를 통한 재정착의 전망을 증진시키는 것은 피구금자나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된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항상 석방의 전망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사형수에 대한 장기프로그램도 언젠가 있을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

역동적 보안조치(Dynamic security)

5. 최저기준규칙은 처우와 보안이 정반대로 생각될 때 만들어졌다. 피구금자들을 감금하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중요한 구금시설의 기능임에도 최저기준규칙은 보안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최저기준규칙은 보안조치를 처우를 제한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의 틀이 짜여졌을 때에는 역동적인 보안개념이 인식되지 못했었다. 대신 당국이나 구금시설 직원 측의 처우와 보안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만이 있었다. 보안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요즘에는 오래고 힘든 경험으로 처우는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처우는 피구금자들이 협력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 ‘원조’와 ‘자조’같은 말은 이러한 신념을 반영한다.
6. 지금은 일반적으로 피구금자들의 협력이 있어야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구금시설이 운영될 수 있다는고 인식되고 있다. 외부적 보안(도주문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내부적 보안(무질서문제로부터의 해방)은 피구금자들과 구금시설 직원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가장 잘 확립될 수 있다. 이것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좋은 관계와 피구금자들의 긍정적 처우에 기반을 둔 역동적인 보안조치의 핵심이다.
7.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다. 자원문제가 피구금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UN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1(44) 1992. 4. 6 참조**).
8. 피구금자가 미래에 범법행위를 할 위험은 피구금자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피구금자들을 대하는 것, 그들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들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발전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처우의 용어는 넓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금시설지향적이 아닌 인간지향적인 지도원칙

9. 최저기준규칙에서 약속된 어떻게 피구금자들을 처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정신은 최저기준규칙의 제2부(**제56 ~ 64조**)의 도입부에 제시된 지도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보안조치, 분류, 보살핌, 사회복귀의 문제들을 포괄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구금 자체에 고유한 고통을 줄어든게 하는 것
 - 수용생활에서 정상상태의 원칙이 가능하게 하는 것
 - 석방 후 준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장려하는 것
 -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는 것
 - 사회로의 점진적인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것
 - 사회에서 피구금자의 지속적인 자리를 강조하는 것

덧붙여 프로그램들은 비차별원칙을 포함한 최저기준규칙의 전반부에 제시된 기본원칙들을 따른다.

10. 구금시설은 이러한 지침을 실행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정부 또한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이러한 원칙 실현에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독려할 의무가 있다.
11. 지도원칙들의 대부분은 피구금자의 지위(status)에 상관없이 모든 피구금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규칙56조

이하의 지도원칙은 행형시설을 운영하는 정신 및 지향해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상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규칙57조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밖의 처분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실 자체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규칙58조

구금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가능한 한 구금시간을 선용하여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면 법을 지키고 자립적인 삶으로 희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다.

규칙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기타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며 또한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최저기준규칙에 의해 표현된 피구금자에 대한 광범위한 원조는 도덕적이고 치료적인 힘(force)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실제적 변화와 자기발전은 선택에서 온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갇힌 열성이 강권(coercion)으로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은 본질적으로 강압적인 구금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동체 지향적인 구금시설들

13. 규칙60조

- (1)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관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이점을 극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2) 형기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생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연결되어야 한다.

규칙61조

수형자들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닌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관하여 시설 직원들을 원조할 수 있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가능한 한 수용생활을 정상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최근 발전해왔다 (1장 단락 31, 정상성의 원칙부분을 참조). 구금으로 인한 박탈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석방이후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전과자가 생존의 수단으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기 쉽고 그렇다면 사회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란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수용생활은 얼마나 정상상태에 근접한가?

14. 구금시설은 정의상 정상적이지 않다. 구금시설에서의 삶을 더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자유의 상실이 가져오는 박탈을 상쇄할 수는 없으나 구금이 가지는 소외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외부세계와 피구금자들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니셔티브는, 피구금자가 그들 자신의 옷을 입고 스스로 세탁하고 요리할 수 있는 시설같이 수용생활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몇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시설내부의 삶과 외부의 삶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독립심과 책임감을 고양시키고 기본적인 기술을 연습시키며 구금시설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킨다.
15.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피구금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제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구금시설당국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피구금자가 자신의 적당한 의복이 없다면 구금시설당국이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피구금자들이 그 이후에 의복을 세탁하고 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사용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16. 최저기준규칙은 외부세계와의 관계가 수용생활의 필수이고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이라고 인정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형기 말에서야 시작된다면 너무 늦게 된다. 피구금자는 구금기간의 초기부터 이러한 연결의 유지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들의 복지(well-being)

17. 규칙 62조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건강과 안녕은 본질적으로 피구금자의 발전과 종국적인 사회복귀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구금시설에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 제22조는 의무관의 역할을 정의하며 이러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4장 참조).

18. 다른 전문가들은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관련해 역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약물의존증은 피구금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정신의학적인 도움, 상담, 전문가의 치료와 특별히 훈련된 구금시설 직원은 해독치료와 HIV전염을 포함한 건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만큼 중요하다.

다른 집단, 차별화된 프로그램, 차별화된 보안조치

19. 규칙 63조

- (1)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 시설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이 시설들이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 (3) 폐쇄 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 (4) 한편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기준규칙의 이 부분은 보안조치와 처우고려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형에 처해진 이들에 대한 주의깊은 평가를 의미하는 피구금자들의 선택에 대한 생각들을 소개하고 있다.

20. 유연한 분류에 기초한 개별화된 처우의 실행은 차별화된 그룹의 피구금자들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더 다양할수록 피구금자와 함께 일하는 구금시설 직원에게 요구되는 기술의 범위도 더 커진다. 이것은 구금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택 및 훈련, 구금시설과 피구금자의 종류 따라 차별화된 선택과 훈련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21. 최저기준규칙은 보안과 안전상의 고려와 처우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구금시설이나 단위(unit: 구금시설의 하위단위)별로 피구금자들을 분류하여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피구금자들의 집단에 따라 다양화된 보안수준을 적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소개되었으나 완전히 발전되지는 않았다.
22. 전통적으로 보안은 하나의 구금시설 전체가 동일한 하나의 보안단계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하나의 구금시설 내부에 다양한 보안단계에 따라 단위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보안은 단순히 시설경계의 보안(perimeter safe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구금자의 이동성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단위: 인간적 규모

23. 만일 경제적인 이유로 분리된 개방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해도, 실제로는 폐쇄 시설에서 어떤 분류된 피구금자 집단에 대해 더 많은 이동성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24. 다른 처우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독립된 단위로의 시설의 분할하는 것이 개별적 처우에 대해 보다 경제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단위들이 팀 기반위에 조직되어있어서 구금시설 직원들이 특별한 집단의 피구금자들과 함께 특별한 단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선택된다면, 관리 가능한 크기의 단위는 개별 피구금자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한다.
25. 규칙들은 개별화된 처우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내재한 긴장을 드러낸다. 실제로는 큰 시설 내의 단위 간에 효율적으로 조직하여 설비를 공유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값비싼 설비의 사용을 최대화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몇몇 더 작은 시설의 경우 제도와 설비의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구금자들은 좀 더 개별화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을 더 선호한다.

사회적 관점을 가질 권리(right to social perspective)

26. **규칙 64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지권을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석방과 사회복지의 준비과정이 구금시설에서부터 시작되고 석방 이후로

계속된다는 것과 이 기간을 아우르는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형기동안 그러한 기구와 구금시설 행정당국 간의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사회복귀는 부정적인 태도와 싸우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예를 들어 주거와 노동 부분에서)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이 점점 인정받고 있다.

27. 규칙 70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들의 처우에 대한 접근의 일부로 “특전”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바른 행동과 협력에 대하여 특전을 준다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다. 오늘날 강조점은 선택과 책임, 권리와 의무로 옮겨갔다. 구금시설당국은 바른 행동, 협력과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해 일련의 유용한 피구금자 활동의 기회와 개별적 수용을 계획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주의: 70조와 다른 최저기준 규칙 조항에서 “class”라는 용어는 “category” 대신 쓰였다. class라는 단어는 그것의 사회적 함의때문에 이 책자에서는 회피되었다)

28. 피구금자들이 시설의 규칙과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때로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피구금자들을 성인으로 처우하고, 선택의 제한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피구금자들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피구금자들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협력하지 않을 선택을 포함하여,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개별 피구금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차별화와 개별화

피구금자는: 책임있는 인간

29. 최저기준규칙의 이 장은 지도원칙에서 소개된 처우 접근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한다.

규칙 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처우는 그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규칙 66조

- (1) 이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적 배려, 교육, 직업 보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

이 피구금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방을 참작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2) 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향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신학 분야의 자격 있는 의무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고서와 그밖의 관계문서는 개별적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30. 이러한 규정들은 상세하게 피구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의 종류를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피구금자들을 위한 적절한 숙박설비나 음식제공 같이 어떤 구금제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금시설 직원들이 피구금자들을 개별적 인격체로 인식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일상에서 피구금자들에게 책임을 주도록 독려함으로써, 구금시설당국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

치료적 프로그램

31. 최저기준규칙은 규율위반을 포함하여, 행동 문제를 다루는, 치료적 프로그램에 관련한 방향은 제시하지만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분노통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등의 피구금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 프로그램은 성적 규율위반(sexual offending)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요구된다. 각각 다른 분야로부터 기술을 끌어내는 통합된 접근이 중요하다.

32. 일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설에서 약물에 대한 의존(담배와 알코올을 포함하여)은 행동문제와 건강문제로 나타난다. 구금시설로의 불법약물의 반입을 줄이기 위한 보안조치뿐만 아니라, 약물중독을 다루는 것 또한 구금시설에서는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33. 치료의 사회적, 의료적인 면과 연결되어, 인도적인 알코올 중독치료와 장기적 손상완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제3장을 참조). 건강교육과 위험방지는 피구금자의 성, 나이,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모든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피구금자들은 약물사용, HIV 같은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다. 많은 피구금자들이 구금 시설 밖에서는 약간의, 혹은 전혀 건강교육을 받지 못했다. 구금은 피구금자들의 보건과 일반적인 공공보건 양쪽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34. 치료적 프로그램은 주로 정보제공과 격려의 역할을 한다. 경험을 통하여 피구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믿음과 예배의 자유

35. 영적 지지와 지원은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적 믿음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제1장 단락 15, 16을 참조), 피구금자들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러한 종교의식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또한 고난, 독방감금, 자살기도, 단식, 심각한 질병과 사망의 경우에 있는 피구금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의식은 또한 가족의 투병이나 사망에서도 중요하다.

종교는 의무가 아닌 권리

36. 개인적인 책임은 종교에 관한 처우기준의 기초를 이룬다. 규칙 41조와 42조는 이것을 다룬다. 해당 규칙들은 종교를 피구금자의 권리로 여기지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

규칙 41조

- (1) 시설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기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 (3)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규칙 42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피구금자들은 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의 교파의 종교적 의식과 가르침의 책을 소유하여 그의 종교적 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

37. 최저기준규칙은 집단예배에 대해 실용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수와 설비는 시설 내의 피구금자들 안에서 소수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예배가 실행 가능한 것인지 결정한다. 그러나 이 수적인 차이는 가능한 작은 차이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종교가 영향을 미칠 때, 시설이 단지 국교 예배의 기물만으로 꾸며진 단한 곳의 예배당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종교의 예배자들이 예배공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 예배의 종교적 기물은

반드시 이동 가능해서, 그것이 다른 집단에게 모욕을 주지 않아야 한다.

38.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피구금지자들은, 예를 들어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념을 실행할 권리가 없으며, 구금시설당국은 그러한 극단적인 신념의 결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종교적 배려와 처우

39. 구금시설 내 처우의 한 부분으로의 종교적 배려의 포함은(위 **단락 29 및 규칙 66조의 (1)참조**) 많은 부분 교정과 사회복귀에 대한 역사적 태도에 기인한다. 몇몇 피구금지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통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특별히 국교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압이 일어날 위험 또한 있다.
40. 피구금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종교적인 규범이 피구금자의 자기 발전의 진도를 판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피구금자의 종교적 신념이 일반적인 종교 규범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부도덕하다거나 다루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평가된 필요, 계획된 구금

41. **규칙 66조 (1)**(**단락 29**에서 인용) 피구금자의 평가에 대한 기본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시간과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평가 과정을 의미한다. 정신의학적인 정보가 평가과정 안에 포함될 것이 제안되었다. 요즈음에는 소수의 제도들만이 이 정도 정교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만일 정신과적 정보가 포함된다면, 무기정역수와 같은, 아주 심각한 사건의 경우만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평가 기술에 대한 직원 교육 (Staff training in assessment skills)

42. 상담과 평가기술에 대한 직원의 교육은 숙련된 피구금지 평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관련된 평가단의 발전과 결합될 수도 있다. 개별 구금시설에서 전문가의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실재적인 대안은 판결 이후 피구금자의 평가와 배치를 위한 중앙화된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43. (평가에 대한) 갱신에 대한 요구는 피구금자의 필요가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갱신의 과정은 개인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수반해야 한다. 초기의 평가가 중앙화된 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계획과 처우는 처우 계획을 수정하고 진척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개별 구금시설 직원들에 달렸다. 이것은 개별 구금시설 직원들의 훈련에 함의하는 바가 있다.

입소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속적 과정으로서의 계획

44. 개별적인 개인의 구금계획은 피구금자들이 선고 후에 처음 시설에 수용되는 순간부터 처우 받는 방법에 합의하는 바가 있다.

규칙 69조

적당한 형기에 놓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형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과정은 개별적 피구금자에 대해 정보를 알아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를 수동적인 참가자로 기술하고 있지만, 경험상 구금 계획은 피구금자가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45. **규칙 69조**는 특별히 적절한 형기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된다(몇 달보다는 며칠이나 몇 주 같은, 매우 짧은 기간의 복역을 포함해서). 그러나 미결수가 재판 전에 장기간 수용될 것이 확실한 곳에서는, 구금시설 당국은 미결수가 이를 원하고 미결수로서의 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면, 미결수의 개별적인 욕구를 맞추기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모든 책임이 있다.

유연한 제도로서의 분류

46. 최저기준규칙은 분류 제도를 강조한다.
-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 피구금자 그룹을 보호하라.
 - 보안과 통제의 필수적인 수준을 결정하라.
 - 개별적 욕구를 맞추기 위한 다른 활동들을 제공하라.

규칙 67조

분류의 목적은 아래의 것이어야 한다.

- (a)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 (b)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규칙 68조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47. 위 조항들은 분류와 분리의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 모두를 규정한다. 부정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오염과 위험 감소 이론과 관계가 있다. 긍정적인 이유는 사회복지나 개인 발달에 관한 개별적 필요에 기초한다.

48. 분류의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분류의 실행은 이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우선권의 균형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안 위협에 따른 분류는 구금 시설의 편의에 따라, 종종 우선권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에 대항하는 것은 직원 훈련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써의 피구금자를 설명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배려와 치료 기술은 보안과 통제 기술만큼 중요하다. 당연히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은, 예외적인 사례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전적인 보안조치나 통제 기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49. 분류와 분리는 최저기준규칙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 목적은 다른 범주의 피구금자 사이의 중요한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피구금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처우를 통해 구별이 준수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0. 실제로 분류는 분리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분리는 종종 피구금자를 다루는 고비용의 방법이 된다. 특별히 과밀수용상태에서 구별되는 범주의 피구금자들의 분리는 신속히 사라지고 그들 사이의 구별은 불분명해 질 수 있다.
51. 분류 제도는 종종 보안조치와 통제 제한의 기본을 형성한다. 분류 없이는, 보안조치는 탈출할 위험이 가장 높은 피구금자에게, 통제는 문제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은 피구금자에 맞추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별 피구금자에게 불필요한 제재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분류가 상대적으로 미숙할 때, 몇몇 피구금자들은 여전히 불필요하게 제한 받을 것이지만, 피구금자의 대다수는 일반적으로는 소수에게나 정당한, 최대의 보안과 통제 제한을 통해 제한되지 않는다.
52. 엄격한 분류의 위험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인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은, 만약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러한 피구금자만을 수감하기 위한 특별한 보안시설이나 최대의 보안구금시설이 존재할 경우, 이 낙인을 제거하는 일이 어렵다. 재심사와 재평가의 보안과 사회복지의 균형을 찾는 인도적 분류제도에서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적당한 빈도와 개별적 피구금자의 발전에 대한 민감성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

53. 피구금자에 대한 보살핌과 처우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이송시의 그들의 필요와 심지어 권리의 문제이다. 분류제도가 보다 활성화된 구금제도일 수록, 보다 많은 피구금자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한 구금시설에서 다른 구금시설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피구금자의 이송은 종종 특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져온다. 이는 미결수가 구금시설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당연히 최저기준규칙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규칙 45조

- (1)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3)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54. 실제로 구금생활은 피구금자들에게 거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안을 이유로 시설 직원의 감시를 받는다. 최저기준규칙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특히 이송 동안 공공의 주시로부터 보호의 고려를 확인하고 있다.
55. 피구금자들의 이송시에는 학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구금시설 당국은, 피구금자가 더 이상 그 시설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송되는 피구금자들의 안녕과 보호에 대해 책임이 있다. 같은 기준의 보살핌과 조건이 이송 중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피구금자들의 이송 직무는 숙련된 구금시설 직원에 상응하는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7장 참조).
56. 수갑을 찬 상태로 밀접히 감시되고 있는 모습을 대중에게 노출하는 것이 (피구금자들의) 인간존엄의 감정을 침해한다는 것을 피구금자를 동반하는 직원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러한 수단들이 아무리 필수적이라 여겨지더라도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따라서 출발 전에 피구금자들에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수갑을 찬 것인지, 이송시에 이것이 왜 필수적인지, 그들이 공공 시선에 노출될 것인지 노출될 수 있는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피구금자들의 이송을 맡은 사람들이 피구금자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수송 동안 생길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 긴장을 풀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야 한다.

차별화와 보호

5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구금된 개인들을 연령과 법적 지위에 따라 격리할 것을 규정한다(제10조). 피구금자를 성, 법적 지위, 전과 및 연령에 따라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은 같은 구금시설 내에 있는 서로 다른 피구금자 집단의 잠재적 취약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 미결수와 기결수, 민사범과 형사범, 미성년자와 성인이, 처우나 자기개발에 관련되어 매우 다른 종류의 전과와 필요를 가지

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규칙8조**는 특히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b)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성

- 58. 성적 학대, 강간, 성희롱의 위험은 구금시설에 피구금자들을 보호할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의 위험들은 피구금자 집단이나 이성에만 한정된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59. 구금시설에 있는 여성의 성적 학대와 그 보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구금시설 직원의 신중한 심리적 선택에 관한 규칙, (남성)감독관의 밀접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 피구금자와 수용공간에 대한 잦은 의료감독관의 방문에 관한 규칙, 쉽게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포함한 절차에 관한 규칙들이 필요하다.
- 60. 대부분의 구금시설 내에서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여성들을 위한 별도 수용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비용을 초래하기도 하며, 시설의 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남성과 여성을 혼거하도록 하는 경제적 압박은 강하지만, 혼거 수용이 실제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남녀 혼거 구금시설에서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위한 동등하고 격리되는 시설 제공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여성은 공동 사용하는 시설에, 분리되고 평등한 접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1. 여성이 남성 구금시설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잘 선별된 피구금자들이 집중적인 감독과 균형 잡히고 전망 있는 교정제도 아래 뛰어난 자격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성 구금시설이 존재한다. 또한 몇 국가에서는 상당한 감독 아래에서 여성 피구금자가 남성 피구금자와 함께 일

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규칙3조(제1장 단락 4 참조)**에 의할 때, 규칙의 정신만 유지한다면 그러한 규칙에서의 일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한 구금시설 내에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 피구금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장하거나 최소한 작업시간 이외에는 격리시키기 위한 많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나 진정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자격 있는 지원뿐 아니라 잘 선별된 충분한 수의 직원들의 근접 감독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

62. 규칙은 피구금자를 그들의 법적 지위(피체포자와 미결수, 기결수와 민사범)에 따라 구분하며, 피구금자들이 이 구분에 의해 격리될 것을 권한다. **규칙85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63. 피구금자를 법적 지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에 근거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 14, 15조**에 구체화되어 있는 미결수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제2장 참조**).
64. 이론상 미결수에게 격리된 특별한 구금시설이 주어지면 그들의 특별한 권리와 요구(보석에 관한 정보, 변호인과의 대화 및 법적 도움을 받기 용이함)에 대한 배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미결수들만을 위한 구금시설은 종종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를 수용하고 있는 구금시설보다 법적 권리나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비스를 덜 제공하기도 한다.
65. 예를 들어 작업시설은 특별히 미결수들만을 위한 구분된 시설에서는 더 부족하다 ; 미결수들에게 작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회의 제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아래의 **구금시설에서의 근로에 관한 단락** 참조).
66.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일부 구금제도는 미결수들을 위한 격리시설이 실재상 그들에게 더 열악하다는 것을 이유로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 격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한다. 격리구금에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구금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피구금자 집단을 함께 수용하자는 경제적인 주장에 의하면, 적어도 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결수들이 다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다른 형태의 제도로 변형된다. 서비스 제공은 불가피하게 피구금자들 중 지속적인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예상할 수 있는 기간동안 복역할 기결수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67. 미결수들이 피구금자의 상당수가 된다 해도, 미결수와 민사범들은 편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덜 접근하게 되는 소수 집단이 된다. 구금이 일시적이라고 해서 미결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실제로, 많은 구금제도에서 미결수들은 단기구금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구금시설에서 보낸다.

연령

68. 최저기준규칙에는 연령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하여 소년(young)과 성인(old) 피구금자 간에 구별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년(juvenile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유엔최소기준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베이징 규칙)**의 규칙 2.2조 (a)에 “각각의 법제도 하에서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범죄가 다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69. 베이징 규칙 하에서 청소년은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된 시설 혹은 성인과 함께 같은 시설에 수용될 경우 분리된 구역에 구금되어야 한다” (베이징 규칙 13.4 및 26.3). 그리고 같은 원칙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포함되어 있다(제10조 제2항(b)). 비슷한 것으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아동권리협약, UNICEF 1989).
70. 일부 관할지(jurisdiction)에서는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에 따라 간단히 구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령의 한계는 문화권간에 다양하다. 연대기적 연령이 항상 피구금자들 간의 성숙도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
71. 다른 관할지에서는 연대기적 연령과 행동에 따라 연령 구별이 보다 복잡하다. 어떤 관할지에서는 성인 형사범(adult criminal responsibility)의 연령한계가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일부 매우 중요한 범죄는 예외이다. 예를 들어 통상 성인 형사재판과정으로부터 배제되는 연령의 소년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때, 이 소년은 범죄를 다루기 위해 성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72. **규칙85조**
(2)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 이 규칙은 소년 미결수의 무죄추정과 소년 미결수(alleged offenders)에 대한 성인(older) 기결수(convicted offender)의 잠재적 악영향으로부터 소년 미결수를 보호할 특별한 필요를 추가적으로 강조한다.
73. 외부의 정상적인 생활을 참조하는 일부 구금 체계에서는 여성 피구금자들간의 연령 혼

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실제 구금시설 안에 어린 여성과 나이든 여성을 함께 구금하는 것은 때때로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된다. 나이든 여성 피구금자가 어린 여성 피구금자들을 유순하게 만드는 효과(calming effect)를 가지기 때문이다. 남성 피구금자를 연령대별로 혼합하는 것은 보다 문제가 된다.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심각한 이전 범죄 기록을 가진 남성 피구금자들은 소년 남성 피구금자들과 함께 구금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소년과 취약한 피구금자를 못살게 굴고 고통을 주는 것은 특히 마초 문화가 팽배한 남성 피구금자 집단에서 더욱 널리 행해질 수 있다.

74. 소년 피구금자에 대한 성적 학대, 심지어 고문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인과 소년 피구금자를 함께 구금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위험이 특히 더 높을 수 있다. 일부 구금 체계에서는 소년 피구금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나이든 피구금자들과 함께 혼저실에 구금하기도 한다. 이는 학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피구금자로부터 피구금자의 보호

75. 실제 일부 시설은 피구금자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아니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양쪽 다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여, 피구금자들을 각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때 체격, 인성, 성적 지향 그리고 범죄의 성격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 일부 범죄, 특히 어린이 성범죄같은 경우는 특별한 낙인을 동반하며(carry particular stigma) 해당 피구금자들이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설은 모든 피구금자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76. 몇몇 제도에서는 피해를 입기 쉬운 피구금자들은 보호를 위해 분리 구금된다. 때때로 이런 피구금자들은 체벌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거실에 구금될 수 있다. 그들은 구금시설의 일상적 체제하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거의 혹은 전혀 못 가질 수 있다. 그 효과는 체벌에 상응한다(제2장을 보시오).
77. 과거에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구금자들이 다른 피구금자, 혹은 구금시설 직원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요한 그룹으로 여겨졌다. HIV 양성 피구금자, 정신 질환자, 그리고 교육적으로 저능한 사람 등 점점 더 많은 취약그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단의 형성

78. 구금시설 안에서 폭력단의 형성은 일부 피구금자, 특히 소년 피구금자들을 취약하게 만든다. 구금시설 안에서의 마약 거래는 비사용자 그리고 보다 약한 피구금자들에게 압박이 된다.

취약한 피구금자의 분리는 선호되는 선택사항이 아님

79. 구금 당국이 피구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구금자가 취약하기 때문에 혹은 피구금자 자신의 요청에서 의해서 이들을 다른 피구금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확실히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반대로 이는 결국 보호가 보

호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 종종 이는 단지 미봉책일 때가 있다. 그룹의 일부가 취약한 피구금자인 소규모의 피구금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법일 수 있다. 그러한 그룹에서는 이들 피구금자들이 개인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그룹은 보다 잘 통제될 수 있다. 비록 이는 모든 취약한 피구금자 집단에 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시도해볼 수 있다.

구금시설안의 유아(Babies in prison)

80. 최저기준규칙에서도, 다른 국제인권법문서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유아 혹은 아동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제3장 참조). 어린이(young people)를 구금시설에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딜레마는 실질적인 것이다. 아이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어머니와의 유대는 이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수용되어 있을 때 그들은 통상의 의미에서의 피구금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외부사회의 육아 표준에 따라 양육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와 자극의 제공(provision for stimulation)을 포함한다. 유아나 어린 아이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매주 구금시설 환경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학습과 정서적 개발이 지체될 수 있고 사회 적응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구금시설 직원의 전문적 보조

81. 취약한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모든 피구금자는 그들의 필요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HIV 양성 피구금자에 대한 조언과 진료,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학 치료와 치료적 교육, 그리고 치료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들의 필요는 구금시설 안에서 충족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보호관리나 진료를 요할 수 있다.
82. 덧붙여, 구금시설 직원의 훈련은 범죄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피구금자에 대한 전문적 접근을 강조하여야 하고 구금시설 직원과 피구금자 사이의 선입견과 낙인찍는 행동에 도전하여야 한다.

구금시설에서의 활동 : 연합하고, 건설적이고, 비착취적인

83. 최저기준규칙은 무위와 권태가 구금형의 가장 나쁜 측면중의 하나라고 인정한다. 과밀 수용은 수용생활의 공통적 특징이기 때문에 낮 동안 감방 밖에서 피구금자를 머물게 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84.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 기준은 구금시설 밖의 정상 상황이 구금시설 안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권고기준은 피구금자가 낮동안 감방 밖에 있도록 하고, 유용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활동이 피구금자의 개발과 치료에 의미있는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85.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의 시간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피구금자를 착취하는 것에 반하여 피구금자들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자조 혹은 이윤 획득에 기초한 지나친 제도를 경계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는 작업 환경으로부터 피구금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과잉을 줄이는 한 방법은 구금시설을 외부의 전문적 감시원에 의해 사찰을 받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구금시설내 노동

86. 피구금자를 위한 작업은 19세기 이후로 구금 철학(prison philosophy)의 중심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작업은 구금시설 내에서의 주요 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피구금자에게 구금시설 내에서 전시간 작업(full employment)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규칙 71조

- (1)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2) 모든 수행자는 작업의 의무를 지되,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3) 통상의 작업일에 수행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 (4)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행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5)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행자와 특히 소년수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6) 수행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87. 강제노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 분명히 금지된다.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제8조제3항(a)).

강제노동이 가능한 유일한 조건은 법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중노동이 체벌로써 허용되는 경우이다(제8조제3항(b)). 나아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105 제1조(a)에서는 정치적 강제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보유하고 있거나 표현하는데 대한 차별의 수단으로서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88. 분명히 피구금자들은 그들이 작업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을 해야 한다. 자유사회와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작업 부적합을 포함한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요청된다. 만약 피구금자가 질병과 작업을 할 수 없음을 호소하면, 의사는 이들을 검사하고 이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의사의 역할은 제4장에 설명된 대로 미묘하다.

통상 작업일(the normal working day)

89. 피구금자에게 통상 작업일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이다. 피구금자의 작업일을 바깥세상의 작업일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복귀와 재정주(resettlement)의 목적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피구금자의 작업이 통상 작업일 하루동안 지속된다면 분명히 직원배치와 관련한 문제(staffing implication)가 있다
90. 요구되는 작업량이 실제 쉽게 가용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한 일거리가 없고 훈련 혹은 기술 개발이 피구금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일하게 타당한 방법인 경우, 교육 혹은 훈련과 같은 다른 활동이 적합할 수 있고, 때로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작업, 훈련과정

91. 실제로는 많은 피구금자가 과거에 돈벌이가 되는 취업 경험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지 못하였고 종종 고용조건에 맞는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다. 구금시설 밖에서 가능한 일자리가 범위에 있어 제한되어 있고 실업률이 높을 경우 구금시설 내에서의 작업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석방 후 취업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이는 여전히 개인의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
92. 구금시설 내에서 가용한 일부 작업은 구금시설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작업이 작업습관과 기술의 개발과 경험이란 측면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보적(rudimentary)이다. 실제 구금시설 내에서의 작업을 훈련과 연계하고 구금시설 밖에서 인정되는 자격으로 연계하는 것은 가용한 작업을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이용하는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요리나 청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이 작업이 작업 경험 훈련으로써 관리된다면, 피구금자에게 기술증명서(certificate of skills) 혹은 석방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증명서(work reference)를 제공할 수 있다.
93. 실제적으로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은 자격을 갖춘 구금시설 직원과 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자원의 가용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와 장소가 부족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시설 내에 있는 다수의 피구금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직업의 유용성은 구금시설 밖에

서의 피구금자의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석방 후 취업 가능성에 달려있다.

94. 선택은 책임을 갖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실제 작업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선택이 존재하는 경우 피구금자에게 가능한 옵션과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작업 옵션의 개발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 작업 경험을 보다 '정상적'으로 만들고 사회복지의 가망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써 장려된다.

작업 조건

95. 규칙 72조

- (1)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 (2) 그러나 수형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시설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직업 생활은 국가마다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피구금자를 위한 작업이 외부 사회의 일반적 규범에 따라 조직되고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96. 예를 들어 비록 구금시설 외부에서는 대개 자루걸레나 다른 장비가 이용되지만 일부 피구금자에게는 그들의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문질러 닦게 한다. 구금시설 작업의 이러한 방법은 작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아마 틀림없이 피구금자에게 굴욕적인 일일 것이다.
97. 실제 구금시설에서의 작업과 훈련은, 비록 일부 제도에서 수익을 내는 구금시설 작업장의 예가 있긴 하지만, 조직화의 부족과 제품에 대한 불충분한 수요 때문에 적자로 운영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기준규칙은 우선순위가 이윤을 위해 피구금자의 작업을 착취하는 것보다 훈련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행형당국운영 혹은 민간운영 작업

98. 최저기준규칙의 **규칙 73조**는 구금시설 노동의 남용(abuse)을 방지하고 피구금자의 보상을 자극(stimulate)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후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현실적임이 증명되었다.

규칙 73조

- (1)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 (2)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구금시설 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행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99. 행형당국이 운영하는 산업과 농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난 경험은 일부 구금제도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을 민간과의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피구금 노동자의 남용(abuse)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29(“강제노동금지협약”)는 공공기관(public authority)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구금시설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피구금자는 민간 개인, 기업, 혹은 협회의 처분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에게 작업을 제공하는데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국가 감독(state supervision)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피구금자는 민간 기업을 위해 작업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00. 규칙73조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parameters within which contracting may occur)를 정의함으로써 작업 계약자가 피구금자의 노동을 착취할 동기를 없앤다. 피구금자의 작업에 관하여 분명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형당국에는 계약조건이 절대적으로 분명하고 피구금자가 작업을 할지 않을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작업 안전

101.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요구는 지역마다 다양하고 부적절할 수 있다. 규칙 74조에 나와 있듯이, 구금 시설의 감시에 지역사회 보건과 안전 전문가들의 참여는 최소한 외부 수준에서 구금시설내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규칙74

- (1)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 (2)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102. 작업자로서의 피구금자의 보호는 피구금자의 고용에 외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구금자가 외부기업에서 작업했을 때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구금시설의 행형당국이 져야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103. 규칙75조
- (1) 수행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2)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행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 이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 안에서의 작업 조건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법적 조건과 한계 (terms and condition)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피구금자가 시간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수를 지불받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점차 일어나고 있듯이 지역사회에서 작업 조건을 사찰하는 임무를 맡은 지역 관리의 파견을 구금시설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 보상, 급료의 결핍

104. 피구금자의 작업을 위한 기회가 장비나 시설의 양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구금자를 작업교대를 이용해 교대시킴으로써 부족한 작업 설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 작업 기회와 교육이나 기타 활동이 종종 구금시설 시간표 상에서 중복되어, 선택의 여지가 상호 배타적일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가 한 개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금시설의 활동 프로그램이 재조정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는 직원배치(staffing schedule)와 명백한 관계를 있다
105. 실제에 있어 피구금자의 보수가 전무하거나 근소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최저기준규칙은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여긴다.

규칙 76조

- (1) 수행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 (2) 이 제도 하에서 수행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3)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때 수행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06. 최저기준규칙은 소득이 개인용 현금, 가족 부양과 저축에 충분할 정도가 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공 자금으로 저축 대응의 석방 보조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돈은 석방 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비록 통상적인 수준의 임금지급이 어려울지라도, 특히 가족이나 거주지가 없는 피구금자에게는 최소한의 석방금이 요구된다. 일반 임금에 보다 근접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불평에 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몇몇 사기업은 피구금자를 외부와 동등한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실행 중인 사회에서는, 피구금자의 보수구조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에 대한 보수구조는 반인센티브(disincentives)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 훈련, 그리고 치료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포함해야 한다.
107. 이러한 기준이 일관되게 준수되지 않을 경우, 여성 피구금자와 그 가족들은 특정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을 위한 보수가 지급되는 작업이 보다 적은

수 있다. 여성 피구금지자들은 그들의 부재로 인해 곤경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주요 부양자일 수 있다. 만일 피구금자의 임금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된다면, 가족의 부양과 석방시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미결수에 의한 작업

108. 피구금자의 작업에 관련된 부문은 최소기준규칙 중에서 미결수에게 적용되는 장에 나타난다. **규칙89조**와 **제94조**는 각각 미결수와 민사범의 작업에 관한 기준을 지시한다.

규칙89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민사범에 관하여 **규칙94조**는 그들(민사범)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109. 실제에 있어 미결수의 작업을 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권은 작업할 기회 부인으로써 종종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작업의 기회가 제한되어있고, 따라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피구금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결수는 명백한 불이익에 처하게 된다.
110. 작업의 부재로 인해 미결수가, 작업을 하는 미결수보다 장시간 구금되는 결과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의 구류 기간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서, 미결수에게 기타 활동의 선택권(options)을 제공하는 것이 종종 비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실제에 있어 미결수들이 종종 구금과 무활동의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현실에 있어서 많은 미결수들이 장기간 동안 구금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단기 단위(module)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단기 구금을 배려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교육과 오락

111. 교육과 문화 활동은 인간 개발의 근본적인 일부분이다.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구금지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principle 6)**에서 지지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모든 피구금자는 인격의 완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최저기준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규칙77조

- (1)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2)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많은 구금제도에서 피구금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은 다음에 기초하고 있다:

-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 구금생활에 미치는 교육의 교화 효과
-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의 역할
- 피구금자 집단의 여러 교육적 필요

자발적인 상호부조와 외부 원조

112. 피구금자 집단을 위한 훈련과 교육 간의 구별은 미미한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구금시설에서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많은 피구금자들이 미미한 교육적 자질을 지녔으며 기초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구금시설 교육은 집중적인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구금자 집단 속에 기술을 갖춘 개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을 동료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금시설 내의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극복함을 의미한다.
113. 이러한 방침을 위한 첫 단계로서, 제한된 교육 설비를 지닌 행정기관이 일정 수의 임기가 가능한 피구금자를 고용하여, 다른 피구금자들에게 최소기준규칙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성인교육과 학습능력교정교육의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구금시설의 환경 상 중요하다. 많은 피구금자들은 과거에 빈약한 학습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쌓기 위해서 특별한 동기화가 요구된다. 교육은 자존심의 재건과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복귀의 전망을 위한 중대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특수한 필요

114. 최소기준규칙에서 피구금자는 외부 공동체의 연속적인 일부로서의 개인으로 간주된다. 석방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교육과 오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에

서의 삶으로의 전환이 촉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시설의 이용과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구금으로부터 석방으로 이르는 변화가 용이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외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15.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혹은 다른 장애를 지닌 피구금자들을 포함한, 특수한 곤란을 겪는 피구금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적 기술 훈련은 다수의 피구금자들이 해당이 되는 포괄적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위의 **치료 프로그램**을 참조).

도서관 : 직원과 교육적 가치

116. 구금시설 도서관에 의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향상될 수 있다. 외부의 공공도서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오락과 더불어서 피구금자들의 흥미, 요구, 능력에 개별적으로 맞춰진 교육 활동이 제공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씌어진, 최저기준규칙의 **규칙40조**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관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실제에 있어 구금시설 도서관은 공간과 구비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피구금자들은 적절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맹과 흥미의 부재로 피구금자들이 도서관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이 빈약한 설비의 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구금시설에서의 건설적인 시간의 이용이 균형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서적의 제공과 보조를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다.

117. 첫 단계로서, 구금시설 도서관은 구금시설 규칙과, 최저기준규칙을 포함한 피구금자의 권리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내법이나 구금시설의 조례/내규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118. 도서관은 단지 자료의 수집이 아니며, 정보와 설명, 자문을 전달할 수 있는 훈련된 직원의 제공을 의미한다. 간혹 외부 도서관의 사서나 전문 봉사자에 의해 도움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119. 구금시설 도서관은 대개 완벽한 장서를 구비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피구금자들이 광범위한 독서 자료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곳에서는 외부 지역사회의 도서관 서비스와 연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120. 구금시설 도서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주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구금자의 특수한 필요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외부 도서관과의 연계는 타언어로 된 자료의 공급을 도울 수 있다.

121. **규칙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미결수의 특수한 법적 신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즉 이런 신분이 실제로 있어서 미결수들의 도서관이나 활동을 위한 기타 기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핑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결수들은 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필요를 지닌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종류의 정확하고 최신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미결수용자 집단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오락과 스포츠

122. 교육과 작업 외의 추가적인 활동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서 피구금자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78조**는 운동과 스포츠에 관해서 **규칙 21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규칙 21조

(1)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 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 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21조는 피구금자들이 활동과 훈련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는 인상을 준다. 비록 피구금자들에게 참여의 가부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서는 안 되지만, 거부를 하는 경우에 그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징계 처분은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123. 최저기준규칙은 모든 피구금자들이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또한 최저기준규칙은 이것이 소년범들에게는 특별히 요구됨을 인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들이 육체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 활동은 그들이 원기를 분출하고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 이들은 구금의 제약이 특별히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124. 실제에 있어 소년과 성년을 위한 많은 행정기관은 구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운동과 스포츠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스포츠와 여가 장비의 제공이 구금시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실외 공간으로의 접근은 중요하지만, 공 하나로도 전체 피구금자 집단의 여가와 운동을 위한 기본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특히 구금시설 직원이 참여할 경우, 구금시설에서의 건강하고 유익한 관계를 위해 유용하다.

125. 운동과 신선한 공기에 관한 피구금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판례법이 존재한다. 1992년 7월 27일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UN Human Rights Committee) 판례 27에서 (case 27) 개인위생과 야외활동에 대한 5분 제한이 인격적이고 품위 있는 대우를 받을 피구금자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CCPR 제10조/ Parkanyi 대 Hungary). Conjwayo 대 법무부, 법률과 의회 업무, 그리고 Anor에 관한 (Conjwayo v. Minister of Justice, Legal and Parliamentary Affairs and Anor) 판례에서 1991년 1월 24일과 2월 21일에 하라레의 (Harare) 대법원은 피구금자의 운동과 신선한 공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육체적 여가에 관한 국제 위원회의 (International Council on Physical Recreation)** 구금시설 내에서의 스포츠에 관한 권고를 참조할 것)

사회적 관계와 지속적 지원

126. 최저기준규칙은 “사회적 관계와 출소후 지도(aftercare)” 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오늘날 낡은 throughcare라는 용어가 출소후 지도(aftercare)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를 위한 준비가 석방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규칙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규칙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지를 촉진해야 한다.

127. 가족의 유대나 기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의 중요성은 **제5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에서는 피구금자의 석방을 위한 개발과 전망에서 가족과 외부의 접촉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범행의 습성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족과의 안정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위험 감소의 이유에서도 피구금인과 외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구금이 갖는 부담과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28. 오늘날 “바람직한” 관계라는 어구는 (**126 단락, 규칙 79조**) 다소 온정주의적으로 나타난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개발하는 것은 피구금자 개인을 위해서이다. 비록 조언이나 가족 상담이 관련당사자들에 의해 환영받는다면 유용할 수 있더라도, 간섭은 종종 역효과를 일으킨다.
129. 과거에 학대가 발생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 전문적인 직원을 통해서 행형기관

이 가족 관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행형기관이 가족의 동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러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의 보호, 접근, 그리고 후견의 문제가 관련될 경우, 행형기관은 어느 쪽 당사자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편들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130. 최저기준규칙은 석방을 위한 준비가 형의 시작과 함께 착수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복귀를 위한 최상의 전망은 조심스러운 계획과 접촉의 연속성에 의존한다. 아무리 환영 받더라도, 피구금자와 가족에게 석방은 충격적인 경험이다. 왜냐하면 개인들, 가족에서의 그들의 역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각자의 태도가 구금 동안에 필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형 기간 동안의 개인적인 접촉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31. 규칙 81조

- (1)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 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 (3)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기준규칙은 석방 시의 방면에 관한 실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다. 어떤 피구금자들은 부양을 해줄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구금당국은 피구금자가 생존의 방편 없이 구금시설로부터 내보내져 표류하지 않게끔 보장할 책임을 지닌다. 적절한 방면규정이 가져오는 비용은 피구금자가 빈곤과 고립으로 인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생기는 비용과 비교해 적은 것이다.

보호 관찰과 사회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132. 석방 후 피구금자의 사회복귀를 보장할 책임이 또한 지역사회 내부에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비정부기구가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피구금자의 (혹은 전과자) 사회복귀 및 재통합 지원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활동하는 기관을 정부제도 안에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호 관찰이나 사회복귀기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저기준규칙은 그러한 기관의 업무가 구금시설 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간주한다.
133. 피구금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일하는 기구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석방의

전망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너무도 흔히 이러한 일이 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때에는 석방 이후까지 계속될 계획을 위한 기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제 7 장 구금시설 직원

제 7 장 구금시설 직원

여는 말

1. 모든 구금시설에는 높은 소양을 갖춘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저기준규칙 46 조가 규정하듯이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직원들이 매일매일 피구금자들을 직접 접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구금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보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구금시설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그것을 처리하게 된다. 구금시설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축소된 사회이다.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구적인 상호의존 상태에 처해있다. 힘의 불균형 때문에 그 의존도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 피구금자들은 그들의 필요사항들, 음식, 작업, 일반적인 주변 환경,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동료 피구금자들과 직원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

긴장되지 않고(relaxed) 장래지향적인 구금시설 환경

2. 피구금자들 상호간에 맺어지는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밖에 취할 수 없다. 구금시설에서의 생활이 힘겨울수록 피구금자들은 스스로 생존능력과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능력을 더더욱 드러내게 된다. 피구금자들 서로 간에 큰 문제없이 지내도록 만드는 일은 당연히 직원들의 주요한 이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피구금자들이 견딜만한 생활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견딜만한 상황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는 직원들은 피구금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피구금자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하여 너그럽게 관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은 피구금자들이 그들의 자유의 박탈을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구금시설의 보안문제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자신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에 따른 구금을 납득하는 피구금자일수록 그들의 생활환경과 동료 피구금자들, 직원들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고, 반항과 공격성의 표출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을 긴장시키는 상황은 그의 주변에 대한 공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러한 상황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의 안전에 대하여도 항상 주위를 기울이며 서로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동료간의 그러한 연대는 직원들이 자신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진력과 확신을 가져다준다.

3. 피구금자들의 대부분이 언젠가 사회로 복귀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양호한 생활환경과 장래지향적인 행형정책은 피구금자들과 직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피구금자들이 무리없이 준비되어 사회에 사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개인적 소양과 훈련사항

4. 최저기준규칙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금시설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능력에 대하여만 주로 언급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는 직무수행의 구조와 방법에 대한 부연설명이 거의 없다. 시대에 따른 관점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와 방법들도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 하므로 이러한 규정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방법에 관련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아무리 오래된 구금시설이라도 현재의 사회적 조건과 문명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와 방법들에 의해 운영되거나 피구금자들이 처우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5. 다음의 요인들이 직원들의 소양과 그들의 업무환경을 결정짓는다.

- 조직체계
- 채용과 기본 훈련
- 업무능력과 태도
- 업무조건과 지위
- 전문가 직원
- 물리력사용
- 성(性)적인 쟁점들
- 소장의 임무

이하에서는 상기 각 요인들을 차례로 검토해 본다.

조직체계

6. 최저기준규칙은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제1조) 그러나 구금시설이 최저기준규칙에 명시되거나 함축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의 조직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구금시설의 조직과 관련한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들을 최저기준규칙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7. 조직으로서의 구금시설은 더 큰 기구, 보통은 법무부 또는 내무부 소속의 한 부분이다. 관련된 중앙당국은 구금시설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규칙의 근거로 법률을 이용한다. 최소한 이 규칙들은 보안조치, 피구금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규칙, 구금시설과 사회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치, 피구금자의 완전 사회복귀를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한다.

지역적 차원: 감시와 리더십

8. 어떠한 법규가 입법화되면 그 후에는 당연히 그러한 규칙의 실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55조**의 권고와 같이 독립적인 사찰(8장 참조)이 가능하다. 그에 더하여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보장 수단이 강구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적인 수단으로는 흔히,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 위원회에 의한 감시(monitoring)가 활용된다. 이러한 위원회는 충분하고 꾸준한 감시를 위해서 구금시설마다 설치된다. 위원회의 임무는 사전 예고를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기도 하면서 수시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구금시설의 장과 직원, 피구금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감시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보고한다. 불복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그것을 심판하고 해결하는 것도 위원회의 임무이다. 이를 위해 중앙당국 또는 장관을 방문할 수도 있다. 위원회에 법률전문가와 의사, 종교인들을 참여시킬 것이 권고된다.
9. 구금시설은 소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이다. 법령과 행정지침을 해석하여 이를 정책과 행정목표들로 구체화하는 것은 시설의 장의 역할이다. 이러한 행정목표들은 구금시설의 직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활용가능한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이 비록 소장의 지시에 따르지만,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판단의 여지를 가질 수 있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금시설이 마치 군대와 같은 경직성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위계질서와 군대식의 접근은 직원 개개인의 책임감을 억제하고 개인적인 참여와 개별적인 보살핌을 감소시킨다.

업무 수행을 위한 조건들

10. 구금시설의 다양한 기능들은 개개의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과 함께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개개의 직원들이 누구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담하며, 그들의 직무수행을 누가 감독하는지 또한 명확해야 한다. 높은 소양을 갖춘 직원일수록 더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 단위의 책임자가 주재하는 직원들 간의 소규모 회의는 필수적이다. 그러한 회의에서 피구금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구금생활을 보다 유익하게 만들며, 직원들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보들이 교환된다. 해당 단위의 책임자는, 자신의 상급자와 면담을 통해, 최대한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피구금자들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최적화시킬 의무가 있다. 직원들과 피구금자들 모두를 위해 각종 규칙들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면, 여기에는 불복신청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채용과 기본 훈련

11. 규칙 47조

- (1)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2)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3)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구금시설에서 일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전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피구금자들이 언젠가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구금시설은 피구금자들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분노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존재한다. 직원들과 다른 피구금자들이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직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문제점과 위험들을 더 쉽게 파악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의적절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항상 개방적이고 경계 태세를 갖춘 관찰자가 되어야 하고, 피구금자들과 소통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직원의 채용시점부터 업무에 두고 고려할 사항들이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피구금자들의 필요사항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피구금자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부과된 형벌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구금시설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제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들은 구금된 것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다.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은 그 직무가 단순한 사무직의 그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조적인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들은 당해 시설의 일반적인 행정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요구받을 뿐이다.

- 12. 모든 직원들은 적절한 수준의 훈련과 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채용시 면접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심리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구금시설내의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도 요구된다.
피구금자들을 구금시설 상호간 또는 법정과 병원으로 이송, 호송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그들도 피구금자들이 처한 긴장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13. 신입 직원은 반드시 특정한 기본훈련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를 감시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훈련은 될 수 있는 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해서 신입직원이 다른 곳에서도 일할 소양을 갖추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특정한 부문의 훈련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인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유사한 다른 시설의 직원 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다. 구금시설에 특수한 직무에 대해 현장연수를 받도록 하는 보충적 과정도 있을 수 있다. 구금시설 조직은, 잘 훈련된 직원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훈련과정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훈련비용 역시 구금시설 조직이 부담해야 한다.

훈련 과목

- 14. 훈련에는 최소한 아래의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구금시설에 적용되는 법(the law as it applies to prisons)
- 최저기준규칙과 관련한 국제 규약
- 인권교육과 구금시설 관련 법률

대인관계 기술

- 범죄학과 범죄행동의 배경에 관한 지식
- 사회적 기술
- 잠재적으로 자살의 우려가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인식의 개발
- 반항적인 피구금자를 다루는 방법 및 적절한 물리력 사용
- 자기방어를 포함한 신체적 기술
- 피구금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하는 방법에 관련된 지식
- 심리학 지식

보건

- 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
- 잠재적 자살 우려가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인지개발
- 응급처치
- 건강 교육

문화적 인식

- 피구금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와 관련한 지식
- 꾸준히 수용되는 특정 부류, 집단의 문화와 종교에 관련된 지식

정신장애가 있는 피구금자를 다루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 정신의학 지식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직무에 종사할 경우

-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한 지식

구금(Custody)

- 조직과 그 조직의 목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 해당 정부 부서의 조직체계와 다양한 구금시설 관련 기관에 대한 지식

연관되고 필요할 경우

- 순찰을 위해 화기를 소지할 있는 직원들(피구금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들)에 대한 화기사용훈련

- 신체수색을 포함한 수색방법에 대한 훈련

- 15. 유사한 다른 시설의 직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기구나, 학자들의 전문성이나, 또는 구금시설 내 상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훈련은 시험의 형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훈련과정에서의 성적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업무능력

16. 규칙46조

- (1)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구금시설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 (2) 구금시설당국은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원 및 일반공중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3)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규칙 48조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피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규칙 51조

- (1) 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의 직원 대다수는 최다수의 피구금자의 언어 또는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구금시설 직원의 선임은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평균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구금시설의 업무에 적합하다는 점은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선임에 있어서는 지각능력과 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지적능력(cognitive skills)과 태도의 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구금시설 내에서 보통 사용되는 언어로 읽고 쓰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지원자들은 어느 정도의 심리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도 구금시설 직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흔히 소수민족 피구금자들의 비율은 사회보다 구금시설 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그들과의 소통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에 직

원들에게는 더 나은 업무환경이, 많은 피구금자들에게는 더 나은 생활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구금시설과 피구금자에 대한 직원의 태도와 판단

17. 구금시설 직원의 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직원들은 구금시설의 존재와 기능을 납득하고 구금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가적인 고통의 부과를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정부가 형벌을 부과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것이라는 점을 납득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직원은 국가의 권한을 받아들여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국가의 행위에 판결을 내리는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18. 직원 피구금자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구금자들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 바로 직원들의 직무인 것이다. 만약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의 규칙을 어긴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거나(seek their own advantage),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또는 도주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도움은 중단되게 된다.

구금시설 내에서는 피구금자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그리고 구금시설 전체를 위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판단을 피구금자들과 직원들 모두가 명확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비유할 수도 있다.

피구금자들을 직접 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성실함, 헌신, 피구금자들에 대한 애정, 동등한 기회제공, 그리고 제도개선의 책임 등이다. 그 역할을 맡는 직원들은 그들이 피구금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동료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피구금자들과 직원들 상호간의 처우와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긍정적인 관계설정은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부각되게 하고 단점은 축소시킨다.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는 시설 내의 모든 업무관계(working relationships)와 분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피구금자들의 사회복지라는 구금시설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한다.

업무조건과 지위

19. 규칙 46조

- (3)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구금시설의 업무는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또한 주위 환경도 긴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힘든 직업이 충분한 보수를 받고 업무의 감당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구금자들의 그것보다 열등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모든 곳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식당도 존재해야 하며, 운동시설과 도서관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근무조건

20. 모든 직원에게 직원의 임무가 적혀있는 계약서를 주어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주 5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좋은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좋은 근무조건이란, 적당한 보수상태에 있는 적절한 건물, 양호한 환경과 안전성을 말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근무조건외의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시설직원과 피구금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야 한다.

보수

21. 적절한 보수가 중요한 이유는 매우 많다.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들은 업무수행을 더 충실히 할 것이며, 그 결과 도주와 시설내의 긴장, 반항이 줄어들어 결국 피구금자가 통제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국가마다 생활수준의 차이가 많으므로 적절한 보수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일단, 직원들은 그들이 사회평균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수입은 직원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부업을 하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나아가 직원들이 뇌물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구금시설의 부패는 무법상태, 부정의, 공포, 불확실성, 보안상의 위협, 폭동 등을 야기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비밀주의의 폐기

22. 모든 교정시설은 여타의 주변 건물과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구금시설 직원의 업무는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대중들은 구금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의 삶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피구금자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한 독방에 갇혀 지내야 마땅한 죄많은 존재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23. 구금시설의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을 것이다. 수백 명의 피구금자들이 있는 큰 규모의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중앙당국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하고, 개개의 구금시설에서는 책임자의 지도력과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반면 구금시설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피구금자들은 많은 경우 구금시설 내에서 수년 동안 생활하며 출소 후 다시 법을 어긴다.

이를 보는 제3자들은 구금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구금시설의) 외부와의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구금시설 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 피구금자들의 처우와 일상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

직무의 변화(change)

24. 구금시설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직무를 변동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관간의 상호교류, 예를 들어 아동보호위원회와 정신장애 관련 업무기구 간의 교류에 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직원들이 나태해지거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결국 관련 영역의 경험을 가진 직원들에 의하여 전체 제도가 신선한 자극을 (fresh input) 얻고자 하는 것이다. 직무순환은 구금시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다른 구금시설에서의 경험이 또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직원교류도 역시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조건 때문에 이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별 문제

25. 규칙 53조

- (1) 남녀 피구금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 (2)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 (3)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저기준규칙은 성별의 거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 여전히 어떠한 국가들은 이를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분리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을 구금한 구금시설의 장에서부터 구금시설 직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마찬가지로 여성을 구금한 구금시설에 남성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구금시설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직업여성들은 많은 경우 직업과 동시에 가사노동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시간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양성의 구금시설 직원들을 채용하는 국가들은 그러한 제도의 시행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많은 경우 여성 구금시설 직원들은 남성 피구금자들의 공격성을 줄여주고, 여성을 구금한 구금시설에서 일하는 남성 구금시설 직원들도 더 나은 환경에 일조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양성의 구금시설 직원이 같이 일하는 것은 구금시설의 환경을 사회와 더 가깝게 만드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남성을 구금한 구금시설의 여성 구

금시설 직원은 성적인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여성 구금시설 직원들은 피구금자들 뿐만 아니라 동료 구금시설 직원에 의하여 성적인 접근을 받을 수도 있다. 성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동료 구금시설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직원들의 의무이다.

성적 관계

27. 피구금자와 구금시설 직원들 사이에 이성애, 또는 동성애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비록 두 사람 간의 사랑은 이성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피구금자와 직원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간의 애정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피구금자는 직원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다른 한편 직원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감정적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감정 자체는 순수할 수 있으나 오용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구금시설에서는, 직원이 이러한 사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경우 이를 편안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금시설 당국은 기계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면직(disciplinary punishment or discharge)를 고려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전문가 직원

28. 규칙 49조

- (1)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2)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 52조

- (1) 1명 이상의 상근의무관의 근무를 요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 의무관 1명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2) 기타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직원들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전문가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분명 이는 제한적 열거는 아니다. 구금시설에서는 한시적으로 목사들, 도서관원들, 체육지도자들, 직업소개업자들,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안전과 보안도 중요하지만, 구금시설에서는 피구금자들을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시켜야 한다. 이는 피구금자들이 가능한 많은 원조를 통하여 최상의 준비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업무상 독립성

29. 어떠한 국가나 제도, 조직도 구금시설의 기능이 미약하여 격앙되어 있거나,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혼란에 빠진 자들이 사회로 배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구금하는 동안의 손상을 줄이는 것은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순수하게 비용의 면에서 볼 때 구금형의 선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이해의 범위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전문가들은 구금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참여에 대한 요청의 특성상, 구금시설의 운영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될 때 보안상의 문제없이 피구금자들이 그들을 신뢰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심리학자와 의사, 간호사, 정신과 의사, 목사 등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더욱욱 그러하다. 이들은 흔히 혼자서, 스스로 또는 시설 내부의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가 직원은 구금시설의 상급 직원에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왜 사람들이 구금되는지,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곳의 중요한 쟁점들이 무엇이며 구금시설의 안전의 중요함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 유지 업무를 돕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때때로 비밀유지와 안전유지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피구금자들은 당연히 방해 없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피구금자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피구금자의 동의하에 동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0. 전문가의 업무 방식과 수준은 동종의 전문가가 감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구금당국에 구금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직원들의 기능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구금시설 내의 일반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금시설 직원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직원과 피구금자 사이, 또는 각 상호간의 모욕, 폭행 등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물리력의 사용: 중대한 상황들

31. 규칙 54조

- (1)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피구금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 (3)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긴장상황이 쉽게 벌어진다. 직원들이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구금자들 대부분이 스스로의 의지에 반하여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피구금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인정된다. 그들은 단순히 구금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규칙이나 직원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 직원들은 스스로의 막강한 지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과 구금당국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피구금자들은 이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직원은 열쇠를 보관하고 매일 매일의 일과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구금자들은 종종 직원들의 변덕에 좌우되기도 한다. 직원들은 반드시 이를 명심하고 피구금자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도 이상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32. 위와 같은 내용은 힘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물리력사용과 관련하여는 더욱 중요하다. 구금시설 직원은 물리력사용 전에 항상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면, 물리력사용의 정도 또한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것이 **보충성과 비례성(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이라는 기본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물리력 사용시에는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 물리력사용에 관한 지침, 특히 물리력사용의 제한과 관련된 것은 언제나 구금시설의 규칙에 반영되어야 하고, 직원들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무분별하고 적합하지 않은 물리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력과 관련된 모든 사건 후에는 구금시설 직원들은 직속상관과 구금시설의 장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진다. 구금시설 직원들은 구두와 서면의 두 방식 모두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물리력사용의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

폭력의 방지와 물리력의 사용

33. 폭동, 집단적 싸움, 집단적인 명령 불복종 등 물리력 사용과 학대의 위험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다. 직원들은 가능한 학대에 대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하여야 하며, 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과, 나아가 과도한 물리력사용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까지도 제시하는 지침들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들은 흔히 구금시설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피구금자들과 직원간에 악한 감정과 긴장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기간에는 새로운 사건이 터지기도 쉽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쉽게 발생한다.

- 폭동, 인질극, 특히 구금시설 직원이 이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건의 발생 후
- 한 구금시설이 평소의 상황에서 폐쇄상태로 전환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고 구금시설은 사회로부터 더더욱 유리되며, 기본적인 보호들, 특히 투명성과 적절한 지도감독이 사라진다.
- 경험에 의하면, 구금시설들 간의 이송을 위한 차량에 있는 피구금자들과, 외국인, 정신장애 피구금자들과 같은 ‘이의제기력이 약한’(weak complaining power) 사람들의 경우에도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존중의 부족, 학대가 촉발된다(제 7장을 참조).

무기는 답이 아니다

34. 폭력의 상승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원칙은 피구금자들을 직접 접하는 직원들이 비무장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을 가진 구금시설 직원은 그것을 적절치 않은 경우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또는 피구금자의 손에 그것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직원들은 또한 피구금자들 서로간의 폭력의 발생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피구금자들은 때때로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구금시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가능성이 있다. 조건이 악화될수록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호전성은 더욱 심해진다. 될 수 있으면 공개적인 논의 또는 분쟁 당사자들 간의 논의에 의해 호전성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구금당국과 직원들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 문제에 대하여 피구금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논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방법 또는 최소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관용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한 논의가 물리력의 사용과 폭력의 상승작용을 막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내부적인 이동, 징벌 또는 폭력적인 피구금자의 격리 등은 이러한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35. **학대**, 물리력의 과도한 사용 심지어 고문 등을 방지하는 방법:

- (a) **접근성(Access)**: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오고 구금시설의 모든 부분과 모든 피구금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분명한 이유로 직원들은 서로를 눈감아주려고 하는 것에 반하여, 외부인은 그렇게 쉽게 눈감아줄 이유가 없고 따라서 학대가 방지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외부의 비정부단체의 역할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단체들은 구금시설에서 학대들이 다분히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사회에 이를 알리고 이에 반대하는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b) **규율(Rules)**: 금지, 계구사용 등과 같은 심각한 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규제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체계; 규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규율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하여 승진 관련 (불)이익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
- (c) **헌신(Commitment)**: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적 체계에 대한 상층부로부터의 지도

구금시설의 장의 임무

36. **규칙 50조**
- (1) 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 (2) 소장은 자기의 전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비상근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 (3) 소장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4) 2개소 이상의 시설이 한 사람 소장 소관하에 있는 경우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은 행형시설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어떤 사람이 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것은 많은 부분 훈련과 태도, 그리고 헌신에 의해 판단된다. 그는 최소한 **단락 15**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포함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그것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여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 영감을 주는 인격

37. 본질적으로 위계적이고 상대적으로 경직적으로 규율되는 기구인 구금시설의 장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지도력과 사람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인격이 그것이다. 그것은 일부분 인격의 문제이고, 일부분 높은 수준의 훈련을 통해서 고양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다. 구금시설의 장은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과 법제를 잘 알아야 하고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며 사회에서의 구금시설의 위치를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모범 사례로서의 역할을 의식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부 문제들은 직원들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장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은 직원들도 소홀히 할 것이다. 장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원들을 감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장은 구금시설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고, 직원들과 공식적,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소장은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직원들이 스스로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토록 해야 한다. 소장은 구금시설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피구금자와 사회의 이해에 봉사하는 구금시설의 장

38. 구금시설의 장은 피구금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무엇보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서 대할 의향을 보여 줘야 한다.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직접 피구금자들을 만나기 힘들다면 대리인이 그 일을 맡아 피구금자들의 진정과 필요들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진정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빠르고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은 구금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직원이나 구금시설 외부가 관련된 상황에서 피구금자들을 대표해야 한다. 소장은 수용된 상태의 생활과 외부 사회의 생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피구금자들과 사회의 공통의 이해라는 생각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장은, 조직의 이해는 중앙 정부로부터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만족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39. 구금시설의 장은 구금시설의 정책에 대하여 석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중앙당국이 사찰, 일반적인 정책보고지시, 그리고 구금시설 외의 해당 기구와 폭넓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예를 들어 특정한

부류의 그룹들은 시설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방문자들 앞에서 피구금자들이 행진하거나 피구금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구금자의 거실이라도 해당 피구금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방문객이 출입할 수 없다. 나아가 바람직한 구금시설은 의회와 언론매체와도 넓게 소통하게 되는데, 이들이 국민과 사회를 대표하고 이들을 통해 피구금자들과 구금시설의 문제점과 필요, 희망과 두려움에 대하여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을 갖고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는,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구금시설의 현실을 외부에 숨기려 할 필요가 없다.



제 8 장 감찰(Inspection)

제 8 장 감찰(Inspection)

여는 말

1.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국내외적 규칙의 이행은 정기적, 적정하며 집중적인 감찰¹⁾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감독에 의하여 향상되고 보장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관계당국의 조치가 될 수도 있고, 감독 후 보고에 대한 공적, 정치적 반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많은 경우 실태의 개선을 확보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2. 한편, 이러한 감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규칙의 이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구금시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은폐하는 전통적인 비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금시설 규칙이 이행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제5장 및 제7장 참조).

감찰의 범위

3. 인격과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감독은 분명히, 규칙을 이행하고 최대한으로 바람직한 구금시설 및 처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저기준규칙 55조에서도 감찰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규칙 55조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것 이어야 한다.

4. ‘감찰’의 뜻은 ‘깊이 살펴보다’ 또는 ‘공식적으로 조사하다’이다. 구금시설의 정책과 그 실행이 법과 규칙에 합치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시설의 제도를 깊이 살펴보고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감독은 피구금자들과 직원들 모두를 위한 중요한 보호책이다. 피구금자들은 그들에게 선고된 형을 법과 규칙에 명기된 조건 속에서 집행 받을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역시 같은 법과 규칙에 합치되게 형을 집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적절한 감찰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감독은 방지책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들과 관행들을 조기에 색출해 냄으로써 더 심각한 사태를 예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좋은 정책과 관행을 인정하는 것은 이를 강화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적 교정적 목적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1) 역주: 통상 번역되어 사용되는 최저기준규칙에서 Inspection은 사찰, 혹은 감독으로 번역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감찰로 번역하였다.

정기적, 빈번한 적정한 감찰:

5. 최저기준규칙이 미결수와 기결수, 또는 민사범, 혐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행형기관’이라는 용어는 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결수는 구금시설과 경찰 보호시설에 억류된 사람을 말한다(**규칙 84 조**). 따라서,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원의 구금시설 그리고 기타 최저기준규칙의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기타 억류 장소는 감찰을 받아야 한다.
6. 감독이 효과적인 보장책이 되도록 하려면 보다 많은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최저기준규칙은 감찰이 정기적인 성격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기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자주 시행되어야만 한다. 감찰은 구금시설의 총체적 상태, 서비스와 활동들뿐만 아니라 구금시설 직원-피구금자의 관계의 특성까지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기준규칙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된 감독관이 자격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감독관의 감찰보고와 권고사항이 존중받으려면, 판단력, 경험, 그리고 가혹행위를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비정기적 감찰

7. 감찰은 계속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하지만, 폭동, 총기발사, 집단폭력행위, 파업, 의문사와 기타 유사한 일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라도 항상 특별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무력분쟁의 결과로 구금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와 같은 적절한 기관을 통해, 포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춘 불편 부당한 감독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 극단적 상황 하에서는 충분히 경험 많고 자격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감찰단이 특히 매우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가 참고설명은 아래에 기술).

면밀하고 조직적인 감찰

8. 우선, 감찰은 구금시설 행정 당국에 대해 책임지는 감찰관 또는 구금시설을 책임지는 부처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감찰은 책임 있는 부처 또는 구금시설 당국에 의해 업무방식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지침이 공식화되어 배포되어 왔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감찰은 종종 미리 예고된다. 그러나 예고된 감찰을 위한 임시적 개선을 피하기 위해, 예고 없는 감찰 또한 행해져야 한다. 감찰은 입소절차, 징벌, 보안 문제, 건물 관리 및 청소, 건강과 의료서비스 및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구금자들과 구금시설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대한 면담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면담이 감시당하지 않고 피구금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에만 유용할 수 있다. 특히 구금시설이 큰 곳에서는 다양한 측면들을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려면 다수의 감찰관이 필요할 것이다.

감찰 보고서

9. 구금시설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는 문서로 제출되도록 하며, 책임 부처나 구금시설 행정최고책임자 뿐만 아니라 구금시설 직원도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보고서를 가지고 구

금시설 직원들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관측된 취약점에 대해 처리할 계획을 세운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구금시설의 보안과 같은 사항 등 모든 사항을 항상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원칙은 감찰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감찰 보고서는 잘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점을 제공한다.

전문가 감찰

10. 구금시설 감찰은 점차적으로 외부기관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이것은 일상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행해지는 감찰에서 구금시설이 예외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감찰은, 예로, 위생설비, 위생적인 조리준비 기타 보건 및 산업안전을 위한 서비스 또는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또 예를 들어 화재 및 건축과 관련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준수 절차와 같은 특별 비상사태에 관한 다른 규정들도 있을 수 있다.
11.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 감찰은 특별한 분야에 있어 외부 전문가인 감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상적으로는, 구금시설 당국보다는 부처나 감독관청(ministries, departments or authorities)에 소속된 전문적 감찰단일 수 있다. 교육과 훈련 코스, 특히 외부 당국에 의해 제공되거나 국가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외부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종종 평가 받아야 한다. 구금시설 당국은 독립된 전문 감찰을 받는 것이 이익이다. 개선을 확보할 필수적인 자원들에 대한 예산상의 요청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권고사항들에서 출발할 때 큰 무게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독립적 감독으로부터 구금시설 행정당국들은 얻어낼 것이 많이 있다. 독립적인 감찰은 개선제안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는, 대안적으로, 수행된 것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다.

객관성과 독립성

12. **규칙55조**에 내포된 감찰의 핵심은 그것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구로 되어 있는 **유럽 구금시설 규칙(EPR) 규칙4조**에서는 설명정관에서 독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감찰의 효율성과 신뢰성은 구금시설 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와 감찰 결과에 대한 정기적 공표에 의해 향상될 것이다**'.
13. 독립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격 있고 경험 있는 감찰관에 의해 보장이 된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독립성은 감찰관이 또 다른 공정한 개인 또는 기관, 적어도 상급기관에 책임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보장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적 구금시설 감찰단이 구금시설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법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이러한 판단에 따른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법 옴부즈만(justice ombudsman)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문제의 주장이 있을 때에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특히 중요한 감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옴부즈만에 의한 감찰은 구금시설내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독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해당 의회위원회의 위원들도 구금

시설 감찰을 위한 정기적 방문을 하여 구금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14. 지역적 차원에서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피구금자들의 진정을 검토하는 감찰 기구들은 많은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주로 법관이 장을 맡고 구금시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어떠한 국가들에서는 형의 집행에 관련된 특별 판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15. 그러나 사람들과 기구들을 장기간 감찰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이나 감찰기관이 구금당국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등 사실상 하나로 흡수되어(co-opted) 그 결과 감찰담당자가 정책과 그 실행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진정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 경우 친밀관계와 익숙해짐 등이 이유가 되어 미달된 조건들도 지적되지 않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감찰을 공식적 감찰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여타의 성실한 기구들에게도 구금시설의 상황이 만족스러우니지를 살피기 위하여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각각 다른 감찰기구들은 타 감독기구들에 의한 감찰 보고서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또 다른 감독방문은 선행된 감찰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다.

비정부단체(NGO)와 기타 비공식적 기구와 개인들의 참여와 역할

16. 따라서 공식적 기구나 사람들에 의한 단일한 조직에 의하여 감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식적 기구들만이 아니라 외부의 기구 및 사람들에 의한 평가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금시설 방문자들은 바로잡아야 할 불공정하고 적절치 않은 처우의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다. 특히 관련 비정부단체들은 세계 각지에서 구금시설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들은 정당한 법과 규칙들이 준수되고 구금시설의 조건들이 최저기준규칙과 여타 인권규약들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문헌을 수집하고, 피구금자들과 출소자들, 구금시설 직원들을 접촉하면서 구금시설의 환경, 상황, 관행 등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얻어내고 또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감찰에 대한 이들의 참여는 “흡수”에 의한 감독단의 독립성 상실을 바로잡는 가장 큰 수단이 될 수 있다.

취약한 피구금자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

17. 감찰관들은 취약한 피구금자들, 예를 들면 정신장애자, 외국인(특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그리고 난민신청자(asylum seekers)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철저한 감찰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취약한 피구금자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면접이 행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구금시설내의 잘못된 관행들이 쉽

게 드러날 수 있다. 한편 감찰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례들을 밝히는 것이 감찰 전의 피구금자에 대한 위협이나 그 후의 괴롭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제적인 감찰

18. 국제적인 감찰의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장의 **단락 7**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무력분쟁의 상황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과 관련한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사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대표적인 국제적 감찰기구이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피구금자들에 대하여는 이 편람은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1949년 **제3 제네바 협약의 126조**와 1949년 **제4 제네바 협약의 143조**에 의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제 4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방문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의 조항들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억류(internment)와 구금, 강제노동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방문하고 피구금자들과 비밀이 보장된 면담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제네바 협약의 **공통 제3조**에 의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분쟁의 경우에도 분쟁 당사자들에게 그 분쟁과 관련하여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의 일국 내의 폭력상황이나 분쟁의 경우에는,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적신월운동 규정’(Statutes of the ICRC and Red Crescent Movement) 제5조**에 의하여, 그러한 상황의 결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19. 1985년 UN이 구금시설을 조사하고 고문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한 것은 커다란 발전이었다. 특별보고관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행동할 의무가 있다. 이 행동은 **“그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존엄성에 관한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right to mental and physical integrity, UN Fact Sheet No.4)** 해당 정부에 입수한 정보들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고관은 그 국가가 **UN 고문 방지협약**(1984년 채택, 1987년 발효)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UN 회원국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UN은 또한 고문 또는 고문에 준하는 상황의 구금을 없애기 위한 당사국들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를 설치해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 국가 내에서 위 협약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상해 위험 상황의 예방

20.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위원회의 임무에 관련된 한 가지 제한은, 이들의 권한은 이미 발생한 고문 상황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감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심각한 상해 위험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만족될 수 없는

것이다. UN 고문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다(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다). 소위원회의 역할은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위원회와는 다른 것으로서 고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독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소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역주: 이 편람 이후, 2001년 예방적 구금시설 방문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어 2006년 6월 발효되었다).

21.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혹은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가 같은 이름의 유럽협약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위 협약을 비준한 24개 국가는 모든 구금시설에 대하여 위 위원회의 방해받지 않는 방문을 허용하고 촉진할 의무를 진다. 방문은 사전 예고가 있거나, 또는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원회의 목적은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듣는 것보다는 구금 상황의 전체적인 평가에 있으며, 비인도적이고 불공정한 조건들을 찾아내고 이를 방지하는데 있다.
22. 위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의 분야에서의 능력이 알려진, 또는 본 협약이 다루는 영역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협약 제4조) 자들로 구성되며 상근적이다. 위원회는 구금시설 방문 시 행정 전문가들과 동행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방문후의 보고서는 책임 있는 해당 정부에게 제출된다. 보고서들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적할 뿐 아니라 적절한 조건과 업무 수행에 대한 칭찬도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정부는 보고서에 대한 초기 의견을 내고, 지적된 점에 대한 후속 대책을 그 후에 표명할 수 있다. 보고서들은 해당 정부가 그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한 비밀에 붙여진다.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방문을 받았던 모든 정부들이 그 공개를 동의했다.
23. 유럽 협약은 위 위원회에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위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각국 정부들은 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국가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개 성명을 낼 권한을 갖는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오직 한번 발생하였다. 요컨대, 유럽 협약의 작성, 위 위원회의 설치, 위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은 지역적인 감독의 매우 중요한 한 형태를 구성한다. 이러한 제도가 UN 산하에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비정부단체들과 개인들은 UN 고문방지 소위원회를 위와 같은 형태로 설치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달성

2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감찰은 구금시설 내, 외부에서 실행될 수 있고, 공식적, 비공식적일 수 있으며,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차원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감찰의 가능성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어떤 감독이든지, 객관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감독의 결과물

인 모든 권고들은 적절한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필수적으로 법제의 변화, 공문지침의 변화, 직원들에 의한 관행 또는 직원훈련의 변화, 그리고 절차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각하게 잘못된 관행(malpractice)의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조사나 기소가 진행되어야 한다.

25. **규칙 제55조**는 감찰이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금시설의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목적을 좀 더 확대하면, 국제인권규범들을 포함한 본질적 기준들을 준수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감독의 중요성을 구금시설의 직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직원들이 감찰의 결과를 알고 필수적인 개선을 위하여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대로,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잘 수행된 업무와 관행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감찰의 결과가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나 또는 진정을 한 피구금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찰은 구금당국에게 구금제도의 장단점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적인 차원과 중앙 차원에서 모두 감독의 결과는 개선 요구의 필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에 공개되는 감찰 보고서

26. 최저기준규칙의 95개 조항 중 하나만이 감찰에 대한 것이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금시설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감찰은 그 사회의 행형제도의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하며,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대중과 정치인들, 피구금자들, 구금시설 당국, 그리고 구금시설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접근의 제한이 없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제 9 장 UN의 구금시설 규칙 해설

제 9 장 UN의 구금시설 규칙 해설

여는 말

1. 이 <편람>은 UN 문서에서 발전되어온 인권과 인간성의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UN은 그 창립시부터 피구금자의 인간적인 처우를 위해 고민해 왔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고문과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제5조). 그 후 세계인권선언은 다른 여러 국제협약과 결의안에 의해 보장되어 왔는데, 그 중 첫 번째가 1955년에 채택된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이다.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의 조건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처음 최저기준규칙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국제 조약이나 협약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최저기준규칙은 그 자체가 상세한 법규이고, 이것은 보다 일반적인 국제협약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이후 인간적인 구금시설 조건과 피구금자 처우를 강조하고 이를 상세화하거나 피구금자들의 새로운 권리와 개념들을 설정해온 UN 법문서들에 의하여 보충되어왔다. 그러한 기구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특히 제3장);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년;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1988년 (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1990년(The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그밖에도 많은 국제적 전문기구들이 구금시설에서의 각 업무에 관한 윤리 준칙과 기준들을 발전시켜 왔다.

최저기준규칙의 범위와 적용

2.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제7조)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점을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제10조 제1항)

이 조항을 기초한 위원회는 위 조항에 최저기준규칙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규약을 채택한 국가들은 이를 엄두에 두어야 하고, 위 조항이 최저기준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손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위 규약의 실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는 위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 최저기준규칙을 언급하고 있다.

3. 이 편람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국제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가 나서서 숭선수범하였다라는 것은 UN의 법문서들, 특히 최저기준규칙이 국제적으로 합당한 행형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징표이다. 편람은 이러한 법문서들에 대한 주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4년에 무엇이 합당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가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구금시설의 문제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이고 주요한 UN 문서인 최저기준규칙이 만들어 놓은 기본틀 속에서 이를 살피는 것이다. 이 편람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실례들을 보여줌으로써 1955년의 최저기준규칙의 기준에 비하여 더 높거나 또는 그와는 다른 현재의 최저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편람은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리고 활용가능한 자원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배경에서 그러한 최저기준을 향상시킬 실용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 동시에 이 편람은, 하나의 최저기준이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석의 유연성으로 인해 전체로서의 최저기준규칙은 1994년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규범력이 있다고 이해된다. 최저기준규칙과 기타 국제법문서에 찬성한다고 하는 각국의 정부와 기타 기구, 조직들은 이러한 기준이 그들 자신에게도 역시 적용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 최저기준규칙을 구성하는 최초의 94개 조항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최저기준규칙은 1957년에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이때 이사회는 최저기준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95조**를 추가하면서 혐의 없이 구금된(detention without charge) 사람들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이는 최저기준규칙이 교정시설 뿐 아니라 기타 장소에 구금된 피구금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1955년의 채택이후 최저기준규칙은 다른 국제적 지역적 법문서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각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구금시설당국은 이를 행형정책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본으로 보고 있다.
이 편람의 목적은 최저기준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구금시설 기준이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최저기준규칙의 지위

6. 최근 최저기준규칙은 다른 특화된 국제 법문서에 의하여 보충되어 왔다. 1985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에서(제9조1항) 동 규칙의 어떠한 부분도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적용을 막거나...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승인된 여타 인권 관련 규약과 기준들의 적용을 막는 방향으로”(1985년 11월 29일 UN 총회 결의안 40/33)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1990년 UN 총회는 이 승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하였다. 같은 해에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는 UN 총회가 “최초의 범죄방지 및 범법자 처우에 관한 UN 총회(the first UN Congress)가 채택한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매우 큰 가치와 영향력이 있는 것이며 행형 정책과 관행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1990년 12월 14일 UN 총회 결의안 45/111)

7. 지역 차원의 재판에 의하여 최저기준규칙에 대한 승인은 더 확대되었다.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그리스 사건과 같은 초기의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 처우와 처벌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후에는, **유럽형사시설규칙(European Prison Rules)**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이 역시 많은 부분 최저기준규칙으로부터 발달된 것이다.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법원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기준규칙을 적용한 바 있다. 1980년 *Lareau v. Manson* 사건(507 F Supp 1177)에서 미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과밀수용과 양립할 수 없는 ‘현재 발달되고 있는 적절함의 기준들은’...UN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규칙을 포함하며.. 따라서 국모든 국가에 의한 적절하고 인간적인 행위의 기준을 수립하는 국제적 인권원칙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8. 최저기준규칙의 광범한 승인은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적 문서들 가운데 최저기준규칙이 특별한 지위를 형성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기준규칙은 국제인권협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국제인권법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저기준규칙의 해석

9. 국제기구들, 각국 정부 그리고 비정부단체들 사이에서 최저기준규칙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모든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저기준규칙 그 자체는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1장의 단락 3에서 언급하였듯이 제1-4조에 포함된 서칙의 규칙(preliminary observations)들이 최저기준규칙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이다. 그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규칙 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규칙 2조

세계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규칙들이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을 명백하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그것들이 전체로서 UN에 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앞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규칙 3조

한편, 이 규칙들이 다루는 영역에서 사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규칙 4조

- (1) 이 규칙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 또는 교정조치에 놓인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이든 민사범이든, 미결수이든 기결수이든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 (2)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결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들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들과 모순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최저기준규칙에는 규칙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짧은 서설이 추가되어 있다. 규칙 그 자체는 서칙의 규칙들, 일반적 적용 규칙(제1부), 특별 적용 규칙 A,B,C,D(제2부)로 나누어져 있다.)

10. 서칙의 규칙들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들은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 a.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들, 예를 들어 서칙의 규칙들은 주요 제한들에 대한 내부적 요건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제3조는 오직 “원칙들과 조화될 수 있고 규칙 전체의 맥락으로부터 추론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경우에만 실험을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제2조가 세상에 존재하는 조건들의 차이를 이유로 하여 최저기준규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스스로 그러한 차이들이 무엇인지 열거하

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러한 조건들은 한정되어 있고 규칙의 적용의 차이는 이러한 조건들과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최소한 암시되어 있다.

- b. 최저기준규칙을 구성하는 개개의 조항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지침에 해당하는지 지시적(prescriptive) 규정인지에 대한 밝히고 있다. 지시적 규정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지시적 규정의 좋은 예는 **제6조1항**이다. 동 조항은 이 규칙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또는 다른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또는 다른 지위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의 법적 강제는 실험을 허용하는 서칙의 규칙들에 의하여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즉, **제6조1항**에 의하여 금지한 방식의 차별을 포함하는 실험은 최저기준규칙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사안에 적용되는 엄격한 지시적 규정들은 그 조항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그 조항이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31조**는 특정한 처벌은 ‘완전히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지가 절대적인 것이며 서칙의 규칙들에 포함된 제한들에 의하여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c. 만약 특정 규칙이 다른 조항에 의해 보장된 경우는, 그것이 국제인권법에 있는 것이든 일국의 법에 있는 것이든 불문하고, 최저기준규칙의 서칙의 규칙들에 포함된 제한이 약화된다. 최저기준규칙이 다른 국제 규약들에 의하여 어떠한 지지를 받았는지에 관한 예들은 이 편람에 많이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피구금자의 의료문제와 관련하여(**4장** 참조) 이는 현재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다른 규약들에 의하여도 중복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상호 모순이 없고 최저기준규칙의 해당 규정들을 재확인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저기준규칙이 보다 제한을 덜 받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일국의 법률은 최저기준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할 수 있고, 그 결과 양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최저기준규칙의 서칙의 규칙들에 포함된 제한들이 약화된다. 예를 들어 최저기준규칙 **10조(3장 단락13)**에서 언급되었음)는 피구금자의 수면을 위한 모든 시설은 최소한은 면적을 포함한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분명히 이러한 기준은 지리적인 조건(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쩌면 좁은 의미로 그 사회의 사회적 상황들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 다른 국가의 구금시설당국은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 각자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기준들은 모두 피구금자의 건강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피구금자의 건강이라는 **제10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1조 내지 제3조**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번 일국의 기준들이 세워지면(지금의 예에서는 최소한의 면적 기준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계당국은 불평 부당성이라는 **제6조**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된다.

소년이라는 특별한 경우

11. 최저기준규칙이 1955년에 채택된 이래 구금된 아동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규약들이 만들어져 왔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UN 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UN 총회 결의안 40/33),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UN 지침(리야드 지침, The Riyadh Guidelines)**(UN 총회 결의안 45/112),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 규칙(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UN 총회 결의안 45/113) 등이다. 구금된 소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들은 하나의 독립된 주제가 될 것이다. 이 편람에서는 소년에 관한 부분을 엄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서칙의 규칙들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최저기준규칙의 **제5조**는, 최저기준규칙은 소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대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칙을 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에 대하여는 구금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5조

- (1) 이 규칙은 보스털식 비행 청소년 수용시설(Borstal institutions)이나 교정학교(correctional school)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의 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 (2) 소년 피구금자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들에게 구금형(imprisonment)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제 10 장 국제형사개혁위원회
(Penal Reform International)

제 10 장 국제형사개혁위원회 (Penal Reform International)

국제형사개혁위원회(PRI)은 모든 주요 대륙에 걸친 75개 국가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 세계적, 비정부조직이다. PRI는 구금시설의 조건을 개선하고 범법자들을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형사사법정책과 관행을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RI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에 등록되어 있고 국제 이사회가 있다. 사무처는 영국 런던에 있다.

PRI는 UN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자문지위를 갖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옵서버 지위를 갖고 있다.

PRI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장려함으로써 행형제도의 개혁을 모색한다.

- * 범집행과 구금시설의 조건, 기준 등에 관한 국제적인 인권 범문서의 발전과 이행
- * 모든 행형에서의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차별의 철폐
- * 사형제도의 폐지
- * 전세계적인 구금형벌의 감소
- *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생산적인 비구금 형벌의 활용

PRI는 여러 국가에서 비정부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일하며 각국 정부들과 협력한다. 국가 지부는 설립하지 않는다. 전세계 30개 국가의 행형제도 개혁을 위한 사업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카리브해 제도, 중부, 동부유럽, 아프리카에서 사법기관들, 구금시설 직원들, 그리고 기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행형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
- 짐바브웨에서 구금의 대안으로서 사회봉사에 관한 새로운 국가 제도
- 알바니아와 루마니아에서 비정부 단체의 직원과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 세네갈에서 피구금자들을 위한 수공예(craft) 훈련 워크샵
- 영연방 국가들의 사형수들이 UN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영국 추밀원(Privy Council)에 청원 지원

PRI는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로 된 계간 소식지를 발간하며, 구금시설의 조건과 행형제도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들을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제11장 사법운영에서의 인권 : 억류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보호

제11장 사법운영에서의 인권 : 억류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보호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955년 8월 30일, 제 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 95조가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제2조 세계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규칙들이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그것들이 전체로서 UN에 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압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제3조 한편, 이 규칙들이 다루는 영역에서 사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과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에 놓인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criminal)이든 민사범(civil)이든, 미결수(untried)이든 기결수(convicted)이든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결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들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들과 모순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① 이 규칙은 보스털식 비행 청소년 수용시설(Borstal institutions)이나 교정학교(correctional school)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의 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소년피구금자(young prisoners)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juvenile courts)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들에게 구금형(imprisonment)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제1부 통칙

기본원칙

제6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한편, 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록

제7조 ①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수용되는 각 피구금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a. 피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 b. 수용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 c. 수용 및 석방 일시

②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수용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의 분리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b.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거주설비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이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b. 인공 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라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위생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류 및 침구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

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피구금지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급식

제20조 ① 당국은 모든 피구금지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운동 및 경기

제21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구금지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지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 e. 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25조 제②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교,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9조 다음 각호의 각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 c. 징벌권을 갖는 기관

제3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자를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31조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금지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된다.

② 위 항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계구

제33조 수감,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밖의 계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a. 호송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b.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를 지시받는 경우
- c.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행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보 및 불복신청

제35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행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도서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교

제41조 ① 시설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규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제43조 ①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②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

-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③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설직원

- 제46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 ② 교정당국은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원 및 일반공중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③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피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①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제50조** ① 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 ② 소장은 자기의 전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비상근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소장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④ 2개소 이상의 시설이 한 사람 소장 소관하에 있는 경우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 제51조** ① 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의 직원 대다수는 최다수의 피구금자의 언어 또는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제52조** ① 1명 이상의 상근의무관의 근무를 요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 의무관 1명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② 기타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 ②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54조** ①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피구금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감독

- 제55조**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1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지도원리

제56조 이하의 지도원리는 행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상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57조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제58조 구금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가능한 한 구금기간을 선용하여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면 법을 지키고 자활하는 삶을 희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다.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기타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관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위점들을 극소화하고자 한다.

② 형기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행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 사업에 관하여 시설 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기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제63조** ①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 시설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이 시설들이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 ③ 폐쇄 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 ④ 한편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처우는 그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66조** ① 이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적 배려, 교육, 직업 보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수형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방을 참작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 ② 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향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신학 분야의 자격 있는 의무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보고서와 그밖의 관계문서는 개별적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제67조 분류의 목적은 아래의 것이어야 한다.

-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행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적당한 형기에 놓인 수행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행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전

제70조 수행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행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제71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수행자는 작업의 의무를 지되,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③ 통상의 작업일에 수행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④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행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행자와 특히 소년수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⑥ 수행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행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② 그러나 수행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시설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행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행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 및 오락

제77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관계 및 갇혀있음

제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제81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 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정신 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 제82조** ①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④ 행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필요한 경우 석방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미결수용자

- 제84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인 채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 서면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제85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86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얻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8조** ①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죄수복을 입는 경우 그 죄수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92조 미결피구금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구금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사설직원은 감시하에 들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행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

E. 혐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제9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와 제2부 C절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부 A절의 관련규정도 그 적용이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갱생조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해져서는 안된다.

2.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1988년 12월 9일 투표없이 채택)

국제연합총회는,

1980년 12월 15일 결의 35/177에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의 기초를 제6위원회에 위탁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실무소위원회(Working Group)를 설치하는 결정을 한 것을 상기하고,

제43차 회기중에 개최된 위 실무소위에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을 완성한 소위의 보고에 유의하며, 이 소위가 이 원칙 초안을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제6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이 원칙 초안의 채택이 인권옹호에 중요한 공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1. 이 결의에 부속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승인하고,
2.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안 완성을 위하여 위 소위가 중요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3.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원칙 채택을 가맹국 정부 및 특별기관에 알리도록 요청하고,
4. 이 원칙이 널리 알려지고, 존중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부속문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이 원칙의 적용 범위 이하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용어 이 원칙에서는,

- a.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거나 또는 권한행사에 의해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 b. ‘억류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 c. ‘구금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 d. ‘억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된 억류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 e.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구금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 f. ‘사법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책임자격에 의하여 권한, 공평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관,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 어떤 나라도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범위가 보다 좁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는 사법기관 등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든가 또는 그 효과적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5 ① 이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신부 및 수유중인 모),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자에 대하여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과 그 실시는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항상 심사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6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 되지 아니한다.

원칙 7 ① 각국 정부는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법에 의해 금지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공평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이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행해졌든가 또는 행해질 것 같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정부직원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구제권한이 주어진 다른 적절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이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행해질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누구라도 관련 공무원의 상급기관 및 심사 혹은 구제권한이 주어진 적절한 다른 기관에 보고할 권리를 갖는다.

원칙 8 억류된 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억류된 자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구금된 자와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9 사람을 체포하고 억류하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권한 행사는 사법기관 등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원칙 10 체포된 자는 누구라도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자기에 대한 피의사실을 고지받도록 해야 한다.

원칙 11 ① 누구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즉시 청문받을 실질적 기회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억류되어서는 안된다. 억류된 자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법에 정해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억류된 자(만일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억류명령 및 그 이유에 대해 즉시 그 모든 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법기관 등은 억류의 계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원칙 12 ① 다음 사항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a. 체포이유

b. 체포 시간, 피체포자를 구류장소에 연행한 시간 및 최초의 사업기관 등 앞에 인치한 시간

c. 관계된 법집행관의 성명

d. 구류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보

② 위의 기록은 억류된 자(만일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법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 통지되어야 한다.

원칙 13 누구나 체포 및 억류, 구금의 개시시 혹은 그후 즉시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으로부터 체포·억류·구금에 관한 피구금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을 고지,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칙 14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해 원칙 11의 ②항, 원칙 12의 ①항 및 원칙 13에 관한 정보를 즉시 고지받을 권리를 갖고 체포에 이어지는 법률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무료로 통역을 받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15 원칙 16의 ④항 및 원칙 18의 ③항에 규정된 예외의 경우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외부(특히 가족과 변호사)와의 교통은 수일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16 ① 체포후 즉시 그리고 체포·억류·구금의 장소에서 이송이 있을 때마다 억류·구금된 자는 가족 혹은 그가 선택하는 기타의 적절한 사람에게 체포·억류·구금 사실, 이송 사실 및 현재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통지하거나 관계당국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이국인인 경우에는 그가 속하는 나라 또는 국제법에 의해 통지받을 권한을 갖는 나라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난민 또는 국제기관의 보호하에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갖는 국제기관의 대표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신을 할 권리도 즉시 고지받도록 해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소년 또는 자기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직권으로 이 원칙에서 주어지는 통지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④ 이 원칙이 언급하는 통지는 지체없이 실시되고 허가되어야 한다. 단, 관계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지체할 수 있다.

원칙 17 ① 억류된 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억류된 자는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 즉시 그 권리를 고지받고 권리 행사를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된 자가 사법의 이익이 있으면서도 자력이 없어 자기가 선임하는 변호사를 갖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는 무료로 사법기관 등에 의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18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통신하고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지체없이, 검열이 없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자기의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 또는 통신할 권리는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정해지고 사법기관 등에 의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판단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관이 감시할 수 있지만 청취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이 원칙에 의한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통신은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증거로서는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그것이 계속적 혹은 의도적 범죄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19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원칙 20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 주가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1 ① 자백하게 하거나 기타 자기에게 죄를 돌리게 하며, 또는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억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의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억류되어 있는 자는 조사받고 있는 동안에 폭력협박 또는 결정능력 혹은 판단능력을 해치는 방법으로 조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2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3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조사기간 및 조사간격, 조사담당자, 기타 입회자의 성명은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 기록되고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법에 규정된 대리인은 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24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 검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 치료와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5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2차적 의학적 검사 또는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6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의학상의 검사를 받은 사실, 의사의 성명 및 검사 결과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기록에서의 접근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한 절차는 각 국법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원칙 27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이 원칙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원칙 28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9 ① 관계법령의 엄정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억류시설은 억류시설 또는 구금시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과는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그 기관에 책임을 지며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방문받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제①항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시설을 방문한 사람과 자유롭게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사소통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조건에는 따르도록 한다.

원칙 30 ① 억류 또는 구금중에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형태, 과해진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을 과하는 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명기되고 정확히 공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1 관계기관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부양 가족, 특히 미성년 자에게는 원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보호 없이 버려진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2 ①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언제라도 각국 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대하여 억류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불법인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①항에 관한 신청절차는 간편·신속하고, 재산이 없는 억류된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의하도록 해야 한다. 억류기관은 억류된 자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심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33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억류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당국 및 그 상급기관과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및 구제권한을 갖는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처우, 특히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시정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가 제①항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지식을 갖는 자는 누구라도 제①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시정요구 또는 불복신청에 관한 비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신청은 신속히 처리되고, 부당한 지연 없이 회답하도록 해야 한다. 요구 또는 불복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에 불복신청자는 사법기관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①항에 의한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한 자는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행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34 억류 또는 구금기간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원인 조사는 사법기관, 직권, 가족 혹은 사정을 아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사망 및 행방불명이 억류 또는 구금 종료 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절차의 조사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 및 그것에 관한 보고는 진행중의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의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5 ①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에 반하는 공무원의 작위 또는 무작위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각국 법에 규정된 배상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배상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도록 요구되고 있는 정보는 각국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이 원칙하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6 ① 범죄혐의를 받고 억류되고 있는 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방어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른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중 또는 공판 중의 위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억류는 법이 정한 근거, 조건 및 절차하에 사법권의 집행 필요성을 위하여서만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위 사람에 대한 제한의 강제는 엄밀히 억류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든가, 수사과정에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든가, 사법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든가, 혹은 억류시설의 안전과 지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야 한다.

원칙 37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체포 후 즉시 사법기관 등에 인도되어야 한다. 상기 기관은 지체없이 억류의 합법성 및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누구도 상기 기관의 서면에 의한 명령 없이는 수사 중 또는 공판 중에 억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류된 자는 상기 기관에 인도된 경우에 구속 중에 받는 처우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8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심리를 받든지 또는 공판전 혹은 공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9 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사법기관 등이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판 전 및 공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갖는다. 단, 법에 따라 부쳐진 조건에 따르도록 한다. 상기 기관은 억류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일반조항 이 원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인쇄일 : 2007년 12월

발행일 : 2007년 12월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을지로1가 16번지)
Tel. (02)2125-9743 Fax. (02)2125-9733
www.humanright.go.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313-7593 Fax. (02)393-3016

사전증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 978-89-6114-026-3 93330